연구	05-21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정인교· 조정란· 방호경· 김석오

keri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1판1쇄 인쇄/ 2005년 11월 7일
1판1쇄 발행/ 2005년 11월 11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노성태
편집인/ 노성태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5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89-8031-355-1 7,000원

* 제작대행 : (주)FKI미디어

발간사

FTA는 세계적인 대세이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역주의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다자주의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경제 상황은 지역주의에 대한 의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지역주의 추세에 참여해야 하며, 더 나아가 지역주의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형편이다. 여기서 제대로 된 지역주의의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며, FTA의 구성요소를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많은 FTA의 경우, 관세철폐 내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반면, 원산지규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FTA 역사가 짧아 아직 특혜원산지규정으로 인한 통상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 및 생산방식 결정에 원산지규정은 중요 판단자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우리 업계의 인식을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동 연구는 우리 산업계 및 정책담당자로 하여금 FTA 정책에 있어 원산지규정 설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도 생산 및 투자정책에 있어 원산지규정을 중요한 판단자료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향후 우리 정부가 체결할 FTA와 원산지규정을 염두에 두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생산방식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칠레 및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의 원산지규정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무역경쟁력지수를 활용하여 향후 FTA가 채택해야 할 원산지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본 연구보고서가 그 첫 시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고찰하고, 방대한 분량의 원산지규정과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원산지규정의 엄격성Restrictiveness을 작성하였다. 특히 산업계와 정책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산업별 원산지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내 원산지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FTA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정인교 교수가 주관해서 작성한 것이며, 일본 拓植大學 경제연구소 조정란 박사, 재정경제부 김석오 사무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방호경 전문연구원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끝까지 본 보고서의 집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저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본 보고서를 읽고 논평해준 무역협회와 정부 관계자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며, 아울러 본 보고서가 우리 산업계 및 정부의 FTA 담당자가 널리 참고하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5년 1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노성태

목 차

<원산지규정 관련 용어> ····· 12

제1장 서 론 ····· 15

제2장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 ····· 21

Ⅰ. 시작하면서 ····· 23

Ⅱ. 원산지규정의 개념 및 결정요인 ····· 24

1. 원산지규정의 개념 ····· 24

2. 원산지규정 도입의 목적 ····· 33

Ⅲ. 주요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 37

1. 세계 특혜원산지규정의 유형 ····· 37

2. 유형별 특혜원산지규정의 세부특징 ····· 38

Ⅳ. 기존 원산지규정의 문제점 ····· 52

제3장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세부내용 ····· 55

Ⅰ. 시작하면서 ····· 57

Ⅱ.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규정 ····· 59

1. 원산지 결정원칙 ····· 59

2. 원산지 인정의 특례사항 ····· 78

Ⅲ. FTA 원산지확인제도 ····· 84

1. FTA 원산지증명제도 ····· 84

2. 원산지검증제도 ····· 87

제4장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Restrictiveness) 분석 ····· 93

Ⅰ. 시작하면서 ····· 95

Ⅱ. FTA와 원산지규정 ····· 97

Ⅲ.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 ····· 101
1. 외국의 연구사례 ····· 101
2. 국내의 연구사례 ····· 103

Ⅳ.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Restrictiveness Index) ····· 105
1. Estevadeordal 엄격성지수 ····· 105
2. 호주 PC의 엄격성지수 ····· 109

Ⅴ.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 ····· 116
1.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 116
2. Estevadeordal 지수로 본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엄격성 ····· 118
3. PC 지수로 본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엄격성 ····· 119

제5장 주요 FTA에서의 산업별 원산지규정 ····· 123

Ⅰ. 시작하면서 ····· 125

Ⅱ. 주요 FTA에서의 산업별 원산지규정 ····· 127
1. 자동차 ····· 127
2. 섬유류 ····· 130
3.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 132
4. 철강산업 및 전자 ····· 134
5. 농산물 및 가공식품 ····· 136

Ⅲ. 품목별 민감도와 원산지규정 검토 ····· 139
1. 대세계 교역기준 원산지규정 강화 대상품목 ····· 144
2. 주요 경제권 및 국가와의 FTA에서 원산지규정 강화 대상품목 ····· 148

제6장 결 론 ····· 153
Ⅰ. 원산지규정에 대한 일반사항 ····· 155
Ⅱ.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설정에 대한 시사점 ····· 161
Ⅲ. 향후 보완사항 ····· 166

참고문헌 ····· 168

<부 록> ····· 173
부록 1: 한-칠레 FTA 협정의 원산지규정(본문) ····· 175
부록 2: 한-칠레 FTA 통일규칙 ····· 189
부록 3: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규정 ····· 217

영문초록 ····· 232

표 목차

【제2장】

<표 2-1> 원산지세부기준별 특징과 주요 장단점 ····· 28
<표 2-2>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 결정기준 ····· 30
<표 2-3>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정 완화기준 ····· 31
<표 2-4> 협정별 부가가치기준의 특성 ····· 42
<표 2-5>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정기준 ····· 44
<표 2-6> 협정별 원산지 완화조항의 특징 ····· 48
<표 2-7> 지역별 원산지조항의 주요 특징 비교 ····· 51

【제3장】

<표 3-1> 수산물 및 선상가공품의 원산지 인정기준
차이점 비교 ····· 61
<표 3-2> FTA별 주요 품목별 세번변경기준 적용현황 ····· 63
<표 3-3> 부가가치기준의 기술적 세부사항 차이점 비교 ····· 66
<표 3-4> FTA별 주요 공정기준 적용물품 비교 ····· 67
<표 3-5> FTA별 미소기준 차이점 비교 ····· 69
<표 3-6> FTA별 세번변경기준 특례조항 차이점 비교 ····· 71
<표 3-7> 부속품 및 포장용기 등의 원산지기준의 차이점 비교 ··· 74
<표 3-8> 불인정공정으로 인한 HS번호 변경사례 ····· 75
<표 3-9> FTA별 불인정공정의 유형비교 ····· 76
<표 3-10> 역외가공 원산지특례조항 비교 ····· 79
<표 3-11>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특례조항 비교 ····· 82
<표 3-12> 원산지증명제의 장·단점 비교 ····· 86
<표 3-13> FTA별 원산지증명방식 비교 ····· 87
<표 3-14> FTA별 원산지검증제도 차이점 비교 ····· 91

【제4장】

<표 4-1> Estevadeordal 지수의 개요 ····· 106
<표 4-2> 유럽과 미주지역 FTA에서의 관세세번변경
기준의 비중 ····· 108
<표 4-3> 호주 PC의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
평가기준과 지수 ····· 110
<표 4-4> 관세세번변경 요건 카테고리별 가중치(%) ····· 111
<표 4-5> 역내부가가치에 대한 엄격성 카테고리 ····· 112
<표 4-6> Productivity Commission의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 ·· 114
<표 4-7>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의
원산지규정 요약 ····· 116
<표 4-8>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규정(세번변경기준) ····· 117
<표 4-9> Estevadeordal 지수로 본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 119
<표 4-10> PC의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 ····· 120

【제5장】

<표 5-1> 자동차산업 원산지규정 ····· 128
<표 5-2> 섬유류 원산지규정 ····· 131
<표 5-3>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원산지규정 ····· 133
<표 5-4> 철강산업 원산지규정 ····· 135
<표 5-5> 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규정 ····· 138
<표 5-6> 원산지규정 강화 및 완화 조건 ····· 143
<표 5-7> TSI로 분석한 우리나라 교역의 경쟁 및 특화관계 ··· 144
<표 5-8> 관세율과 수입액 분포(2004년 기준) ····· 145
<표 5-9> 전세계 교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원산지규정 강화 대상품목(HS6) ····· 147

<표 5-10> TSI로 분석한 대NAFTA 교역의
경쟁 및 특화관계 ····· 149
<표 5-11> 대NAFTA 교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원산지규정 강화품목(HS6) ····· 149
<표 5-12> TSI로 분석한 대EU 교역의 경쟁 및 특화관계 ····· 150
<표 5-13> 대EU 교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원산지규정 강화품목(HS6) ····· 150
<표 5-14> TSI로 분석한 대AFTA 교역의 경쟁 및 특화관계 ··· 151
<표 5-15> 대AFTA 교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원산지규정 강화품목(HS6) ····· 151
<표 5-16> TSI로 분석한 대중국 교역의 경쟁 및 특화관계 ····· 152
<표 5-17> 대중국 교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원산지규정 강화품목(HS6) ····· 152

【제6장】

<표 6-1>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규정 협상의
산업별 기본전략 ····· 159

그림 목차

【제2장】

<그림 2-1> 협정별 세번변경기준의 종류 ····· 39

【제3장】

<그림 3-1>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실질적 변형기준) 체계 ····· 62
<그림 3-2> 역내국가간 교역에 따른 원산지 결정 개념도 ····· 72
<그림 3-3> 직접운송원칙 개념도 ····· 77
<그림 3-4> 역외가공 흐름도 ····· 78
<그림 3-5> 한·싱 FTA 원산지 검증절차 도해 ····· 89
<그림 3-6> 현지방문 조사절차 ····· 90

【제4장】

<그림 4-1> FTA 원산지규정 국제비교 ····· 120

<원산지규정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원산지	생산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함.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 성장한 국가를, 제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말함
원산지규정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을 말하며 대다수 국가들은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판정하고 확인하고 표시하는 나름의 원산지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원산지 판정	어떤 물품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쳤을 경우, 이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결정하는 것을 말함
원산지 확인	수입제한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을 단속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받는 것을 말함
원산지 표시	판정된 원산지를 상품에 보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인쇄, 주조, 라벨링 등)하는 것
특혜원산지규정	GATT(1994)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데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함
비특혜원산지규정	특혜원산지규정 이외의 모든 것으로서 현재 협상 진행중인 WTO 통일원산지규정도 이에 해당됨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on)	어떤 물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1개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 당해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
실질적 변형기준	어떤 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물품의 생산,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당초의 원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 일어난 당해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
세번변경기준	세계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제도인 HS를 이용하여,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
CC (Change of Chapter)	세번변경기준 중 HS코드 중 앞의 2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CTH(Change of Tariff Heading)	세번변경기준 중 HS코드 중 앞의 4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	세번변경기준 중 HS코드 중 앞의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용 어	정 의
부가가치기준 (DC 또는 RVC)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제조 및 가공작업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
공제법 (Build-down Method)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때 제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 가격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 생산부분으로 보는 방법
집적법 (Build-up Method)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때 제품 가격 대비 원산지 재료 가격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
순원가법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때 제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 재료 가격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 생산부분으로 보는 방법
부품가액 (VP: Value of Parts)	전체 부품 중 역내산 부품의 최소비율 요구 기준
특정공정기준(SP) 또는 기술테스트방법(TT)	각 제품에 대해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행시켜 주는 기술적인 제조· 가공작업을 기술한 일반적인 명세표를 사용하여 지정된 가공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방법
미소기준(De Minimis) 또는 용인기준 (Tolerance Rule)	최소허용기준이라고도 하며, 역외산 수입재료의 비율이 미미할 경우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
누적기준 (Cumulation)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
양자간 누적 (Bilateral Cumulation)	해당 특혜무역협정의 역내 회원국에 의해 공급된 재료를 역내산으로 간주
유사누적 (Diagonal Cumulation)	해당 특혜무역협정의 역내 회원국이 아닌 특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를 일정한 조건하에서 역내산 간주
완전누적 (Full Cumulation)	특혜무역협정의 전체 지역이 하나의 단일 영토로 간주되어 해당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작업 또는 가공공정이 역내산으로 간주
롤업(Roll-up) 기준 또는 흡수원칙 (Absorption)	역내부가가치 계산시, 어떤 부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된 중간부품들이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역내산으로 판정되면 해당 부품 전체의 가격이 역내산으로 판정받는 것
롤다운(Roll-down)기준	역외산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하여 새 부품을 추가하고 중간부품을 만든 경우, 해당 중간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투입된 역내산 부품까지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최소가공기준 (Minimal Operations)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단순가공 또는 불충분가공만 일어난 경우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용 어	정 의
직접운송원칙 (Direct Consignment)	수출당사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
역외가공인정 (Outward Processing)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반제품을 만든 후, 재반입하여 자국에서 최종생산한 물품에 대해 자국산 부품가격을 자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금액에 포함하는 것
대체가능물품 (Fungible Goods)	물품의 특성, 기능, 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물품 또는 재료로 곡물, 과일, 볼트, 너트, 베어링, 타이어 등이 이에 해당됨
개별법	역내산과 역외산을 혼용포장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
선입선출법	역내산과 역외산을 혼용포장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 등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
후입선출법	역내산과 역외산을 혼용포장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최근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
평균법	역내산과 역외산을 혼용포장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물품 생산 당시 보관중인 원산지 재료 및 비원산지 재료의 취득가격을 계산하여 취득가격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
간접재료 (Indirect Material)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상품, 또는 상품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상품

제1장

서 론

작금의 지역주의 확산 추세,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의존도, FTA 자체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한다.[1]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4월 발효), 싱가포르(2005년 8월 현재 서명 상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5년 7월 타결 선언)과 FTA를 발효·타결했고, 일본, 아세안, 캐나다와 FTA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또한 미국, 멕시코, 남미공동시장(MERCOSUR), 중국 등과의 FTA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관세철폐의 여부만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원산지규정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FTA의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FTA 시대에 우리 기업의 국내외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원산지규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기업의 글로벌 전략과 대외개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해외투자와 부품의 글로벌 소싱이 일반화된 오늘날의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가 FTA 협정에 명시된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FTA에서 관세철폐를 통해 시장개방을 추진하면서도 원산지규정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관세철폐의 이익이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상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정한 의미의 대외개방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도 보호무역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기보다는 우회수입의 방지, 역내 투자활성화 등과 같은 원산지규정 도입 목적에 맞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FTA의 핵심은 회원국간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와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회원

1) 우리나라의 FTA 추진의 배경, 정책방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정인교(2001), 정인교·노재봉(2005)을 참조할 것.

국에는 배타적으로 적용되어 이루어지게 되는데, 차별성으로 인해 무역전환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지만, 차별성이 회원국에는 이익을 보장해 주는 장치로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FTA가 시장개방과 대외차별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WTO가 특정조건하에 FTA를 합법적인 협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FTA의 폭넓은 시장개방의 특성이 궁극적으로는 자유로운 세계통상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FTA는 전 세계의 전반적인 무역자유화가 확립될 때까지 회원국에 대한 상호특혜를 부여하면서, 역외국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원산지규정이다.

원산지규정은 관세양허와 더불어 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 쟁점의 하나이다. FTA에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내용은 크게 원산지 판정에 대한 기준과 원산지 확인절차로 구성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원산지규정은 회원국의 산업구조와 분업구조 그리고 비회원국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중립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업계의 로비, 정보의 부족, 협상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엄격한 요건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Restrictiveness을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의 여러 분야 중 원산지규정에 대해 연구하며, 우리나라가 칠레,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 원산지규정을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의 원산지규정의 내용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국제적인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먼저, 제2장에서는 FTA의 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을 논의한다. 원산지규정은 전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과 FTA와 같은 배

타적 무역협정에서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으로 나누어진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채택된 원산지규정의 특성을 고찰한다. 원산지규정의 구성요소별로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어 우리나라 무역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FTA에서 수입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통관절차의 일부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품의 원산지가 원산지규정에 입각하여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원산지 판정절차는 협정마다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의 원산지규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제4장의 전반부에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정리하고, 후반부에서는 원산지규정 엄격성에 대한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의 원산지규정 엄격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산업별 원산지규정을 논의한다. 바람직한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 및 논의를 종합하여 산업별 원산지규정을 정리하였다. 또한 제한된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산업을 중심으로 FTA 원산지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독자들의 참고를 위해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을 부록 1과 3에 각각 첨부하였다.

제2장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

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이후 지역주의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2005년 7월 현재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RTA)은 총 180개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은 114개를 기록하여 총 지역무역협정에서 63%를 차지하고 있다. WTO에 따르면 현재 30여 개의 새로운 협정이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지역무역협정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FTA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원산지규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이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 결과 원산지규정은 FTA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분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원산지규정은 각 특혜협정들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엄격성,[2] 그리고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콜롬비아대학 Bhagwati 교수는 복잡하고 엄격한 원산지규정의 폐해를 "스파게티효과Spaghetti Bowl Effects"라고 부르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3]

본 장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 원산지규정의 결정요인과 주요 FTA에서 채택된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원산지규정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엄격성(Restrictiveness)이란 단어로 표기함.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음.

3) 스파게티효과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Bhagwati(2002)를 참조할 것.

Ⅱ. 원산지규정의 개념 및 결정요인

1. 원산지규정의 개념

(1) 원산지 개념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생산·제조·가공된 나라,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나라를 의미한다. 주로 원재료의 공급국 및 주요 공정 수행국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자본 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 제공국·상표 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원산지규정이란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이라 할 수 있다. 즉 특정제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수출입품에 표시되는 제조국, 조립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가공국 등이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원산지는 원산지규정에 근거하여 적용되고 각종 무역정책 수단Trade Measures에 활용되는 법적·행정적 개념으로 전자와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정체성을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

최근 원산지규정 협상은 다자적 차원과 양자간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다자적 차원에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

자간 비특혜원산지규정을 위한 통일원산지규정 협상이, 양자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특혜원산지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WTO 통일원산지규정 협상은 1994년 UR협상의 결과로 『WTO 설립협정』이 제정되었고, 이 협정의 부속서로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이 포함된 후 1995년 5월부터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WCO 산하 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TCRO: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는 HS4단위를 기준으로 총 1,241개 품목에 대하여 생산공정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총 486개 쟁점으로 정리하여 1999년에 WTO로 송부하였다. 이후 각국 산업의 이해를 반영하여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 12월 현재까지 총 348개 이슈를 해결하였다. WTO 통일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이 제정되면 원칙적으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원산지 표시, 무역통계, 관세할당, 각종 쿼터 등 모든 비특혜 무역정책 수단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특혜원산지규정은 뜻이 통하는 국가들간에 자유무역의 결과로 인한 혜택을 역외국이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상품의 시장접근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무역정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특혜원산지의 기본목적은 역외수입의 억제를 통한 역내수입 확대에 있다. 하지만 원산지 인정규정이 엄격하면 할수록 무역전환에 따른 부정적인 경제효과가 크며 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원산지 인정기준

모든 FTA에서는 동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과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혜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

다. 원산지는 통상 '당해 물품이 실질적으로 생산된 국가', 즉 "물품의 국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물품의 국적은 FTA 협상에 의해 결정되므로 통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FTA마다 달리 정해지게 된다. 그러나 FTA에서도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은 대부분 동일하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Entirely Produced과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ly Transformation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의 구체적인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주로 가공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이나 광산품 등 1차 산품이 이에 해당되며, 자국산 원재료만 사용하여 가공한 물품도 이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실질적 변형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즉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물품을 가공·생산할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가공생산품이 이에 해당된다.

실질적 변형의 판정은 세번변경(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부가가치(VC: Value Content)기준과 특정(주요)공정(SP: Specific Process)기준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기준들을 서로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 각 기준들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따라서 물품의 특성별로 병용하거나 서로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와 제품의 HS번호(세번) 변경 여부를 기초로 원산지를 결정하므로 원산지 결정이 신속·정확하고 객관적이어

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4] 그러나 HS품목분류체계상 가공단계로 품목번호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은 적용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다.[5] 부가가치기준은 협정문이 간단·명료하여 협상하기도 용이하고 규정하기에도 쉽고 간편하다. 그러나 이 기준은 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 등락에 따라 원산지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원가조작이 가능하여 원산지 결정에 상당한 마찰이 발생된다. 특정공정기준은 지정된 생산공정 수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므로 객관성은 확보되지만 생산공정을 왜곡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각 기준별 주요 장단점을 비교·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각 원산지세부기준별로 내포되어 있는 모순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충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보충기준으로는 미소微少기준(De Minimis 또는 Tolerance Rule), 누적기준Cumulation,[6] 원산지불인정공정Non-qualifying Operation 또는 최소공정기준Minimal Operation 등이 있다. 아울러, 원산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며, 제3국에서 선적되어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불인정하는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 or Direct Transport 등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

4) 원산지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특혜무역협정에 따른 혜택을 제3국이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HS코드가 이용되고 있음. HS체계는 상품의 분류를 위한 코드이지 원산지규정을 정리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으나 적절한 대안이 없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FTA 원산지협정문은 전 품목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복잡한 체계를 가지게 됨.

5) 예컨대, HS8715의 경우 유모차와 그 부분품을 동시에 분류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분품을 수입하여 유모차를 제조하여도 부분품과 제품의 HS번호가 동일하여 아무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음.

6) 일부 협정에서는 Accumulation으로 표기하기도 함.

<표 2-1> 원산지세부기준별 특징과 주요 장단점

구 분	주요 장단점
세번변경기준	• 원재료와 완제품간의 HS번호 변경 여부 확인 • 신속 정확하고 객관적이나, HS품목분류체계상 가공단계별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적용 곤란
부가가치기준	• 협정문이 간단·명료하며, 협상시간 단축 • 자의적인 원가조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별로 회계기준이 상이할 경우 마찰 소지 • 기술개발비용·유통비용·상표비용 등도 원가에 포함되므로 실제 생산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원산지가 인정되는 모순이 발생하여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입 유발 • 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등락에 따라 원산지가 수시로 변동되어 안정적 특혜세율 적용이 곤란
특정공정기준	• 특정공정의 수행 여부 확인 • 객관적이나, 빠른 속도로 출현하는 새로운 제품의 생산공정을 반영하기 곤란하여 기술발전에 걸림돌

원산지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완전생산기준은 어느 한 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생산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수확하고 채취한 식물이나 광물이라든지, 혹은 한 나라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동물의 경우와 같이, 한 나라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 나라에서 가공한 완제품의 경우 원산지는 바로 그 나라가 되는 것이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한 나라에서 가공하는 경우와 같이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일어날 때 판정된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세번변경(CTC)기준, 부가가치(VC)기준, 특정공정(SP)기준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대부분 규정이 까다롭고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원재료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부가가치기준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3가지 기준을 각각 조합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세번변경기준이란 수입되는 원료Input의 세번과 완제품Output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번변경기준은 국제통상코드인 HS품목번호(세번)에 근거하므로 비교적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하다.[7] 예를 들어, 라이터의 원산지가 HS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고 할 때, 일본산 라이터 노즐 및 부품(HS 9613.90.1000)을 가지고 중국에서 일회용 라이터(HS9613.10.0000)를 생산하는 경우 HS6단위가 변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이 되는 것이다. 만약 라이터의 원산지가 HS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 한다면 이 경우 4단위 세번이 변하지 않아 원산지는 일본이 된다.

부가가치기준이란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최종공정을 수행한 나라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은 논리적으로는 원산지의 개념에 가장 부합한 기준이나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에 민감하고, 세관이나 무역거래자의 서류제출 및 확인 등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재료의 가격(CIF 기준)을 완제품의 가격(FOB 기준)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실질적 변형을 판정하는 또 다른 기준은 특정가공공정(SP)인데 제조공정 중 특정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동 기준을 적용할 경우의 예를 들면, 커피는 볶음공정을 수행한 나라가 원산지이고, 의류는 재단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이며, TV는 브라운관을 생산한 나라가 원산지로 판정된다.

<표 2-2>는 2001년까지 체결된 지역무역협정(RTA)의 원산지

7) 한국의 세번은 총 10단위이나 세계공통의 세번은 6단위이므로 품목별 원산지협상은 보통 세번4단위 또는 6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짐.

인정기준을 나타낸 표이다.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 모두 세번변경기준(CTC)을 주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원부자재의 수입비율(MC: Import Content)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 결정기준

지역무역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	부가가치				특정가공공정(SP)[4]
		Total	MC[1]	DC[2]	VP[3]	
관세동맹(6)	6	4	2 (40~60%)	2 (35~60%)	-	-
자유무역협정(87)	83	75	68 (60~30%)	7 (60~25%)	67	74

주: 1) MC는 당해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데 허용되는 수입부품 및 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의 상한선을 말함.
2) DC(Domestic Content)는 원산지를 부여하는 데 요구되는 국내부가가치 포함 비율의 최소비율을 의미함.
3) VP(Value of Parts)는 역내산 부품의 포함 비율을 말함.
4) SP(Specific Process)는 특정공정의 수행 여부, 즉 기술테스트를 의미함.
자료: WTO(2002)를 재구성.

위에서 열거한 원산지 인정기준은 판정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역내 원산지 판정기준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미소기준De Minimis, 롤업Roll-up 혹은 흡수Absorption원칙,[8] 누적Cumulation조항 등이 있다.

누적조항은 생산자들이 최종제품의 특혜적 지위를 상실함 없이 특정 원산지로부터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8) Roll-up 혹은 Absorption 원칙은 최종재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가 수입부품을 사용하였더라도, 이 중간재가 역내산으로 인정되며, 중간재에 포함된 수입부품도 역내산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함.

서 최소허용조항과 함께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3> 참조). 누적조항은 크게 3가지 형태를 취하는데, 회원국간에 수입된 부품 사용을 허용되는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 일정비율 이하의 제3국산 부품 사용을 인정하는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그리고 FTA에 의해 창설된 전체 특혜지역이 단일 영토로 간주되어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여하한 작업 또는 가공공정이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완전누적Full Cumulation조항이다.

<표 2-3>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정 완화기준

지역무역협정	미소기준	누적조항			Roll-up
		Bilateral	Diagonal	Full	
관세동맹(6)	3	6	0	0	2
자유무역협정(87)	85	87	58	8	81

자료: WTO(2002)

<표 2-3>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EU와 EEA 협정 등에서는 완전누적기준을 인정하여 역내 참가국 중에서 어느 한 국가로부터 원산지를 부여받은 부품은 역내 모든 국가들이 특혜적 지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하에서의 원산지규정은 이러한 판정기준을 이용하여 상품의 시장접근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원산지규정은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과 각 국가들마다 상이한 형태를 보여 상당한 무역장벽[9]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제무역상 주요

9) 예를 들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의 부과, 쿼터 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반 무역관련 조치에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이 설치되거나 국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간접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이 원재료를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하거나 제품의 글로벌 생산Global Manufacture을 확대하는 등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될수록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결정이 더욱더 어렵고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어디까지 생산해야 그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하느냐"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10)]

결국 원산지는 그 자체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지만 그것이 다른 무역정책 수단과 결합하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원단을 한국에서 재단하여 중국에서 의류로 봉제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의류의 부가가치는 디자인에서 나오고 이는 재단공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단한 나라인 한국이 원산지로 판정된다. 그러나 인건비나 설비 비중 측면에서 보면 봉제한 나라인 중국이 원산지가 된다. 원산지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 섬유쿼터가 적용되어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에 따라 수출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면 원산지 판정은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인 수입제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음.

10) 경제의 세계화는 국가간 상호의존의 심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음. 이는 국가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이 다국간에 걸쳐 수행되는 현상이 보편화되는 것인데, 이 같은 현상은 비단 국가간의 상이한 비교우위를 이용하려는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블럭화 현상에 따른 각국의 정책적 대응 결과로도 볼 수 있음. 즉 지역주의는 주요 수출국 및 역내국들에 있어 원산지규정이 지역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확보하고 역외국의 우회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는 계기로 등장하게 됨.

2. 원산지규정 도입의 목적

원산지규정은 협정 내용 및 운영에 따라 미묘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원산지규정을 적용 목적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그 적용 목적에 따라 크게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은 EU, NAFTA, EFTA 등 특정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가 제공되는 자유무역협정 또는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여타 무역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특정국가로부터의 특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실시할 경우 원산지의 식별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므로 해당정책의 운영상 원산지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자유무역협정의 일부로서 물품의 특혜관세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산업과 생산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혜무역과 관련된 원산지규정은 대체로 원산지 판정 그 자체의 목적보다는 특혜대상이 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중요시한다. 주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 부과를 의무화하고 있는 이러한 조건은 역내생산 및 고용확충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계경제에 있어서 무역창출 등과 같은 상당한 자원배분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직접투자의 증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원산지규정의 특혜조건 충족기준에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혜원산지규정은 체결상대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후 그 국가와의 특혜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원산지규정의 결정에 있어 우회수입 방지, 교역확대, 외국인투자 유입 등의 목적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비역내산 물품 우회수입 방지

역내무역에 특혜관세를 양허하는 경우 역내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만 낮은 관세가 허용되는바, 역외국의 역내국을 통한 우회수입Trade Deflection 방지는 원산지규정에 있어 주요사항으로 고려된다. 양국간 특혜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제3국의 간접적 진출로 인해 저하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국간 원산지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중 자물쇠Double Lock'의 수단으로서 원산지규정을 이용한다. 그 결과 우회수입 방지를 위한 원산지규정의 강화는 이들 체결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역외국가들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원산지를 통한 역외국의 역내국 시장접근에 대한 규정 강화는 아래에서 언급할 외국인직접투자의 직접적 요인이 된다.

(2) 회원국간 교역확대

특혜무역협정의 체결은 역내시장의 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에 의거하여 역외국들의 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므로 회원국간 교역확대를 통한 무역창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회원국간 교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비회원국으

로부터 관세가 낮은 회원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입품이 역내 회원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혜무역협정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역외국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간 원산지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역내교역 확대와는 상반 Trade-off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외국인투자 유입

체결국이 아닌 역외국가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인위적 경쟁력의 저하를 역내 직접투자 등을 통하여 상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역외국가는 특혜무역협정권으로의 직접투자에 있어 원산지규정의 내용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고려할 것이다. 과거 NAFTA 출범을 전후하여 멕시코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했던 실례가 있다.[11]

그러나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우회수입 방지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만약 부가가치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모기업으로부터의 핵심부품 조달 한계 등으로 해외투자 유치에 있어 오히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역외국이 무역전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역내국으로 생산기지를 인위적으로 이전함에 따라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곳에 투자가 발생하

11) 멕시코의 경우 NAFTA 체결 논의가 시작된 1991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협정이 발효된 1994년 이후에도 FDI의 유입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멕시코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1990~1999)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유입액	2,549	4,742	4,393	6,715	10,973	9,526	9,186	12,831	10,238	11,233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0.

는 이른바 투자구조의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으로부터 우회수입 방지, 역내가공 및 역내교역의 촉진 그리고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인 등의 목적에 따른 특징을 명확하게 구분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주요 이유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 싱가포르, 칠레, 멕시코 등 각각 어느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대 체약국가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가 원산지규정을 통하여 의도하는 목적은 일관되지 않고 서로 다를 수 있다.

둘째, 원산지규정의 주요 목적으로 생각되는 우회수입 방지, 역내가공 및 역내교역의 촉진, 그리고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인 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내용이나 체계와 관련하여 배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상호보완성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Ⅲ. 주요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1. 세계 특혜원산지규정의 유형

세계 각국의 원산지협정을 보면 크게 2가지의 유형, 즉 유럽연합(EU)이 FTA 체결시 활용하는 PANEURO 모델과 북미지역의 NAFTA 모델로 나눌 수 있으며, 동아시아는 고유의 특혜원산지 모델이 없고 EU의 PANEURO 모델과 NAFTA 모델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PANEURO 모델은 1997년 이후부터 EU와 체결하는 신규 FTA 국가들의 원산지협정에 적용되고 있는데 Euro-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s, EU-Slovenia FTA, 그리고 남아프리카, 멕시코, 칠레와의 FTA 등이 있다. 최근 체결된 EFTA의 멕시코, 싱가포르의 특혜원산지협정에서도 PANEURO 모델이 적용되었다.

NAFTA 모델은 미국-칠레, 멕시코-코스타리카, 멕시코-칠레, 멕시코-볼리비아, 멕시코-Nicaragua, 멕시코-Northern Triangle(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칠레-캐나다, 멕시코-콜롬비아-베네주엘라(G-3), 한국-칠레 등의 FTA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NAFTA의 원산지 모델은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원산지규정의 모델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의 특혜원산지 협정안은 유럽의 PANEURO 모델과 NAFTA의 모델이 혼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지역의 규정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제4장에서 제시되고 있다. 한국-

칠레 FTA와 일본-싱가포르 FTA(JSEPA)의 원산지협정을 보면 많은 품목이 HS4단위(CTH: Change of Tariff Heading)의 단순 세번변경에 기초하고 있다. AFTA와 방콕협정, 미국-싱가포르 FTA, 한국-칠레 FTA는 NAFTA의 모델인 역내부가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JSEPA는 PANEURO에서 사용되는 수입원부자재가치(MC)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품목별로 규정되는 부가가치기준에 있어서도 AFTA와 방콕협정의 경우 40%의 RVC를 충족하면 역내 원산지로 인정되는 간단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12] 동아시아지역에서 NAFTA의 모델이 일반적인 이유는 FTA 경험이 일천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NAFTA를 FTA의 전형으로 보았고, 동 협정의 규정을 자국 FTA에 많이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EU와 FTA를 체결할 경우, EU는 PANEURO 모델을 강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동아시아 역내국가들간 양자간 특혜무역협정 논의가 급증함에 따라 PANEURO와 NAFTA 모델과 상이한 동아시아만의 특혜원산지 모델이 자연스럽게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2. 유형별 특혜원산지규정의 세부특징

(1) 세번변경기준(CTC)

유럽의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CTC)에서 HS4단위 변경방식이 특혜원산지협정에서 주요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는 반면, NAFTA에

12) AFTA의 원산지협정은 다른 지역의 협정에 비해 역내 보호수단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간단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의 본래 목적에는 부합되지만, 회원국들간 무역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서는 HS4단위 변경과 함께 HS2단위 변경기준(CC)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요르단, 미국-이스라엘 FTA에서는 특정 세번변경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가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서 원산지협상이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 또한 중요하게 작용됨을 추측할 수 있다.[13]

한국-칠레, 일본-싱가포르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안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특히 NAFTA 모델과는 달리 HS4단위 세번변경에 기초하고 있다. AFTA를 포함한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의 세번변경기준은 특정세번변경 대신 부가가치(VC)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번변경기준에서는 NA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안이 HS2단위, 6단위 기준안보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 협정별 세번변경기준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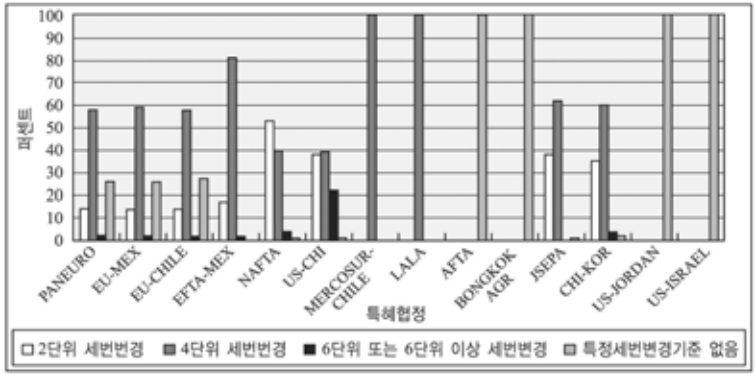

자료: 각국의 원산지 협정안

13) Jeffrey J. Schott(2004), pp.51-66.

(2) 부가가치(VC)

특정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요구되는 역내부가가치 포함 비율(국내부가가치 비율)을 역내부가가치(국내부가가치)라고 하며, 허용되는 수입부품 및 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의 상한을 부과하는 기준을 수입산원부자재가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의 계산방식으로는 '거래가격 방식(협정에 따라서는 집적법 Build-up Method으로 부름)'이나 '순비용 방식(공제법Build-down Method으로도 불림)'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14] 거래가격 방식은 계산하기가 편리한 반면 '관계자Related Persons'간 거래 시의 거래가격 왜곡가능성 및 중간재Intermediate Goods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곤란한 단점이 있다. 한편 순비용 방식을 채택할 경우 상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계산해 내기가 쉽지 않아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VC는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CTC)과 함께 사용되거나 혹은 세번변경기준의 대안으로서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VC는 크게 MC와 RVC로 구분할 수 있고, VC의 일반적 수준은 40~50%이나 PANEURO와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에서는 13~30% 정도로 낮게 부과되는 품목들도 있다.

---

14) 역내부가가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음.

- 공제법: $RVC = \frac{AV - VNM}{AV} * 100$
- 집적법: $RVC = \frac{VOM}{AV} * 100$
- 순원가법: $RVC = \frac{NC - VNM}{NC} * 100$

여기서, AV는 조정가격(FOB 가격 혹은 공장도가격)이며, VNM은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임. 또한 VOM은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며, NC는 제품의 순원가(Net Cost)를 말함.

특히, <표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VC를 계산하는 방법이 협정안마다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수출업자들이 원산지규정안을 충족시킬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PANEURO 모델은 수입원부자재가치인 MC에 기초하여 50~30%의 기준을 부과하고 있고, 특히 다른 지역들의 협정안과는 달리 동일한 공장도가격Ex-works Price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PANEURO 모델을 CTC(HS2단위, 4단위, 6단위 등), SP, VC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경우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5> 참조). 이를 통해 EU가 외부적으로는 개방형을 추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차별화 구도를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AFTA 모델의 경우에는 RVC 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부가가치 기준율과 계산방식이 유럽에 비해 다양함을 알 수 있다(<표 2-4> 참조). 역내부가가치 기준은 50～60%인 반면 이처럼 NAFTA 모델 또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PANEURO 모델처럼 복잡한 원산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동차 품목 중 수송차와 소형트럭의 경우에는 62.5% 이상의 높은 부가가치를 부과하고 있다. 수송차와 소형트럭의 변속장치Transmissions, 수송차와 소형트럭 이외의 다른 차종과 자동차부품의 부가가치비율도 최소 60%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품목에 비해 높게 부과하고 있다. 한편 MERCOSUR의 경우에는 PANEURO 모델처럼 MC를 사용하며 계산기준으로서는 FOB를 채택하고 있다.[15)]

---

15) FOB 기준의 경우 계산이 간단한 반면 이를 채택할 경우, 특수관계자 사이에 가격담합의 우려가 있음. 반면 미국-칠레, 미국-싱가포르, 한국-칠레 등의 부가가치 계산기준에서 사용되는 집적법(Build-up)과 공제법(Build-down)의 조정가격(Adjusted Value)은 계산상 복잡한 면이 있으나 가격담합의 우려는 약한 편임.

<표 2-4> 협정별 부가가치기준의 특성

(단위: %)

협정명	부가가치기준 및 제한		부가가치 계산방법
	MC	RVC	
PANEURO(50)	50-30		공장도가격
PE-(15)	50-30		공장도가격
EU-SA	50-30		공장도가격
EU-MEX	50-30		공장도가격
EU-CHILE	50-30		공장도가격
EC-Lebanon	20-50		공장도가격
EFTA-MEX	50-30		공장도가격
EFTA-Chile	15-60		공장도가격
EFTA-SINGAPORE		40-80	공장도가격
NAFTA		50-60	50(순비용); 60(거래가격)
US-CHILE		35-45	35(집적법); 45(공제법)
CANADA-CHILE		50-60	50(순비용); 60(거래가격)
MEX-COSTA RICA		41.66-50	41.66(순비용); 50(거래가격)
MEX-CHILE		40-50	40(순비용); 50(거래가격)
MERCOSUR	40	60	Fob 수출가격
CAN	50		Fob 수출가격
LAIA	50		Fob 수출가격
SAFTA		30-50	Factory cost
AFTA		40	Value of content
BANGKOK		40	공장도가격
JAPAN-SINGAPORE	40	60	수출가격
China-HongKong		30	Fob 수출가격
US-SINGAPORE		30-65	30-35(집적법); 45-65(공제법)
KOREA-CHILE		30-45	30(집적법); 45(공제법)
Taiwan-Panama		35-70	FOB
Thailand-Australia		40-55	FOB
SADC	70-35		공장도가격
US-ISRAEL		35	Value of materials/processes

자료: 각국의 원산지규정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PANEURO와 NAFTA 모델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명료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AFTA와 방콕협정의 경우 단지 40%의 RVC를 충족하면 역내 원산지로 인정되는 간단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한편 한국-칠레, 미국-싱가포르는 RVC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싱가포르는 NAFTA 모델의 RVC 이외에도 MC 기준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혜원산지규정은 최종생산단계만을 지역부가가치 Regional Value Content 계산에 포함시킨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제조업 공정(특히 저부가가치 혹은 노동집약분야)의 초기단계를 국내에서 생산한 후 나머지 공정의 일부를 주변국에 아웃소싱하여 다시 이를 수입하고 가공한 후 최종재를 수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역외공정Outward Processing을 인정하여 공정의 일부를 외국에 아웃소싱하기 이전의 초기생산단계도 최종생산단계와 함께 지역부가가치 계산에 포함시키게 된다. 싱가포르는 현재 미국, 일본, 한국과의 FTA 원산지협정에서 역외공정을 모두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과는 정보기술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ISI(Integrated Souring Initiative)가 함께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특정 IT부품과 메디컬 장치 등은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될 경우 원산지규정 적용대상이 안 된다. 이것은 글로벌 생산 라인의 연계성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뿐 아니라,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들의 상대우위 산업으로부터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표 2-5>는 주요 FTA 원산지규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과기준의 조합을 나타낸 표이다. 이 표에 따르면 유럽과 미주지역의 자유무역협정체가 다른 지역들의 협정체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원산지 인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럽국가들은 EFTA-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복

<표 2-5>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정기준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요구기준	PANEURO	EU-MEX	EU-CHI	EU PRE	EFTA-MEX	NAFTA	US-CHI	MEX-BOL	LALA	AFTA	BANGKOK	JSEPA	CHI-KOR
NC	0.4	0.4	0.4	0.2		0.5	0.5	1.0					0.5
NC+ECTC	2.4	2.0	2.4	2.4									
NC+SP	1.4	1.4	1.4	0.7			0.0						
NC+ECTC+SP	0.0	0.0	0.0	0.0									
NC+RVC	11.5	10.9	11.9	11.1						100	100		0.8
NC+ECTC+RVC	1.6	1.6	1.6	1.6									
NC+RVC+SP	0.1	0.2	0.2	0.0									
NC+WHOLLY OBTAINED CHAPTER	7.6	7.6	7.6	4.5									
NC+WHOLLY OBTAINED HEADING	0.7	0.7	0.7	0.7								0.4	
SUBTOTAL	25.7	24.8	26.2	21.2	0.0	0.5	0.5	1.0	0.0	100.0	100.0	0.4	1.3
CI													
CI+ECTC						0.0							
CI+SP					2.2								
CI+ECTC+SP													
CI+RVC													
CI+ECTC+RVC						0.0							
CI+RVC+SP													
SUBTOTAL	0.0	0.0	0.0	0.0	2.2	0.0	0.0	0.0	0.0	0.0	0.0	0.0	0.0

<표 2-5> 계속

	유럽					아메리카				동아시아/태평양			
요구기준	PANEURO	EU-MEX	EU-CHI	EU PRE	EFTA-MEX	NAFTA	US-CHI	MEX-BOL	LALA	AFTA	BANGKOK	JSEPA	CHI-KOR
CTSH	0.2	0.2	0.2	0.1		1.3	16.6	2.9					1.7
CTSH+ECTC	0.0	0.0	0.0	0.0		2.5	5.6	1.4				0.1	0.5
CTSH+SP	1.9	1.9	1.8	1.9		0.0	0.1	0.0					
CTSH+ECTC-SP	0.0	0.0	0.0	0.0		0.4	0.0	0.4					
CTSH+RVC	0.3	0.3	0.3	0.4			0.4	4.2					2.1
CTSH+ECTC-RVC	0.0	0.0	0.0	0.0		0.2	0.0						0.2
CTSH+RVC+SP	0.0	0.0	0.0	0.0				0.3					
CTSH+ECTC-RVC+SP	0.0	0.0	0.0	0.0									
SUBTOTAL	2.4	2.4	2.3	2.4	0.0	4.4	22.7	9.2	0.0	0.0	0.0	0.1	4.5
CTH	33.0	33.0	32.9	36.7	58.8	17.1	23.7	17.0	100.0			45.4	46.7
CTH+ECTC	4.6	5.1	4.6	4.6	7.2	19.2	11.2	14.3				14.4	9.1
CTH+SP	0.0	0.0	0.0	0.3		0.0	0.3	0.2				0.6	0.1
CTH+ECTC+SP	6.7	6.7	6.7	6.7	9.0	0.1	0.4	1.7					
CTH+RVC	13.0	12.7	12.7	13.6	6.1	3.5	3.3	2.2				1.7	3.0
CTH+ECTC+RVC	0.4	0.9	0.4	0.4	0.3	0.6	0.5	0.9				0.1	0.5
CTH+RVC-SP	0.0	0.0	0.0	0.0		0.1		10.0					
CTH+ECTC+RVC+SP	0.0	0.0	0.0	0.0	0.0			0.9					
SUBTOTAL	57.7	58.4	57.3	62.3	81.4	40.6	39.5	47.2	100.0	0.0	0.0	62.2	59.4

<표 2-5> 계속

	유럽					아메리카				동아시아태평양			
요구기준	PANEURO	EU-MEX	EU-CHI	EU PRE	EFTA-MEX	NAFTA	US-CHI	MEX-BOL	LALA	AFTA	BANGKOK	JSEPA	CHI-KOR
CC	2.2	2.2	2.2	2.3		31.0	23.2	21.8					22.5
CC+ECTC	1.0	1.0	1.0	0.8	0.8	17.7	5.8	6.7				37.3	4.7
CC+SP	0.0	0.0	0.0	0.0	0.1	0.0	0.1	6.3					0.1
CC+ECTC+SP	11.0	11.2	11.0	11.0	15.5	5.8	8.1	6.2					5.7
CC+RVC	0.0	0.0	0.0	0.0			0.1	0.4					1.8
CC+ECTC+RVC	0.0	0.0	0.0	0.0									
CC+RVC+SP	0.0	0.0	0.0	0.0				1.2					
CC+ECTC+RVC+SP	0.0	0.0	0.0	0.0									
SUBTOTAL	14.2	14.4	14.2	14.1	16.4	54.5	37.3	42.6	0.0	0.0	0.00	37.3	34.8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NC(No Change of Classification Specified) = 세번변경기준 제시 없음; CC(Change of Chapter) = HS 2단위 세번변경기준; CTH(Change of Tariff Heading) =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 =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 CI(Change of Tariff Items) = 6단위 이상에서의 세번변경; ECTC(Exception to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 특정세번변경 제외; RVC(Regional Value Content) = 역내부가가치 기준; SP(Specific Process) = 특정공정기준

자료: Estevadeordal, Suominen(2003) 및 각국의 원산지협정

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거의 동일한 인정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역외국들의 유럽지역 수출은 상당한 애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역내국간에는 교역이 확대되는 역외폐쇄, 역내개방 형태의 원산지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미주지역은 G-3와 멕시코-볼리비아, NFTA 등의 원산지규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체계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지역과 달리 협정체마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은 유럽과 미주지역의 협정체에 비해 아주 단순한 형태의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기타 주요 특징

1) 미소기준De Minimis

원산지협정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주요 조항이라 할 수 있는 미소조항De Minimis도 협정에 따라 다르다. <표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EU의 특혜원산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De Minimis가 다른 지역 특히 NAFTA를 포함한 미주지역의 규정들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EU 국가들이 북미지역보다 역외산 부품활용에 관대한 편이다.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특혜원산지 협정안을 보면 De Minimis가 모든 품목에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U의 경우 섬유와 의류Textiles and Apparel를 예외 품목으로 정해 놓고 있으나 섬유 총중량의 8%까지 허용하고 있다. EU-SA(South Africa)의 경우에는 여타 협정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15%를 설정하고 있으나 어류와 갑각류Fish and Crustacean, 담배제품Tobacco Products, 육류제품, 알코올성 음료에 대해서는 De Minimis 적용을 예외로 한다.

NAFTA는 일반적으로 7%의 De Minimis를 규정하였으나 유제품

<표 2-6> 협정별 원산지 완화조항의 특징

PTA	미소허용조항(Percentage)	Roll-up	누적조항	
			Bilateral	Diagonal
PANEURO (50)	10	사용	사용	사용(full in EEA)
PE-(15)	10	사용	사용	사용
EU-SA	15	사용	사용	ACP와는 사용 (SACU와는 완전 누적기준 적용)
EU-MEX	10	사용	사용	사용 안 함
EU-CHILE	10	사용	사용	사용 안 함
EC-Lebanon	10(expt chs. 50-63)	사용	사용	사용 안 함
EFTA-MEX	10(not chs. 50-63)	사용	사용	사용 안 함
EFTA-CHILE	10(expt chs. 50-63)	사용	사용	사용
EFTA-Singapore	10(expt chs. 50-63)	사용	사용	사용
NAFTA	7(expt in agric. and ind. prod.; 7% of weight in chs. 50-63)	사용 (단 자동차산업 제외)	사용	사용 안 함
US-CHILE	10(expt. im agric. and processed agr. prod.)	사용	사용	사용 안 함
G-3	7(7% of weight in chs. 50-63)	사용	사용	사용 안 함
MEX-COSTA RICA	7(expt. in chs. 4-15 and headings 0901, 1701, 2105, 2202)	사용	사용	사용 안 함
MEX-CHILE	8(expt. in agric. and ind. products; 9% of weight in chs. 50-63)	사용	사용	사용 안 함
MERCOSUR	사용 안 함	사용 (단 자동차산업 제외)	사용	사용 안 함
MERCOSUR-CHILE	사용 안 함	사용	사용	사용 안 함
CARICOM	사용 안 함	언급 없음	사용	사용(완전누적기준도 사용)
SAFTA	2	사용	사용	사용 안 함
AFTA	사용 안 함	언급 없음	사용	사용(완전누적기준도 사용)
BANGKOK	사용 안 함	사용	사용	사용 안 함
JAPAN-SINGAPORE	사용 안 함	사용	사용	사용 안 함(Outward Processing allowed)
Australia-Thailand	10(chs. 50-63: 25 of FOB for developing countries)	사용	사용	사용 안 함
US-SINGAPORE	10(expt. in various agric. Products; 7% of weight in chs. 50-63)	사용	사용	사용 안 함(OP and ISI allowed)
CHILES-KOREA	8(not chs. 1-24 unless CTSH; 8% of weight in chs. 50-63)	사용	사용	사용 안 함
Taiwan-Panama	10(chs. 50-63: 10 of weight)	사용	사용	사용 안 함
COMESA	사용 안 함	사용	사용	사용 안 함
SADC	10(not chs. 50-63, 87, 98)	사용	사용	사용 안 함
US-JORDAN	사용 안 함	언급 없음	사용	사용 안 함
US-ISRAEL	사용 안 함	사용	사용	사용 안 함

Dairy Products,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 감귤류의 과실과 주스Citrus Fruit and Juice, 인스턴트커피Instant Coffee, 코코아제품Cocoa Products, 그리고 에어컨과 냉장고와 같은 일부 기계류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에서는 De Minimis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De Minimis를 계산함에 있어 투입요소비용Cost of the Input Component이 아닌 총중량의 7%를 규정함으로써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Joseph(1993)은 De Minimis 적용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절반 이상의 품목이 De Minimis 예외조항의 영향을 받아 무역창출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없을 것으로 주장한다.

동아시아의 경우 한국-칠레, 미국-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각각 8%와 10%의 De Minimis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AFTA, 방콕협정, 일본-싱가포르 FTA는 De Minimis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칠레 원산지협정에서는 농산물품목(HS1-24)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포함될 경우 De Minimis 적용을 위해 HS6단위 세번변경 요건을 동시에 명시하고 있다. 미국-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농산물을 제외하고 있다. 한국-칠레, 미국-싱가포르 협정에서 섬유(HS50-63)의 경우에는 총중량의 최고 8%와 7%까지는 역외산 부품을 문제삼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다.

2) 롤업Roll-up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로 기업들은 수입부품을 중간재 및 최종재 생산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수입부품의 가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수입부품을 사용하여 중간부품을 생산했고, 다시 이 중간재를 최종재 조립에 투입하였다고 하자.

여기서 Roll-up 원칙은 중간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되면, 중간재 전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16] EU의 경우에는 모든 특혜원산지협정에서 전 품목을 대상으로 Roll-up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NAFTA에서는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Roll-up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에서 Roll-up 원칙을 제외시킨 주요 이유는 일본과 같은 역외국가가 노동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멕시코에 현지생산체계를 구축한 후 비역내산 부품을 수입, 가공을 거쳐 멕시코산 표기를 통해 역내시장으로의 진출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의 요구에 의해 규정되었다.

동아시아의 경우 한국-칠레, 일본-싱가포르, 미국-싱가포르 등은 Roll-up 혹은 변형된 Roll-up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AFTA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3) 누적Cumulation조항

<표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럽에서는 Bilateral Cumulation 이외에도 다른 지역의 특혜원산지협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Diagonal Cumulation도 사용하고 있다.

1997년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는 PANEURO 모델의 Cumulation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EU의 기존 15개 회원국과 불가리아, 체코 Czech Republic,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리트비아,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 등 총 30개국이다. 그 결과 Pan-European 시스템하에서는 참여국간에 거래되는 부품의 경우 역내 원산지로

16) 만약 수입부품을 가공하여 생산된 중간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중간부품 생산에 투입된 역내부품과 부가가치도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Roll-down 방식이라고 함.

인정되어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최종재는 특혜관세 적용대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더구나 EEA(EU-EFTA)와 EU-SA간에는 Full Cumulation이 적용되어 한 국가Single Territory로서의 개념이 적용된다.

NAFTA 등 미주에서는 유럽과 같이 Diagonal Cumulation이 인정되지 않고 Bilateral Cumulation만 인정되고 CARICOM의 경우에는 Full Cumulation을 인정한다.

동아시아에서는 AFTA, 방콕협정, 일본-싱가포르, 미국-싱가포르, 한국-칠레 모두 Bilateral Cumulation을 인정하고 AFTA의 경우에는 Full Cumulation까지 인정한다.

<표 2-7>은 유럽, 미주 및 동아시아 지역의 특혜원산지조항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여 요약한 것이다.

<표 2-7> 지역별 원산지조항의 주요 특징 비교

유럽지역(PANEURO 시스템)	미주지역	동아시아지역
• 가장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유럽위원회의 특혜원산지 협정안의 조화 노력) • 역내 원산지 협정안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1997년부터 PANEURO 모델을 시행 • 역내국가에 대해서는 De Minimis, Roll-up, Cumulation 조항 등을 허용하여 매우 단순하면서도 쉬운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외부적으로는 매우 엄격한 Rule을 지니고 있는 특징을 가짐 • HS4단위 세번변경기준 채택 • MC 기준 채택 • 부가가치 계산방식이 다른 지역 협정안과는 달리 동일한 Ex-works Price에 기초하고 있음 •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안이 품목별로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alternative)조항이 마련되어 있음 • 역내국가간에는 Full Cumulation이 적용되어 Single Territory 개념이 적용	• 엄격하면서도 복잡한 원산지 협정으로 인하여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여 역내 수출업자들의 상당한 애로 • HS2단위 세번변경을 기준으로 4단위 변경을 함께 사용 • 미국-요르단, 미국-이스라엘 FTA에서는 특정세번변경 기준안을 제시하지 않고 VC에 기초-정치적 목적 • RVC 기준 채택(자동차의 경우 높은 비율 적용) • 부가가치기준율과 계산방식이 유럽에 비해 매우 다양함 • Cumulation의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Bilateral Cumulation만 인정	• 유럽과 NAFTA 모델을 혼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 • 다른 협정안에 비해 역내 보호수단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간단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FTA의 본래 목적에는 부합되지만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의 발생 여지는 높음 • AFTA와 방콕협정의 경우 단지 40%의 RVC를 충족하면 역내 원산지로 인정되는 간단한 형태 • HS4 단위의 단순 세번변경기준 채택 • 일반적으로 Bilateral Cumulation를 인정하고 있으나 ASEAN FTA의 경우 Full Cumulation을 인정함 • RVC가 일반적이나 JSEPA의 경우 MC도 함께 사용

Ⅳ. 기존 원산지규정의 문제점

복잡한 원산지규정은 역내 회원국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제품생산에 관련된 비용을 유발시킨다.

행정비용은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국가마다 상이한 증명절차Mechanism는 기업들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킨다. Koskinen (1983)의 연구에 따르면 EC-EFTA하에서 핀란드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을 받기 위한 행정비용은 수출 거래액에서 1.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olmes & Shephard(1983)의 연구에서는 EFTA에서 EC로 수출할 때 요구되는 문서가 평균적으로 36종류, 페이지 수로는 360쪽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이루어진 Cadot(2002)의 연구도 NAFTA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원산지규정 충족에 필요한 행정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Krueger (1993)에 따르면 미국-캐나다 FTA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캐나다 기업들이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과다한 행정비용으로 인하여 역내산에 따른 관세혜택을 포기하는 기업의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물론 행정비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실증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원산지규정이 복잡하면 할수록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관련 비용은 원산지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요구기준Technical Criteria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다. 즉 역내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역외국가의 부품(중간재)을 이용하는 대신 역내국의 부품을 사용하는 무역전환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Anson, J., Olivier Cadot, Antoni Estivadeordal, et

al.(2003),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2), Augier, Gasiorek & Lai-Tong(2003)과 Cadot(2002), Appiah(1999)는 다양한 기술수준의 요구 등과 같은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역내국가간 무역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3장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세부내용

Ⅰ. 시작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지역간 경제블록현상과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FTA 변방국에 머물러 왔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상품이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관세차별을 받게 되고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도 국가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선진통상국가" 건설의 기치를 내걸고 FTA 대열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05년 들어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17] 4개국 등 현재 모두 6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현재 아세안(10개국) 및 캐나다와 공식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멕시코·남미공동시장(MERCOSUR)·인도 등과 FTA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2007년까지 약 50개국과 FTA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칠 FTA, 한·싱 FTA 및 한·EFTA FTA 등 3개의 FTA에는 모두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특혜원산지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FTA 체제하에서는 원산지의 인정범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므로 원산지규정은 FTA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 및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입 여부를 판정하는 핵심기준이 된다. 또한 원산지기준의 정도에 따라 국내 취약산업을

17) E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자유무역연합체.

보호하거나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도 있다. 원산지기준을 엄격히 규정할 경우 사실상 관세양허를 제한하는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FTA 원산지협상은 관세양허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울러 FTA의 실질적 수혜 여부가 원산지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원산지규정은 기업의 해외투자·생산방식과 수출거래 등 경영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은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FTA의 확산, 세계화의 심화 및 다국적 생산활동의 보편화 현상과 연계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FTA 원산지규정은 양국간 투자·교역의 활성화, 우회수입의 방지, 국내 민감산업 보호 등을 고려하여 양국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주요 고려요소는 양국간 산업구조·관세율구조 및 교역특성 등이 반영된다. 따라서 FTA마다 서로 상이한 원산지기준이 도입된다. 그동안 국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서는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해 통일적인 「一物一原産地基準」을 적용해 왔으나, FTA 체제하에서는 「一物多原産地基準」이 적용됨에 따라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한·칠, 한·싱 및 한·EFTA 등 3개 FTA의 원산지규정을 상호비교 분석·설명하여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규정

1. 원산지 결정원칙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칠 FTA(KCFTA), 한·싱 FTA(KSFTA) 및 한·EFTA FTA(KE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상호 비교·분석해 본다.[18] KCFTA, KSFTA 및 KEFTA 등 3개 FTA 모두 특혜관세의 적용과 우회수출입 여부 판단에 필요한 특혜원산지규정을 각기 별도로 도입하였다. 특혜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으로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도입되었고, 실질적 변형기준은 다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주로 사용하되 협정문 부속서에 품목별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완전히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3개 FTA 모두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완전생산기준에 대해 큰 차이가 없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체약당사국(이하 "역내"라 한다)에서 채굴한 광산물, 재배·수확한 농산물, 수렵 또는 어로작업에 의해 획득

18) 한-칠레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본문, 국문번역본)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음. 또한 원산지규정 판정 및 통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는 부록 2(한-칠레 FTA 통일규칙, 국문번역본)을 참조할 것.

한 물품이 그 주요 대상이다. 소· 말· 돼지· 닭 등 산 동물의 경우에는 역내에서 번식되어 사육한 것만 해당된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한 송아지를 칠레에서 일정기간 사육하여 국내로 수입한 경우 당해 수입 소의 원산지는 칠레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역외에서 수입한 씨앗Seed· 인경Bulb· 근경Rootstock· 삽수揷樹· 접수接樹 또는 기타 산 식물의 일부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작물은 원산지가 인정된다.

이 외에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 채굴한 원유· 광산물 등 해저자원이나 기타 물품의 경우에도 역내국가가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역내산으로 인정된다. 또한 역내에서 행하여진 생산과정에서 발행한 폐기물Waste 및 부스러기Scrap와 역내에서 수집되어 사용이 끝난 물품 중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도 역내산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것을 원료로 하여 역내에서 완전히 생산한 물품도 완전생산물품에 해당된다.

수산물의 경우 영해 내에서 획득한 것은 선박의 국적 여하를 막론하고 연안국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외국에서 치어를 수입하여 자국에서 양식Fish Farming한 수산물의 경우에도 원산지가 인정된다. 영해 밖의 공해Outside Territorial Sea상에서 획득한 수산물 또는 선상가공품의 경우 획득한 선박이 자국적인 때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한다. 그러나 자국산 선박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한 점이 있다. 먼저 KCFTA 및 KSFTA는 자국산 선박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기국요건(旗國要件, Vessel Flying the Flag of a Party)과 등록요건(登錄要件, Vessel Registered or Recorded with a Party)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즉 형식적으로 자국에 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국 기업 또는 자국 국민이 운영하는 선박으로 획득한 수산물 또는 선상가공품만 원

산지를 인정한다. 따라서 자국에 등록되지 않은 임차선박으로 획득한 수산물은 원산지가 불인정된다. 이에 반해, KEFTA는 기국요건旗國要件만 충족하면 된다. 즉 KEFTA의 경우 기국요건만 충족하면 원산지가 인정되므로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 아닌 임차선박을 이용하여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원산지 목적상 "영해Territorial Sea"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다소 상이하다. 핵심은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19]을 영해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EEZ은 국제법상 영해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EEZ를 영해에 포함시킬 경우 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 수역에서 획득한 수산물은 연안국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KCFTA에서 칠레의 영해는 EEZ를 포함하지만 한국의 영해에 EEZ는 포함되지 않았다. 나머지 KSFTA 및 KEFTA에서는 모두 국제법상 인정되는 영해만 포함한다. 즉 EEZ는 영해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상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하면 <표 3-1>와 같다.

<표 3-1> 수산물 및 선상가공품의 원산지 인정기준 차이점 비교

	KCFTA	KSFTA	KEFTA
자국선박요건	기국요건+등록요건	기국요건+등록요건	기국요건
영해의 범위 (EEZ 포함 여부)	칠레: EEZ 포함 한국: EEZ 불포함	EEZ 불포함	EEZ 불포함

19) EEZ: 영해 밖 해안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안에 설정된 수역. 이 수역은 연안국의 영해 바깥 해양자원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1982년 국제연합해양법조약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2) 실질적 변형기준

3개 FTA 모두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물품의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양 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선택기준: Alternative Rule)하거나 양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조합기준Combination Rule/Hybrid Rule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요공정기준(SP)은 섬유·의류제품 일부에만 사용한다. 3개의 FTA 모두 위 세부기준을 기초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각 협정의 원산지규정에 부속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 변형기준의 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실질적 변형기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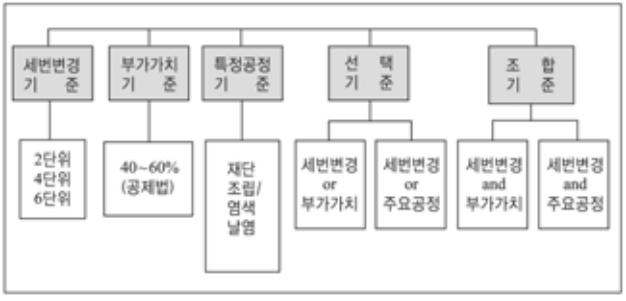

1) 세번변경기준(CTC)

세번변경기준은 어느 기준보다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 3개 FTA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과 일정수준 이상 상이한 세번

의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수준이라 함은 품목에 따라 HS2단위Chapter, 4단위Heading 또는 6단위Subheading가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품목별 구체적인 수준은 FTA에 따라 각기 다르다. 양국간의 투자·교역관계, 산업구조 및 경쟁력 등에 따라 FTA 대상국별로 원산지기준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통상 2단위 변경기준(CC)이 가장 엄격하며 다음으로 4단위 변경기준(CTH)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고, 6단위 변경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이 비교적 완화된 기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 FTA별 주요 품목별 세번변경기준 적용현황

품명	HS번호	KCFTA	KSFTA	KEFTA
소주	2208.90	CTH+RVC(45%)[1]	CTH	CTH
담배	2402.20	CTH	CTH, except from 2403[2]	CTH, except from 2403
석유제품	2710	CTH	CTH	CTH
페니실린	2941.10	CTH or RVC(45%)	CTH	CTH or MC(50%)[3]
샴푸	3305.10	CTH	CTH	CTH or MC(50%)
가죽핸드백	4202.21	CC	CTH	CTH
가죽신발	6403.20	CTH, except from 6401 to 6405 + RVC(45%)	CTH	CTH
창틀	7610.10	CTH	CTH	CTH
면도기	8212.10	CTH	CC	CTH
휴대폰	8527.90	CTH except from 8529 or CTH+RVC(45%)	CTH+RVC(55%)	CTH or MC(50%)
TV	8528.12	CTH+RVC(45%)	CTH+RVC(45%)	CTH or MC(50%)
선글라스	9004.10	CC or CTH+RVC(45%)	CC or CTH+50	CTH or MC(50%)
골프채	9506.31	CC or CTSH+RVC(45%)	CTH	CTH

주: 1) 4단위 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도 45% 이상 되어야 원산지 인정
2) 4단위 변경이 발생되어야 원산지 인정, 다만 2403호에 해당되는 원재료는 제외
3) MC(Value of Import Content): 수입재료(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당해 제품 공장도 가격의 50% 이하인 경우 원산지 인정

일반적으로 국내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물 또는 민감산업물품의 경우 2단위 또는 4단위 위주의 비교적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사용하는 데 비하여 수출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의 경우 6단위 변경기준을 사용한다. 그러나 HS품목분류체계가 지니는 한계로 인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하는 품목도 많다. 또한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는 때에도 특정 호 또는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불인정하는 방식[20]을 사용하기도 한다. 각 FTA별로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한 주요물품을 보면 <표 3-2>와 같다.

2)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은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원재료 및 제품 가격의 등락, 환율의 변동 또는 회계기준에 따라 물품별로 부가가치비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불투명하고 비안정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과 함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세번변경기준과 결합하여 사용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비율 산출에 필요한 기준가격, 산정공식 및 원산지를 인정하는 품목별 부가가치비율은 FTA마다 각각 다르다. 세번변경기준과 마찬가지로 양국간의 교역관계,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협

20) 예: KSFTA 및 KEFTA에서 HS2402호의 담배의 경우 CTH(4단위 변경기준)를 채택하면서 HS2403호에서 변경된 재료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먼저, 기준가격과 관련, KCFTA와 KSFTA는 부가가치비율 산출에 필요한 제품의 기준가격으로 본선인도가격FOB Price을 사용하는 데 반하여 KEFTA는 공장도가격Ex-work Price을 사용한다. 부가가치비율을 산정하는 공식Formula은 3개의 FTA 모두 각각 상이한 방법을 사용한다. KCFTA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법Build-down Method과 집적법Build-up Method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제법을 사용한 경우 대부분 45% 이상이 되어야 원산지를 인정[21]하며, 집적법을 사용한 경우 30% 이상이 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한다.

복수의 계산방법을 기초로 한 부가가치기준은 원산지 판정에 따르는 선택의 폭을 확장하여 무역업자의 편의를 고려한 장점은 있으나 원산지규정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여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는 일부 지적을 반영하여 KSFTA에서는 공제법만 도입되었다. 원산지를 인정하는 품목별 부가가치비율은 45~55% 수준으로 KCFTA보다 엄격히 규정되었다. 이는 대표적 중계무역국가인 싱가포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근국가 제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KEFTA의 부가가치비율 산정방식은 KCFTA 및 KSFTA와 매우 상이하다. 기본적으로 당해 제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MC)이 당해 제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수준 이하[22]이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원산지를 인정하는 부가가치 수준은 30~60%(공제법으로 환산시 40~70% 수준)까지 다양하다.

한편, 원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추가가공을 거친 반제품을

21) KCFTA에서는 혼합주스의 경우 공제법 기준으로 80% 이상이 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함.

22) MC 계산방식은 (비원산지 재료 가격/제품가격(Ex-works Price))*100임.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 경우 부가가치비율 계산시 이 반제품의 가격을 비원산지 재료 가격에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역내 추가가공을 통하여 반제품이 역내산으로 원산지가 변경된 때에는 비원산지 재료 가격에 포함할 필요가 전혀 없다. 반제품 그 자체가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반제품에 결합된 비원산지 재료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23] 그러나 반제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반제품의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FTA마다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 KCFTA와 KSFTA의 경우 기본적으로 반제품의 가격 전체를 비원산지 재료 가격에 포함한다. 다만, 추가가공시 역내산 재료가 포함된 경우 역내산 재료 가액은 공제될 수 있다.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나 가공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KEFTA에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해석상 국산재료비도 공제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반제품 가격 전부를 비원산지 재료 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24] 부가가치기준 적용과 관련한 기술적인 차이점을 비교·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부가가치기준의 기술적 세부사항 차이점 비교

구 분		KCFTA	KSFTA	KEFTA
제품기준가격		FOB	FOB	ex-work 가격
부가가치공식		공제법/집적법	공제법	MC방식
부가가치 수준		45% (공제법)	45~55% (공제법)	40~70% (공제법 환산시)
역내추가 가공품	원산지 인정	100% 인정	100% 인정	100% 인정
	원산지 불인정	국산재료비 공제	국산재료비 공제	국산재료비 비공제

23) 이를 실무에서는 롤업(Roll-up) 방식이라고 함.

24) 이를 실무에서는 롤다운(Rolling-down) 방식이라고 함.

3) 특정공정기준

특정공정기준은 당해 물품의 제조·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을 당해국에서 거친 때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일부 FTA에서 섬유 또는 의류제품에 한하여 세번변경기준과 병용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는다.

KCFTA의 경우 의류제품(HS61~62류)에 한하여 당사국에서 자국산 원단을 사용하여 재단·봉제 공정을 거쳐 만든 의류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KSFTA 및 KEFTA의 경우 원산지와 관계없이 재단·봉제 공정을 거쳐 만든 의류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수입한 원단을 사용하여 재단·봉제한 경우에도 원산지가 인정된다. KEFTA에서는 원단의 경우 염색공정과 날염공정을 거친 것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수입 생지의 가격이 최종제품 공장도가격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생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염색공정을 거친 원단을 스위스로 수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입한 생지의 가격이 최종제품의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50% 이하인 때에는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게 된다. 각 FTA별 주요공정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을 비교하면 <표 3-4>와 같다.

<표 3-4> FTA별 주요 공정기준 적용물품 비교

품명	HS번호	KCFTA	KSFTA	KEFTA
의류 제품	61~62류	CC + 국산원단요건 + 재단 봉제요건	CC + 재단 봉제요건	CC + 재단 봉제요건
직 물	50~60류	CC	CC	CTH or 염색 또는 날 (단, 수입한 생지의 가격이 최종제품 가격의 50% 이하일 것)

(3) 보충적 원산지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이 지니고 있는 한계 또는 모순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FTA 원산지규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충적 원산지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보충기준으로는 원산지 인정 최소기준(미소기준)· 세번변경기준의 특례· 누적기준· 불인정공정기준· 부속품 등의 특례· 직접운송원칙 등이 사용된다.

1) 미소기준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당해 물품의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원산지 인정 최소허용기준 또는 미소기준De Minimis or Tolerance Rule이라 부른다.

원산지를 인정하는 미소기준 인정한도는 FTA에 따라 상이하다. KCFTA의 경우 섬유제품(HS50~63류)을 제외한 일반물품에 대해 가격기준으로 8% 미만, KSFTA와 KEFTA는 10% 미만 수준이다. 섬유제품은 사용된 원사의 중량비율을 기준으로 KCFTA 및 KSFTA는 8% 미만이나 KEFTA는 10% 미만으로 설정되었다. 한편, 농수산물(HS1~24류)의 경우 3개 FTA 모두 원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6단위 이상 서로 달라야 위 미소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미소기준은 수입재료의 비율이 극히 미미할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획일적 세번변경기준 적용에 따르는 모순과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준이다. 다만, KEFTA의 경우 미소기준은 적용상 약간 차이점이 있다. KEFTA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에서는 특정물

품에 대하여 특정한 비원산지 재료의 경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용금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제품가격의 10% 이하일 경우에는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25)]

농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국내 농어민 보호와 우회수입 방지를 위하여 미소기준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섬유제품의 경우 세번이 원단 또는 직물에 함유된 섬유나 실의 함량에 의해 결정되는 특징을 고려하여 중량을 기준으로 하게 된 것이다. 이 외에 섬유제품은 가격 등락이 매우 심하여 가격기준으로 최소기준을 설정할 경우 원산지 결정이 혼란스러운 점도 고려대상이 되었다. 각 FTA별 미소기준의 차이점을 정리·비교하면 <표 3-5>와 같다.

<표 3-5> FTA별 미소기준 차이점 비교

구 분		KCFTA	KSFTA	KEFTA
일반물품(가격기준)		8% 미만 (FOB)	10% 미만 (FOB)	10% 미만 (ex-works)
섬유제품(중량기준) (HS50~63류)		8% 미만	8% 미만	10% 미만
농수산물	기초농산물 (HS1~14)	8% + CTSH[1)]	적용 제외	10% + CTSH
	가공농산물 (HS15~24)	8% + CTSH	10% + CTSH	10% + CTSH

주: 1) CTSH: 농산물의 가공에 투입된 원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최소한 6단위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미소기준 적용

25) 예를 들면, 곡분(Chapter 11)의 경우 제10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예: 쌀)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바(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Chapter 10), 외국에서 수입한 쌀을 혼용하여 곡분을 가공한 경우에도 제품가격 중 수입쌀의 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할 경우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음.

2) 세번변경기준의 특례

FTA 품목별 원산지규정에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정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HS품목분류 구조상의 한계 또는 물품 제조가공의 특성상 외국에서 부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가공하여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i) 당해 물품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관세법 별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ii) 당해 물품과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동일한 호(4단위) 또는 소호(6단위)에 해당하는 경우

HS품목분류 원칙상 미조립 상태로 수입한 경우에도 완성품의 주요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품의 세번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부품과 제품이 동일한 호(4단위) 또는 소호(6단위)에 함께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유모차와 그 부분품은 동일한 호 또는 소호(HS8715.00)에 분류된다. 항공기발진장치와 그 부분품도 동일한 호 또는 소호(HS8805.10)에 분류된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 부분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도 세번은 전혀 변경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KCFTA에서는 국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이상일 경우 세번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SFTA 또는 KEFTA에서는 이러한 품목분류를 원인으로 하는 세번변경기준 특례조항을 도입하지 않았다. 이들 FTA에서는 KCFTA와 달리 일률적으로 60%의 일반기준을 도입하기보다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각 FTA별 동 기준의 차이점을 정리·비교하면 <표 3-6>과 같다.

<표 3-6> FTA별 세번변경기준 특례조항 차이점 비교

KCFTA	KSFTA	KEFTA
60% 일반기준 도입	미도입 (품목별 기준 적용)	미도입 (품목별 기준 적용)

동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적용에 따르는 한계와 모순점을 극복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원산지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역내산 물품의 교역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다.

3) 누적기준

누적기준은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상대국의 물품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재료는 상대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이 체약상대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원산지를 체약상대국으로 하고,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본다.[26]

또한 역내에서 다수의 생산자에 의해 다단계 제조공정을 거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는 국내 최종단계의 생산자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롤업Roll-up원칙이 인정될

26) 이를 양자누적조항(Bilateral Cumulation)이라 함.

경우, 외국에서 1차 원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생산된 반제품을 조달하여 최종제품에 결합시킨다고 할 경우 국내에서 조달한 반제품이 원산지 물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반제품의 전체 가격을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포함한다.

동 누적기준은 3개 FTA에 모두 공통적으로 도입되었다. 다만, KEFTA의 경우 4개국으로 구성된 EFTA의 특성을 고려한 일종의 역내국간 다자누적에 대한 특례조항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이 특례조항에 따르면 A회원국의 원산지 물품을 B회원국으로 반입한 후 원상태 또는 실질적인 추가가공 없이 C회원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이 물품의 원산지를 A국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한 B국에서 A국산 물품과 B국산 물품을 혼용한 경우에는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A국산 물품과 B국산 물품 중 더 높은 가격을 가진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한다. 예컨대,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물품을 스위스로 반입한 후 원상태 또는 경미한 작업 이외의 실질적인 추가가공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때에는 노르웨이 원산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역내국가간 교역에 따른 원산지 결정 개념도

그러나 만약 스위스에서 스위스산 물품과 노르웨이산 물품을 혼합하여 한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하고, 스위스산 물품의 가격이 노르웨이산 물품의 가격보다 더 높은 때에는 당해 최종 혼합물품의 원산지는 스위스로 결정된다.

KEFTA 관세양허안에 의하면 일부 가공농산품의 경우 EFTA 회원국별로 상이한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EFTA측에서 수입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역내국간 다자누적에 관한 특례조항은 나름대로 실익이 있다. 누적조항은 역내산 부품 또는 재료의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FTA로 인한 시장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역내간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누적된 부가가치의 산출과 검증에 따르는 혼란과 마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부속품 등의 원산지기준

3개 FTA 모두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진공청소기에 딸려서 판매되는 집진봉지는 본제품인 진공청소기의 원산지를 적용한다. 즉 진공청소기가 원산지 물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집진봉지가 비록 수입물품일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다. 이 경우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등은 본제품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속품 등을 별도로 수입하거나 통상 인정되는 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매 판매용 포장용품 및 포장용기(예: 포장지·병·캔 등)의 경우 협정문의 규정상 차이가 있다. 먼저 KCFTA 및 KSFTA의 경우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HS품목분류체계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는 때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계속 반복사용이 가능한 가스통·컨테이너·기타 특수제작한 금속용기 등이 이에 해당할 것

으로 본다. 그러나 KEFTA의 경우 포장용품 및 포장용기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 포장용품을 내용품의 원산지에 따르도록 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결국 품목분류원칙에 따라 포장용품이 내용품과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당해 내용품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부속품 및 포장용기 등의 원산지기준의 차이점을 정리·비교하면 <표 3-7>과 같다.

<표 3-7> 부속품 및 포장용기 등의 원산지기준의 차이점 비교

구 분	KCFTA	KSFTA	KEFTA
부속품·예비품·공구	본제품의 원산지	본제품의 원산지	본제품의 원산지
포장용품 포장용기	본제품의 원산지	본제품의 원산지	명시규정 없음

5) 최소공정기준 또는 불인정공정기준

최소공정기준Minimal Operation 또는 불인정공정기준Non-qualifying Operation은 단순·경미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킨 때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중국산 멸치(HS0301)를 한국에서 건조하여 마른 멸치(HS0305)로 가공할 경우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한다. 또한 미국산 쌀(HS1006)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분쇄공정을 거쳐 가공한 쌀가루(HS1102)는 2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한다. 즉 단순한 건조작업 또는 분쇄공정만 거쳐도 4단위 또는 2단위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포장에 의해서도 4단위 이상의 세번이 변경될 수 있다. 페니실린(HS3003)을 수입하여 소매용으로 포장(HS3004)한 경우에도 4단위의 세번변경이 발생한다(<표 3-8> 참조). 이와 같이 건조·분쇄 및 포장작업과 같이 비교

적 단순·경미한 가공작업만 거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인정하고 특혜관세를 부여할 경우 우회수입 또는 관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표 3-8> 불인정공정으로 인한 HS 번호 변경사례

투입원료	생산공정	생산제품
멸치(0301)	건조	마른 멸치(0305)
쌀(1006)	제분	쌀가루(1102)
화강암(2516)	분쇄	자갈(2517)
석회석(2521)	분쇄·열처리	시멘트(2523)
페니실린(3003)	포장	소매용 페니실린(3004)
원목(4403)	절단	제재목(4407)
안경테(9003)/안경렌즈(9001)	조립	안경(9004)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FTA에서는 이와 같이 경미한 가공작업만을 거쳐 세번변경이 발생되거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불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3개 FTA에서도 예외 없이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최소공정의 구체적인 정도와 유형에 대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각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의 유형을 비교하면 <표 3-9>와 같다.

KCFTA 및 KSFTA에서는 건조 또는 냉동 공정이 불인정공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KEFTA에서는 빠져 있다.[27] 염화Salifying 또는 가

27) KEFTA 4차 협상 당시 우리측에서 "건조·냉동 공정"을 불인정공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양측은 일단 불인정공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은 하되 협정문 본문에 규정하는 대신에 해설서(Explanatory Note)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음.

당Sweetening 공정의 경우 KCFTA에만 있고 KSFTA와 KEFTA에는 없다. 시험Testing 또는 측정Calibrations 공정의 경우 KSFTA 및 KEFTA에는 있으나 KCFTA에는 없다. 아울러 다림질, 곡물의 껍질제거 및 설탕의 컬러링 공정 등은 KEFTA에만 있고, KCFTA 및 KSFTA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불인정공정의 유형은 어느 정도 중립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FTA마다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3-9> FTA별 불인정공정의 유형비교

KCFTA	KSFTA	KEFTA
• 운송, 저장 보존 공정 • 선적, 운송 촉진 공정 • 판매용 포장, 전시공정 • 포장변경, 해체, 재포장 • 건조, 냉동, 냉장 • 혼합, 절단, 분류, 세척 • 탈피, 분쇄, 뼈제거 등 • 재료도포, 먼지제거 • 희석, 염화, 가당 • 단순조립, 세트, 분해 • 동물의 도축	• 운송, 저장 보존 공정 • 시험, 측정 품질조사 • 단순 포장공정(병입 등) • 포장변경, 해체, 재포장 • 건조, 냉동 염장 • 혼합, 절단 연마 • 탈피, 분쇄 뼈제거 등 • 재료도포, 먼지제거 • 희석 • 단순조립, 분해 • 동물의 도축	• 운송, 저장 보존 공정 • 시험, 측정 • 단순 포장공정(병입 등) • 포장변경, 해체, 재포장 (없음) • 혼합, 절단 분류, 세척 • 탈피, 분쇄, 뼈제거 등 • 재료도포, 먼지제거 • 희석 • 단순조립, 분해 • 동물의 도축 • 직물 다림질 • 곡물의 껍질제거, 광택 • 설탕컬러링, 럼프화

6) 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운송도중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원산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다만, 운송상의 목적으로 제3국에서 환적한 경우에는 원산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경우 환적과정에서 운송에 필요한 경미한 작업 이상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물품이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수입된 경우 홍콩에서 단순히 환적작업만 거친 경우에는 싱가포르로 원산지가 인정된다. 하지만 일단 홍콩에서 내수용으로 통관되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재판매되어 한국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더 이상 싱가포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그림 3-3> 참조).

<그림 3-3> 직접운송원칙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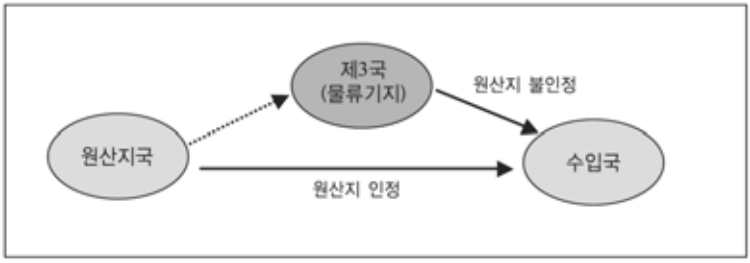

홍콩에서 단순 환적과정만 거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홍콩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었음을 수입자가 서면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공·항만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구역에서 얼마든지 추가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은 3개 FTA에 공히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운송루트를 통한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출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원산지 인정의 특례사항

KSFTA 및 KEFTA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원칙과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이외에 상대국과의 특수한 지리적 특성이나 사정을 고려한 원산지특례조항이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조항으로 역외가공물품과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특례를 들 수 있다.

(1) 역외가공물품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특례조항은 KSFTA 및 KEFTA에서 예외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역외국에서 반제품을 만든 후 자국으로 재반입하여 최종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 부분 원산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해외임가공물품이 그 주요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3-4> 역외가공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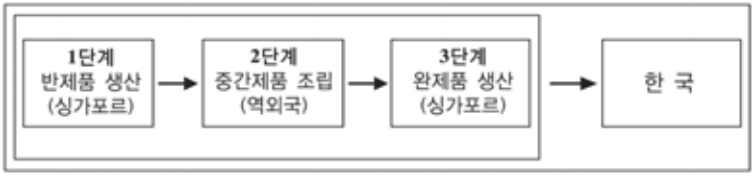

역외가공의 일반적인 흐름은 <그림 3-4>와 같이 3단계로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자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품(1단계)을 해외공장에 공급한다(2단계). 해외공장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반제품을 생산한 후 다시 자국으로 재수입하여 완성품을 가공한다(3단계). 이 경우 완성품의 원산지 결정시 당해 완성품에 포함되어 있

는 자국산 원재료 또는 부품을 원산지 재료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역외가공조항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자국에서 생산한 재료라 하더라도 일단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된 경우에는 관세법상 외국물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그러나 역외가공조항에서는 이와 달리 원산지 재료로 인정한다.

역외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특례를 인정하는 대상물품, 구체적인 요건 및 적용방법은 KSFTA 및 KEFTA간에 서로 상이하다. KSFTA의 경우 HS10단위기준으로 130여 개 물품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원산지를 인정하는 요건도 역외산 재료비율 40% 이하 및 역내산 재료비율 4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원재료 수출자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입자는 서로 동일해야 한다.

<표 3-10> 역외가공 원산지특례조항 비교

구 분		KCFTA	KSFTA	KEFTA
일반적 역외가공		없음	없음	역외가공 비용 10% 이하
제한적 역외가공	물품 요건	없음	비원산지 재료 가격 40% 이하 + 원산지 재료 가격 45% 이상	비원산지 재료 가격 40% 이하 + 총재료비 중 원산지 재료 가격 60% 이상
	대상 품목	없음	130개 품목(HS10단위기준)	153개 품목(HS6단위기준)
	인적 요건	없음	원재료 수출자 및 역외가공품 재수입자 동일요건	없음

KEFTA의 경우에는 역외가공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다. 품목제한 없이 모든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역외가공기준과 HS6단위기준으로 153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적 역외가공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역외가공기준은 역외가공비용이 10% 이하에 불과할 경우

에는 품목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를 인정한다. 제한적 역외가공 기준은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40% 이하이면서 최종제품의 총재료비 중 원산지 재료(자국산재료)의 가격이 60% 이상을 넘어야 한다. 이상의 차이점을 정리하여 비교하면 <표 3-10>과 같다.

원산지 결정을 위한 기준은 원칙적으로 최종 생산국에서만 발생한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를 기초로 결정되며, 국산재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일단 역외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된 물품은 원산지가 불인정된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국내산 물품이라도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될 경우 관세부과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외가공제도는 다른 나라 FTA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인도네시아 등 인근국가에 공장을 설치하여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바, 싱가포르의 영토적 특수성과 이에 따른 수평적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국간 교역을 실질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히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외가공 원산지제도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그 대상물품은 국내산업에 영향이 적은 품목인 전기·전자품목 등 극히 일부 품목으로 제한한 특징이 있다.

KEFTA의 경우 일반적 역외가공기준은 글로벌 아웃소싱이 보편화 되어 가고 있는 무역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역내간 특혜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한적 역외가공기준은 사실상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특례를 인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특례조항에서 다시 언급한다.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제도는 역내산 부품의 사용촉진과 교역증진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관세행정을 복잡하게 하고 무역업자의 법규준수 비용

을 증가시킴과 아울러 우회수입 및 관세회피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단점도 부인할 수 없다.

(2) 개성공단 생산품

KSFTA와 KEFTA에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를 사실상 우리나라로 간주하고 특혜관세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원산지를 인정하는 대상물품과 요건은 다소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KSFTA의 경우 대상지역은 한반도 및 개성공단으로 특정된다.[28] 따라서 개성공단 이외의 금강산특구,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등 북한의 다른 지역도 포함이 된다.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은 개성공단 또는 기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협정상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직접 수출(직접운송요건)되는 물품에 한한다. 대상품목은 25류 내지 96류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공산품(36류, 49류, 93류, 97류는 제외)이다.

KEFTA의 경우에는 제한적 역외가공방식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지역제한이 없다. 따라서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기타 북한지역과 중국, 동남아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도 대상이 되며, 직접운송요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원산지를 인정하는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40% 이하이어야 하고 총재료비 중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60%를 넘어야 한다. 대상품목은 HS6단위기준으로 153개 품목으로 제한된다. 153개 품목은 개성공단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될 물품을 기초로 하여 규정하였기 때문

28)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부속서의 제4조3항에 따르면, "개성공단과 한반도의 다른 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은 상기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에 동 규정은 사실상 개성공단 생산품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비교하면 <표 3-11>과 같다.

<표 3-11>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특례조항 비교

구 분	KCFTA	KSFTA	KEFTA
지역제한	없음	개성공단 및 한반도	제한 없음
대상물품	없음	25~96류 해당 공산품 (36, 49, 93, 97류 제외)	HS64단위기준 153개 품목 (39, 40, 62, 64, 69, 70, 73, 81, 82, 83, 84, 85, 87, 90, 91류)
인정요건		협정상의 원산지요건 충족 + 직접운송	비원산지 재료 가격 40% 이하 + 총재료비 중 원산지 재료 가격 60% 이상 + 협정상의 원산지요건 충족 + 직접운송

한편, 개성공단 등 특정지역을 명시할 경우 WTO의 최혜국대우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협정문에 대상지역을 표시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대신에 KEFTA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역외가공방식으로 규정할 경우 상대국도 동 조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국내 취약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상품목을 엄격히 제한하게 된 것이다.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특례조항은 경제적인 실익보다 개성공단 생산품을 북한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협정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여타 FTA에서도 선례로 활용할 수 있고, 아울러 개성공단 생산품의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재수입물품

KEFTA에서는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원상태로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KCFTA 및 KSFTA에서는 원상태 재수입물품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다. 따라서 특혜관세 목적상 재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는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일단 수출되고 나면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며 재수입될 경우에는 다시 관세부과대상이 된다. KEFTA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의 예외를 도입한 것이다. 역외가공조항과 유사하나 차이점은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되거나 수출기간 동안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은 물품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생산한 가전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였다가 원상태로 다시 반송된 물품을 스위스로 재수출할 경우 동 가전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수입자는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동 특례조항은 특혜관세 적용대상 물품의 범위를 국경에 고정시키지 않고 탄력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역내에서 실질적으로 생산된 물품의 교역을 촉진시킨다는 장점은 있으나, 세관의 행정부담 증가와 함께 관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Ⅲ. FTA 원산지확인제도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및 우회수출입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원산지 확인은 통상 수출국에서 수출 전에 이루어지는 원산지증명제도와 수입국에서 수입 후에 이루어지는 원산지확인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원산지 확인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FTA마다 상이한 점이 있다.

1. FTA 원산지증명제도

(1) 원산지증명방식 종류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원산지요건의 충족 여부는 서면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에는 크게 기관증명제Authorized Certification, 자율증명제Self-certification 및 절충식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관증명제는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수출자로부터 신청 받아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KSFTA는 동 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증명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KCFTA와 KEFTA에서 채택하였다.

절충식은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을 빈번하게 수출하는 수출자 중 성실업자에 대하여 수출국 세관당국의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되, 그렇지 않은 수출자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에 신청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EU가 체결한 FTA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다.

(2) 원산지증명방식 비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을 촉진한다는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 의할 경우 발급절차가 신속·편리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 자율증명제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원산지의 정확성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없이 수출자가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스탬프만 날인하는 등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어 신뢰도 측면에서는 자율증명제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자율증명방식보다 기관증명방식이 원산지허위증명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자율증명제를 채택한 KCFTA 및 KEFTA에서는 원산지자율증명제도 도입으로 인한 원산지허위증명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함께 도입되었다. 즉 원산지허위증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29]하고, 수입자 및

29) 한·칠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원산지허위증명죄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실로 원산지 증명서를 잘못 증명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자의 원산지입증책임을 명시하여 원산지의 정확성을 소명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히려 자율증명제하에서는 수출자의 자율적인 책임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허위증명의 가능성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증명제와 기관증명제의 장·단점을 <표 3-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12> 원산지증명제의 장·단점 비교

	자율증명제	기관증명제
장점	• 발급절차 신속·편리 • 증명서 발급비용 절감 • 통관절차 간소화 • 계약당사간 자율책임 가능 (수입자와 수출자와 공동책임)	• 공신력이 높아 우회수입 방지 기대감
단점	• 허위증명 가능성 * 원산지입증책임, 현지검증제도, 허위증명처벌제 등 보완제도 도입	• 수출신고와 증명서 발급절차 중복 • 절차 복잡, 시간·비용 증가 • 요식행위 • 수입국 세수손실
사례	한·칠, 한·EFTA	한·싱
외국	NAFTA, 미·싱, 미·호, 캐·칠, 싱·뉴 등	아세안, 일·멕, EU·칠레 등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국의 행정관행과 관련제도 등에 따라 입장이 상이하다. 미주지역美洲地域의 경우 대부분이 자율증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아세안은 기관증명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FTA 국가의 경우 대부분 자율증명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EU도 과거에는 기관증명제를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제한적 자율증명제(절충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의 서식, 유효기간, 제출방식 등에 있어서도 FTA별로 동일하지는 아니하다. 원산지 증명서 서식과 관련, KEFTA

는 기존의 특정 양식에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 대신에 송품장 또는 기타 상업서류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하는 매우 간편화된 방식Invoice Dedaration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세관에 등록한 성실한 빈번수출자의 경우 송품장에 원산지 서명을 생략하고 세관등록번호로 대체하는 편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 FTA별 차이점은 <표 3-1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3-13> FTA별 원산지증명방식 비교

구 분	KCFTA	KSFTA	KEFTA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 싱: 세관 * 한: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증명방법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양국간 각자 증명서식	인보이스 신고방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2. 원산지검증제도

(1) 원산지검증제도의 의의

원산지검증제도는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와 원산지 조작을 통한 관세탈루 행위의 차단과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입자가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만으로 원산지의 정확성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원산지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명세서, 원재료 원가내역서, 제조공정서 및 생산시설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통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수입자를 통한 확인이 곤란하며, 현지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통한 최종적인 실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2) 원산지검증제도의 종류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에 따라 직접검증방식, 간접검증방식 및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직접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입국의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간접검증방식은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은 수출국 세관당국에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출국 세관당국의 조사과정에 수입국 세관직원이 입회 또는 참관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KCFTA 및 KSFTA에서는 직접검증방식을 채택하였으나, KEFTA에서는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였다.

검증방식의 채택은 체약상대국의 특수한 지리적·역사적·정치적 사정, 관세제도와 함께 검증의 효율성·성공 가능성 및 검증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KEFTA의 주요 회원국인 스위스는 23개 주권을 가진 주Canton로 구성된 연방국가인 점과 4개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표방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검증의 효율성·성공 가능성 및 검증비용 측면에서 직접검증방식보다 간접검증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KEFTA의 경우 직접검증방식보다는 간접검증방식이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FTA별 원산지 검증절차

KSFTA에서 채택한 원산지 검증방식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세관당국은 수입자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서도 원산지에 의심이 있는 경우 2단계로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빙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단계로 싱가포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도 원산지의 진실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4단계로 싱가포르 현지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을 방문하여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한·싱 FTA 원산지 검증절차 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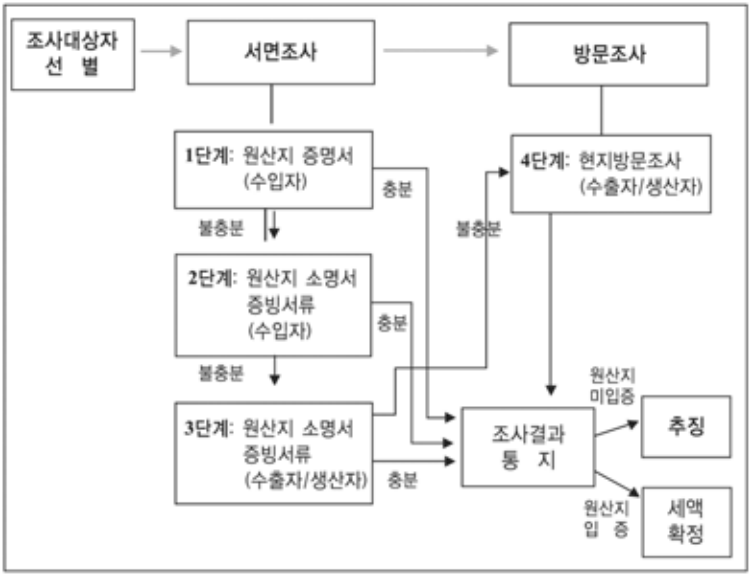

싱가포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확인 및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는 회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그림 3-6> 참조).

<그림 3-6> 현지방문 조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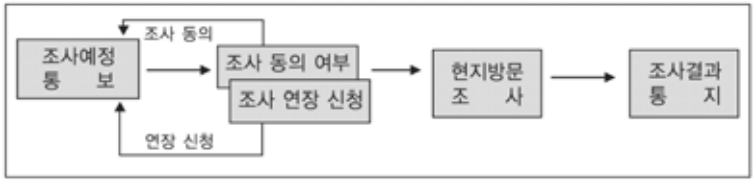

KCFTA의 원산지 검증절차도 KSFTA의 경우와 대부분 동일하다. KEFTA의 경우 제한적 간접검증제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수입국의 직접검증은 제한되며, 대신에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행한다. 수입국 세관당국은 수출국 세관당국에 세관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수출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수출국 세관당국은 10개월 이내에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회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회신내용이 불충분한 때에는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를 불인정하고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수출국 세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수출국 세관의 직무태만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검증결과를 수입국에 회신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수입자

의 관세추징 등 손해발생에 대하여 수출국 세관은 민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각 FTA별 원산지검증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표 3-14>와 같다.

<표 3-14> FTA별 원산지검증제도 차이점 비교

구 분	KCFTA	KSFTA	KEFTA
검증방식	직접검증	직접검증	제한적 간접검증
현지조사주체	수입국 세관	수입국 세관	수출국 세관 (수입국 세관직원 참여)
회신기간	없음	없음	10개월
미회신시 조치	없음	없음	특혜관세 불인정

제4장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Restrictiveness) 분석

Ⅰ. 시작하면서

FTA 원산지규정은 우회수입을 방지하면서 기업의 글로벌 부품 조달을 원활하게 해야 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FTA가 보호주의적 시각에서 원산지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이 복잡하고 엄격해질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자·생산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FTA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상쇄하게 된다. 따라서 가급적 단순하면서 중립적인 형태의 원산지규정 설정이 필요하다. 시장개방 협상을 통해 무세화 적용대상 물품으로 구분되더라도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못하게 되면 관세철폐 혜택으로부터 배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교역에 장애가 된다. 몇 년전부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를 위한 조치 중 핵심사안으로 통관절차의 개선과 원산지규정의 단순화를 꼽고 있다.

FTA 상대국마다 원산지규정을 다르게 설정할 경우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가급적 동일한 형태의 원산지규정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모든 FTA 대상국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산업 및 무역구조를 고찰함으로써 자국에 적합한 형태의 원산지규정을 FTA별로 설정하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칠레 FTA에서 관세양허 협상을 통해 칠레 철강시장을 개방시켰더라도 원산지규정이 열연강판을 냉연강판으로 만드는 공정을 원산지규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열연강판을 수입, 우리나라에서 만든 냉연강판은 원산지가 일본이 되어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FTA 체결의 의미가 반감된다.

원산지규정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FTA 정책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깊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FTA 연구는 주로 관세철폐의 효과 추정, 산업별 파급효과 추정 및 대응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원산지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원산지규정 설정방식에 따라 그 분석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은 FTA의 핵심 부분으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기업의 투자 및 생산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대부분의 FTA가 서로 다른 내용의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바, 이는 각국별 고유의 산업경제적 특성, 수출입의 구조, 정치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3개의 FTA를 발효·타결했으나, 이들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별로 각각 다르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영향에 대한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상태로 보면,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아세안, 일본(협상 소강상태), 캐나다 등과의 FTA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원산지규정이 채택될 것이다. 모든 협정마다 다른 원산지규정의 설정은 분명 향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 될 것이다.

Ⅱ. FTA와 원산지규정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경제통합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FTA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는 정책 추진현황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관세철폐의 효과 추정 위주로 이루어졌다. 즉 관세철폐의 정태적 효과(무역창출, 무역전환)가 경제통합의 경제적 이익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FTA 효과의 크기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바로 원산지규정이다.

원산지규정은 어떤 상품이 특정 무역협정에 규정된 특혜관세의 적용대상이 되는가의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로, 아무리 '수준 높은' 자유화 내용이 FTA에 포함되었더라도 원산지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적용대상 폭이 축소된다면 무역자유화의 의미가 약해지게 된다. 원산지규정은 불법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회원국간 교역을 촉진시키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으나, 많은 FTA에서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수입제한적 조치로 활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대부분의 FTA에서는 산업보호적 측면이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FTA에서 채택되는 원산지규정은 업계의 요청, 정부의 정책 목표 등에 의해 품목·산업마다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원산지규정은 산업보호주의적 입장이 강한 편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원산지규정의 조화를

위해 EU 원산지규정인 PANEURO 시스템Pan-European System을 도입하고 있으나, PANEURO 자체도 다수 산업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30] 즉 PANEURO는 품목별로 엄격하면서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EU가 체결하는 모든 FTA에 공통적으로 채택된다는 점으로 보면 원산지규정의 조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어떤 원산지규정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부분의 FTA 원산지규정(특히 NAFTA 및 NAFTA 아류 원산지규정)은 분명 너무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생산자는 원산지규정 충족을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2005년 7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200개가 넘는 FTA가 발효·체결되고 있지만,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원산지규정이 무역제한적인 조치로 작용해 왔다는 점을 인식한 WTO도 통일원산지규정 설정에 노력하고 있다. WTO에서 논의되는 기준은 통일원산지규정으로 불리며, WTO 공식출범 이후 몇 년째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31] 통일원산지규정은 전세계 WTO 회원국 모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FTA 회원국간에만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과는 상당부분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 협정에서 처음으로 특혜원산지규정을

30) PANEURO 시스템은 EU가 1997년 이후 타결한 협정부터 채택·적용되었음. PANEURO 시스템이 적용된 대표적인 FTA는 유럽-중동 연계협정(Association Agreement),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비아, 슬로베니아, 멕시코, 남아공, 칠레 등과 체결한 FTA 협정임.

31) 통일원산지규정에 대한 협상은 1995년 WTO 출범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아직도 협상이 진행중에 있음. 당초 1998년 7월까지 협상을 타결할 계획이었으나, 매년 1년씩 타결시한을 연기하여 왔고, 현재 2006년 7월말까지 타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음.

도입하였고, 2004년말 타결된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칠레와의 협정에서와는 다른 기준이 채택되었다.[32] 현재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 아세안과의 FTA에서는 또 다른 원산지규정이 논의되고 있다.[33] 즉 상대국에 따라 업계의 요청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는 서로 다른 기준을 도입하게 되나, 대부분의 경우 무역촉진적 측면보다는 수입제한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은행이 2003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측면에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잔존하고 있는 무역장벽 중 가장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원산지규정을 지적하고 있다.[34] 따라서 대부분의 FTA에서 원산지규정은 FTA에서의 관세철폐 효과를 당초 예상보다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의 원산지규정을 엄격성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석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가방법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지수Restrictiveness Index를 계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제3절에서 고찰하는 바와 같이, 일부 연구에서는 FTA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있었으

32)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채택한 특혜원산지규정은 방콕협정임. 동 협정의 정식 명칭은 "동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개발도상 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협정"이며, 1976년 6월 발효되었음. 회원국은 6개국으로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2001. 5. 23 가입)이며, 방콕협정은 제3라운드(2001. 10 ~ 현재) 협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원산지규정은 부가가치 45%(최빈국은 35%)로 정해져 있음.

33) EFTA와의 협상은 2005년 7월 공식타결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협정 내용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지 않았음.

34) Lederman, Daniel, William F. Malony and Luis Serven, *Lessons from NAFTA for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Countries*, World Bank, 2003.

나, 이는 주로 자동차산업 등과 같이 특정 산업에 대한 원산지규정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국한되었다. 특정 FTA에 채택된 원산지규정 전체가 회원국간 교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FTA가 5천개 이상 달하는 품목(HS코드 수)에 대해 원산지규정을 규정하고 있어, 이들 기준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연구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지수Restrictiveness Index에 대한 연구도 지난 몇 년 사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 분야 연구에 가장 선도적인 연구로는 Estevadeordal(2000), Brenton and Manchin (2002), Augier, Gasiorek and Lai-Tong(2003), Estevadeordal and Suominen (2003), 호주 정부기관인 Productivity Commission(2004)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를 측정하고, 이 지수를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을 평가하고자 한다.

Ⅲ.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FTA 추진의 역사가 짧아 학계에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이 낮았고, 기초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초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업계나 정부는 NAFTA 등에서 설정한 원산지규정을 거의 대부분 원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칠레 FTA 협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참고자료로 NAFTA의 원산지규정을 사용하였다. 업계의 요구에 따라 일부 기준을 조정하는 선에서 FTA 원산지규정을 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칠레 FTA의 원산지규정을 분석하여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특히 업계)는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기초연구 자체가 없어 협상에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논의가 부실한 편이다.

한편, 외국에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초연구를 일부 수행한 바 있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우리나라가 칠레 및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내용을 엄격성지수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향후 체결될 FTA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외국의 연구사례

FTA 역사가 긴 외국에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준 이루어졌으나, 이들 연구의 다수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바람직한

원산지규정을 제시하거나, 원산지규정 충족에 따른 추가비용을 업계 면담조사를 통해 추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NAFTA 등의 원산지규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Koskinen(1983)은 EC-EFTA FTA하에서 핀란드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을 받기 위한 행정비용이 수출 거래액의 1.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고, Holmes & Shephard (1983)는 EFTA에서 EC로 수출할 때 요구되는 문서가 평균적으로 36종류, 페이지 수로는 360쪽에 달함을 보여주었다. Krueger(1993)에 따르면 미국-캐나다 FTA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캐나다 기업들이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과다한 행정비용으로 인하여 역내산에 따른 관세혜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정 산업에 대한 FTA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논문은 Lopez-de-Silanes 외(1994)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의 연구진들은 일반균형시뮬레이션모형(CGE)이 원산지규정의 영향을 반영하도록 시도했으나, 원산지규정의 일부 측면(역내부가가치 반영)만이 모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특정 FTA 원산지규정의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각 산업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자료를 계량화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원산지규정을 모형화해서 그 영향을 시뮬레이션할 경우 연산해演算解의 수렴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편, 개별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원산지규정의 경제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SITC(1985)가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산지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업체당 3만~10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Stankovsky(1990)의 연구는 오스트리아가 EC에 가입하기 전 EC 회원국과의 교역에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비용이 수

출가의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수출이 회원국의 역외 관세율 차이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관세를 외생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원산지규정의 무역굴절 감소효과를 추정해 볼 수도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Lloyd(1997)는 평균부가관세율Value Added Tariff을 제안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제조된 중간재를 투입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히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기보다는, 역외산 중간재와 역내산 중간재의 투입비율을 반영하는 관세의 부과를 제안하고 있다. Lloyd의 제안은 경제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2. 국내의 연구사례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내의 학술적인 연구는 다른 무역분야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빈약한 상황이다.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다른 FTA에서의 사례 수집(즉 산업별 원산지규정 정리)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정인교(1999)는 CGE 모형을 이용하여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동 연구는 원산지규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와 고려하는 경우를 나누어 한국과 일본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원산지규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농산물과 공산품의 수입을 각각 171.45%, 39.64%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원산지규정이 고려되면 농산물은 230.81%로 증가하는 대신 공산품의 수입은 34.73%로 하락하게 된다. 이 연구는 엄격한 원

산지규정을 설정하고, FTA내 거래 품목이 역내산품에 한정되도록 모형을 통제한 것으로,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 품목에 대한 원산지규정이 어느 정도의 보호장벽으로 작용하는가를 나타내는 관세상당치를 연구자가 가정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FTA 정책에서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방호경(2004), 송송이(2005)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자료를 발간했는데, 관련 분야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FTA에서의 원산지규정 평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첫 FTA인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발효되었고, 아직까지는 양국간 교역이 몇 개 품목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원산지규정이 크게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한 첫 FTA이므로 현재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원산지규정이 하나뿐이므로 추가비용이 낮고, 보완적인 수출구조로 통상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증명서의 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어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교역에 대한 장애는 향후 몇 건의 FTA가 더 체결된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싱가포르와의 FTA가 서명, 발효되고, 또 다른 FTA가 발효되면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Ⅳ.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Restrictiveness Index)

1. Estevadeordal 엄격성지수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는 Estevadeordal(2000)이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의 연구자들은 Estevadeordal의 지수를 수정·보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Estevadeordal 지수는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에서 확대되었으며, 호주의 정부 연구기관인 Productivity Commission(2004)의 연구도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에 근거하고 있다.

Estevadeordal(2000)은 NAFTA에 채택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카테고리별로 1~7의 지수를 부여하였다. 여기서 지수가 높을수록 생산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지수들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가정하고 있는데, (1) 2단위(CC) 세번변경은 4단위(CTH) 세번변경보다 엄격하고, 4단위 세번변경은 6단위(CTSH) 세번변경보다 엄격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2) 역내부가가치 요건과 특수공정요건이 세번변경요건과 결합될 경우, 원산지규정이 더 엄격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이들 두 가지 가정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며, 업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7의 지수에 대한 설명은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Estevadeordal 지수는 NAFTA와 같이 세번변경을 주로 사용해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원산지규정으로 사용하는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에 적합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나, 누적기준Cumulation,

미소기준De Minimis 등의 원산지규정 완화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표 4-1> Estevadeordal 지수의 개요

지수	지수의 요건
1	HS8~10단위 변경(CI)
2	지수 1보다는 엄격하되, HS6단위 변경(CTSH) 요건 수준의 엄격
3	지수 2보다는 엄격하되, CTSH+역내부가치가치(RVC) 요건 수준의 엄격
4	지수 3보다는 엄격하되, HS4단위 변경(CTH) 요건 수준의 엄격
5	지수 4보다는 엄격하되, CTH+RVC 수준의 엄격
6	지수 5보다는 엄격하되, HS2단위 변경(CC) 요건 수준의 엄격
7	지수 6보다는 엄격하되, CC+특정공정(SP) 요건 수준의 엄격

제4장에서는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를 이용한 가장 최근 연구인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과 Productivity Commission(2004)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은 엄격성지수를 사용하여 주로 유럽(EU-남아공 FTA, EU-멕시코 FTA 등)과 미주지역(NAFTA, 멕시코-콜롬비아-베네수엘라 FTA[G-3], MERCOSUR-볼리비아 FTA 등) 12개 FTA의 원산지규정을 분석하였고, Productivity Commission(2004)의 연구는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 지수를 보다 더 세분화하고 이를 미주(NAFTA, MERCOSUR FTA 등), 유럽(EFTA, EU-폴란드 FTA 등), 동아시아지역(AFTA, CER 등), 대륙간 FTA(EU-멕시코 FTA, 미국-싱가포르 FTA 등)를 포함한 총 18개 FTA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원산지규정으로는 관세세번변경, 부가가치요건, 특정공정기준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들 3가지 기준 중 세번변경을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요건, 특

정공정기준의 순으로 엄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번변경에서도 HS2단위 변경이 가장 엄격하며, 다음으로는 4단위, 6단위 순으로 엄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에 따르면, EU의 원산지규정은 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요건 및(혹은) 특정공정요건을 결합한 엄격한 수준의 원산지규정을 사용하고 있다. EU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중 하나는 EU가 체결한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은 협정간 차이점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1973년 사이프러스와 체결한 협정에서의 원산지규정이 오늘날 EU의 PANEURO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4-2>에서 보듯이,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의 비중이 협정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간 체결된 협정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사용되는 비중이 57～64%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눈이 띄는 차이점은 최근의 FTA에서는 전 품목 중 25%에 대해 복수의 원산지규정을 규정하고, 수출자·생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거의 협정에 비해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은 유럽과는 달리 미주지역의 FTA 원산지규정이 협정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분석대상 FTA의 선정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럽의 경우, EU가 체결한 협정 위주로 분석했으나, 미주지역의 경우, 북미지역 국가간 협정인 NAFTA, 남미지역 국가간 협정인 G-3, 멕시코가 볼리비아와 체결한 FTA, 캐나다-칠레 FTA 등으로 협정 체약국이 각각 다른 협정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Productivity Commission의 연구에서 다소 시정되었다.

NAFTA는 2단위 세번변경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G-3

와 멕시코의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비중이 2단위 세번변경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MERCOSUR가 칠레, 볼리비아와 체결한 협정에서는 전 품목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표 4-2> 유럽과 미주지역 FTA에서의 관세세번변경 기준의 비중

(단위: 관세세번의 총수 대비 비중, %)

	EU가 체결한 협정					
	남아공	멕시코	칠레	폴란드	에스토니아	GSP(93)
CC+	14.24	14.47	14.24	14.08	14.08	13.93
CTH+	57.65	58.34	57.25	62.43	63.62	63.70
CTSH+	2.37	2.37	2.25	2.34	2.38	2.36
기타	25.74	24.82	26.26	21.15	19.92	20.01
	미주지역의 FTA					
	NAFTA	G-3	멕시코의 FTA		MERCOSUR의 FTA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칠레	볼리비아
CC+	54.44	42.08	42.77	42.68	0.00	0.00
CTH+	40.65	46.02	47.19	47.15	100.00	100.00
CTSH+	4.35	7.88	9.66	9.21	0.00	0.00
기타	0.56	4.02	0.38	0.96	0.00	0.00

주: EU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와 체결한 협정은 각각 1993년과 1995년도 협정임.
자료: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의 <Figure 2>와 <Table 3>을 근거로 작성.

EU의 원산지규정이 미주지역과 다른 점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미주지역의 FTA는 세번변경기준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EU의 PANEURO 시스템에서 세번변경 외 다른 기준이 사용되는 비중은 20~26%에 이른다. 이를 통해 미주지역 FTA의 원산지규정이 EU보다 더 엄격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은 분석대상 12개 FTA에서 NAFTA와 G-3가 EU의 PANEURO보다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설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원산지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원산지규정이 가장 완화된 기준을 도입하였는데, 동 공동시장은 HS4단위 변경기준(CTH)을 전 품목에 걸쳐 적용함으로써 지수 4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호주 PC의 엄격성지수

호주의 Productivity Commission(2004)의 연구는 자국이 뉴질랜드와 체결한 경제긴밀화협정(CER)의 원산지규정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데 기본목적이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의 연구는 Estevadeordal(2000),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으며, FTA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원산지규정을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 평가지수를 설계하였다. Productivity Commission의 원산지규정 평가지수는 크게 3가지 기준으로 대분되고, 각 기준하에서 세분화된 평가지수의 합산으로 최종평가되는데, 이들 3가지 기준은 1) 1차기준(원산지를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인), 2) 보완기준(기본기준에 보완적으로 적용), 3) 기타기준으로 구성된다. Productivity Commission 지수는 0~1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엄격한 원산지규정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각 기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Estevadeordal(2000)의 지수보다 정교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1차기준에 대한 비

중이 전체의 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보완기준에 대해 25%, 기타기준 15%의 비중으로 각 기준별 엄격성을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표 4-3> 호주 PC의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 평가기준과 지수

대분류	엄격성 카테고리의 내용	지수
1차기준		0.60
1	관세세번변경(CTC)	0.20
2	역내부가가치(RVC)	0.20
3	특정생산공정(SP)	0.20
보완기준		0.25
4	누적계산의 형태	0.05
5	누적기준 이상의 요건	0.05
6	수입관세 환급	0.05
7	역외공정	0.05
8	제조공정의 지리적 위치	0.05
기타기준		0.15
9	확실성	0.05
10	행정비용(compliance and administration costs)	0.05
11	원산지규정 면제요건(waiver provision)	0.05
비중합계		1.00

자료: Productivity Commission(2004), <Table 2.1>(p.7).

또한 세부기준별로 다시 세분화 카테고리에 대해 가중치가 부여됨으로써, 지수 계산은 가장 세부적인 기준으로부터 출발하도록 평가방법이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관세세번변경에 대한 20%의 가중치도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가중치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만약 HS8～10단위 세번변경을 적용한다면 0의 가중치를, HS6

단위 변경은 0.2 가중치, HS4단위 0.5 가중치, HS2단위 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즉 세번변경기준이더라도 가장 덜 엄격한 HS8단위 세번변경일 경우 가중치 0을 부여함으로써 1차기준의 지수는 0(=0.2*0)이 되지만, HS2단위 세번변경일 경우 1의 가중치가 적용됨으로써 1차기준의 최고치 0.2(0.2*1.0)로 계산되도록 한다.

<표 4-4> 관세세번변경 요건 카테고리별 가중치(%)

지수 가중치	세분화된 가중치	엄격성 카테고리
0.20		
	0.00	HS8~10단위 세번변경 변경(CI)
	0.20	HS6단위 세번변경 변경(CTSH)
	0.50	HS4단위 세번변경 변경(CTH)
	1.00	HS2단위 세번변경 변경(CC)

역내부가가치 요건은 세분화된 카테고리별로 가중치가 부여된다. 또한 세부카테고리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역내부가가치 카테고리 지수를 계산하게 된다. 역내부가가치 지수 0.20도 6개의 세부카테고리로 나뉘어져 평가되는데, 6개 세부카테고리 중 역내부가가치 퍼센트에 대한 지수가 0.10으로 가장 높고,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 역내산 생산비 계산방식 등 5개 항목에 대해 각각 0.02의 지수가 부여되어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세부카테고리는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각 세부카테고리에 대해서도 구성요소별로 가중치가 부여되어 세부카테고리별 지수도 계산된다. 예를 들어, 0.10의 지수가 부여되는 역내부가가치 최저상한선 비율(%)은 <표 4-5>에서 보듯이 6개 항목으로 구성된 가중치가 평가에 사용되는데, 원산지규정 충족이 용이한 25% 역내부

가가치 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가중치는 0.0이 적용된다. 그러나 역내부가가치 비중이 25%를 초과할 경우 가중치가 점점 증가하며, 6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비중이 의무화될 경우 가중치는 1.00이 된다.

<표 4-5> 역내부가가치에 대한 엄격성 카테고리

번호	세부카테고리 내용	가중치
	역내부가가치 기준	**0.20**
2.1	역내부가가치의 퍼센트	0.10
2.2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	0.02
2.3	국내산 부품 생산비 요소	0.02
2.4	원부자재 비용산정시 제외항목 여부	0.02
2.5	생산비 계산방법	0.02
2.6	비역내산 원부자재 계산방법	0.02

보완기준은 0.25의 지수가 부여된 항목으로 누적가치 방식, 누적기준 이상의 요건, 관세환급, 역외가공, 제조공정의 지리적 위치 등 5개의 항목에 대해 각각 0.05의 지수가 부여된다. 원산지규정에서 누적은 자국 외 다른 국가에서 제조된 부품과 원재료를 일정 조건하에서 역내산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으로, FTA 회원국으로부터 제조된 부품에 대한 누적을 인정하는 것을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이라고 하고, 비회원국산 부품도 인정하는 것을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으로 부른다. 누적에 대해서도 가중치가 부여되는데, 가장 엄격하지 않은 조건인 유사누적에 대해서는 0.2의 가중치를, 유사누적보다 엄격한 양자누적은 0.6의 가중치, 누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1.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0.05의 지수가 부여된 관세환급의 경우, 환급이 허용되면 0.0의 가중치가, 반대로 환급이 허용되지 않으면 1.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역외가공도 허용 여부에 따라 0.0과 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제조공정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는 3개의 가중치가 부여되는데, 지리적 위치 요건이 없으면 0.0의 가중치를, 역내국가로 한정할 경우 0.5, 수출국 요건으로 강화될 경우 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1차기준 및 보완기준 외에 원산지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은 원산지증명에 따른 확실성의 정도, 행정비용 및 지속성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0.05의 지수를 부여한다. 확실성은 원산지규정으로 HS2단위 세번변경 혹은 생산공정 요건만이 부여되는 경우에 가중치 0.0을, 역내부가가치, 세번변경(HS2단위) 및 역내부가가치, 생산공정 등으로 구성되어 확실성을 떨어뜨릴 경우 1.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행정비용 항목은 FTA 회원국이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을 가진 여러 개의 FTA에 가입했을 경우, 수출자·생산자의 원산지규정 충족에 따른 행정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FTA 회원국이 1개의 협정만을 가입한 경우, 0.0의 가중치가 부여되고, 유사한 원산지규정을 가진 복수의 협정에 가입한 경우 0.5의 가중치를,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을 가진 복수의 협정에 가입했을 경우 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원산지규정은 기업의 생산기술의 채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내부가가치 최고한도Threshold에 가까운 기업은 생산공정을 변화시키기보다는 현재의 생산조건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원산지규정 면제조항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업은 최적의 생산기술과 영업환경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면제조건은 4개의 가중치가 부여되는데, 전 관세세번에 대해 면제조항이 부여된다면 0.0의 가중치를, 다수 품목에 대

한 면제가 허용되면 0.5, 모든 품목에 대해 원산지규정이 설정된다면 1.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표 4-6> Productivity Commission의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

	EFTA	EU-폴란드	PANEURO	EU-멕시코	CER	AFTA
1차기준	0.15	0.33	0.30	0.31	0.14	0.08
보완기준	0.11	0.12	0.08	0.08	0.07	0.11
기타기준	0.10	0.15	0.15	0.13	0.13	0.13
합 계	**0.35**	**0.60**	**0.53**	**0.52**	**0.33**	**0.31**
	NAFTA	미-싱가포르	미-칠레	MERCOSUR	칠레-MERCOSUR	Andean
1차기준	0.46	0.23	0.26	0.37	0.18	0.14
보완기준	0.09	0.04	0.08	0.11	0.11	0.09
기타기준	0.13	0.11	0.13	0.13	0.13	0.10
합 계	**0.67**	**0.39**	**0.46**	**0.60**	**0.42**	**0.33**

자료: Productivity Commission(2004), <Table A.2>(pp.44-45)

<표 4-6>은 Productivity Commission이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stevadeordal and Suominen (2003)에서의 결과와 같이, NAFTA의 원산지규정이 EU의 원산지규정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외에 0.60 이상의 지수로 나타난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가진 FTA로는 EU-폴란드 FTA, 남미공동시장이 있다. 한편,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의 연구에서는 EU가 체결한 협정이 대부분 유사한 수준의 엄격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Productivity Commission의 연구에서는 협정별로 상당히 다른 수준의 엄격성을 지닌 원산지규정이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EU-폴란드 FTA는 엄격성지수가 0.60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EU-멕시코 FTA 지수는 0.52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PANEURO의 0.53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체결한 NAFTA는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최근에 체결된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은 엄격성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싱가포르, 칠레와 체결한 협정의 원산지규정은 각각 0.39, 0.46으로 NAFTA의 0.67에 비해 월등하게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Productivity Commission의 연구에 의하면, 원산지규정 엄격성이 분석대상 FTA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품목별로도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FTA 중 가장 완화된 원산지규정을 채택한 FTA는 AFTA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호주-뉴질랜드 FTA인 CER도 완화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남미의 G-3도 완화된 원산지규정을 가진 협정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V.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

1.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표 4-7>은 우리나라가 칠레 및 싱가포르와 체결한 양자간 FTA의 원산지규정을 Estevadeordal 지수(<표 4-1> 참조)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HS2단위로 볼 때,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가 유사한 수의 품목에 대해 개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7>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의 원산지규정 요약

(단위: HS6단위 품목 수)

한-칠레 FTA	지수	HS6	한-싱가포르 FTA	지수	HS6
CC + SP	7	178	CC + SP	7	292
CC + RVC	7	80	CC + RVC	7	144
CC	6	1,287	CC	6	874
CC or (CC+RVC)	6	1	CC or (CTH+RVC)	6	5
CC or (CTH+RVC)	6	27	CTH + RVC	5	278
CC or (CTSH+RVC)	6	31	CTH	4	2,968
CTH + RVC	5	322	CTH or RVC	4	1
CTH	4	1,739	CTH or (CTH+RVC)	4	85
CTH or (CTH+RVC)	4	66	CTH or (CTSH+RVC)	4	397
CTH or (CTSH+RVC)	4	473	CTSH + RVC	3	19
CTH or RVC	4	739	CTSH	2	117
CTSH + RVC	4	131	CTSH or RVC	2	1
CTSH	3	105	RVC	1	31
CTSH or RVC	3	5			
RVC	1	30			
총 계		**5,214**			**5,212**

주: CC - HS2단위 세번변경, CTH - HS4단위 세번변경, CTSH - HS6단위 세번변경, RVC - 역내부가가치 요건, SP - 특정생산공정 요건

개략적으로 보면 원산지규정의 구조도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로 HS2단위(CC) 및 HS4단위(CTH) 세번변경 요건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세번변경 요건에 비해 특정공정(SP) 요건과 역내부가가치(RVC) 요건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2~3년 시차를 두고 체결된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두 협정의 원산지규정간 차이도 적지 않다. 엄격한 원산지규정으로 볼 수 있는 Estevadeordal 지수 6 이상이 적용되는 품목의 비중이 한-칠레 FTA에서는 총 품목 수 대비 31%로 높았으나,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25%로 낮아졌다. 반면 HS4단위 변경기준인 지수 4의 비중은 60%에서 66%로 높아졌다. 이를 통해 한-칠레 FTA에서보다는 한-싱가포르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이 완화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4-8>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규정(세번변경기준)

(단위: 관세세번의 총수 대비 비중, %)

	NAFTA	EU-멕시코 FTA	G-3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CC+	54.44	14.47	42.08	30.21	25.18
CTH+	40.65	58.34	46.02	59.76	67.79
CTSH+	4.35	2.37	7.88	9.46	6.44
기타	0.56	24.82	4.02	0.58	0.59
합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NAFTA, EU-멕시코 FTA, G-3에 대한 지수는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에서 인용하였음.

관세세번변경 요건을 기준으로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의 원산지규정을 정리해 보면 <표 4-8>과 같다. 다른 FTA와의 비교를 위해 NAFTA, EU-멕시코 FTA 및 G-3의 기준도 동시

에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원산지규정에서 HS2 단위 세번변경(CC)비중이 NAFTA보다는 낮으나, EU-멕시코 FTA 보다는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S4단위 세번변경 이상(즉 CC와 CTH)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90%를 초과하고 있는 데 비해, EU-멕시코 FTA는 7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에 민감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G-3의 경우, CC와 CTH의 비중이 88%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FTA의 경우, 한-칠레 FTA보다는 한-싱가포르 FTA에서 CC와 CTH 기준이 더 많이 사용되었고, 그 결과 싱가포르와의 FTA 원산지규정이 더 엄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싱가포르는 수입에 대해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의 FTA 무역자유화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작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과, 싱가포르 총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는 세번변경 외 부가가치, 공정요건 등을 원산지규정 설정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Estevadeordal 지수로 본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엄격성

한편, <표 4-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Estevadeordal 지수를 통해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분석해 보면, <표 4-8>에서의 분석과는 일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규정이 NAFTA와 G-3 규정보다는 덜 엄격한 것으

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관세세번을 기준으로 한 분석(CC와 CTH 기준의 비중합)에서와는 달리, 칠레와의 FTA에서보다는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우리나라는 완화된 원산지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4-9> Estevadeordal 지수로 본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NAFTA	EU-멕시코 FTA	G-3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지수의 평균치		5.00	4.50	5.00	4.69	4.57
지수 범위	상위 25%	6.00	5.00	6.00	6.00	6.00
	하위 25%	4.00	4.00	4.00	4.00	4.00

자료: NAFTA, EU-멕시코 FTA, G-3에 대한 지수는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에서 인용하였음.

3. PC 지수로 본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엄격성

Productivity Commission의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로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를 분석하여 보면, 두 FTA의 지수는 각각 0.47과 0.44로 나타났다. 총 0.60이 배정된 1차기준에서는 싱가포르와 체결한 협정의 원산지규정이 칠레와의 협정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0.60 지수 중 0.20이 부여된 관세세번변경 항목에서는 HS4단위가 양 FTA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지수(0.10 = 0.20 * 0.5)가 계산된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체결한 협정에서는 역내부가가치(공제법) 적용 비율을 45%(HS6단위기준 290개 품목), 50%(606개 품목) 및 55%(65개 품목)로 지정하였다.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50%가 지수 계산에 사용된 반면, 칠레와의 협정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45% 역내부가가치가 사용됨으로써 한-싱가포르 FTA에 1차기준 지수가 칠레와의 FTA

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10> PC의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1차기준	0.28	0.30
보완기준	0.11	0.06
기타기준	0.08	0.08
합계	**0.47**	**0.44**

그러나 보완기준에서는 한-칠레 FTA 지수가 싱가포르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보완기준 지수 구성요소 중 누적허용, 미소조항, 관세환급, 지리적 요건 등의 항목에 대해 양 FTA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역외가공을 허용하고 있어 지수가 0.05만큼 작아지게 되었다. 기타기준은 양 FTA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0.08의 지수가 부여되었다.

<그림 4-1> FTA 원산지규정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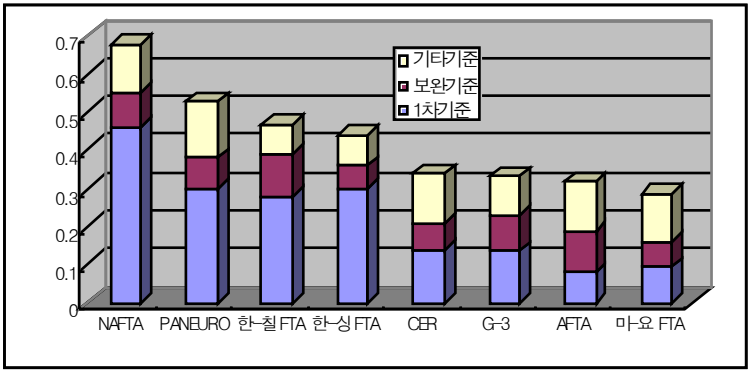

<그림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에서의 원산지규정은 NAFTA, PANEURO보다는 덜 엄격하지만, AFTA, 호주-뉴질랜드 FTA(CER), G-3보다는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의 지수가 높은 것은 1차기준에서의 지수가 다른 FTA보다 높기 때문이며, NAFTA는 섬유, 의류, 자동차 등에서 품목별 공정요건을 많이 부과함에 따라 1차기준의 지수가 다른 FTA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요르단과의 FTA에서 미국은 공정요건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기준 지수가 크게 낮아졌고, 그 결과 동 FTA는 Productivity Commission 연구에서 원산지규정 지수(0.29)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주요 FTA에서의 산업별 원산지규정

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FTA에서 원산지규정은 수입억제라는 방어적 목적에서 채택되며, 이로 인해 개방에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FTA 대상국에 따라 민감도가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형태의 규정을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산업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분석하는 것은 관련 우리 업계가 FTA 원산지규정 설정 논의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제5장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주요 FTA에서 채택된 원산지규정을 산업별로 고찰하기로 한다. 각 산업별 HS코드 수가 많고, 개별 품목별 원산지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산업별 원산지규정을 요약·정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가급적 특징 위주로 분석하였다. 편의상 자동차, 섬유, 광산물 및 석유화학, 철강 및 전자산업,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의 체계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EU의 원산지규정(PANEURO), 일본-싱가포르 FTA, 미국-싱가포르 FTA, 멕시코-EU FTA, 칠레-EU FTA, 한국-칠레 FTA 등이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규정을 산업별로 수립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품목별 개방의 민감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 품목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논의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품목별 민감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품목을 도출하는 데 연

구목적이 있다.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사전연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연구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를 제시하고, 그 예시를 보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Ⅱ. 주요 FTA에서의 산업별 원산지규정

여기서는 NAFTA, PANEURO 등 주요 지역무역협정(RTA)에서 채택된 원산지규정을 주요 산업별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FTA의 경험이 많은 NAFTA, EU 등에서는 품목별 민감성 외에도 부품조달체계, 산업적 특성, 정치적 고려 등을 반영한 원산지규정을 FTA에서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아직 이러한 측면까지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산지규정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자동차

주요국들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에서 자동차산업의 핵심 쟁점은 수입된 엔진을 장착한 새시에서 완성차 조립을 한 경우 엔진장착국에 원산지를 부여할 것인지 완성차 조립국에 원산지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15개국의 경우에는 엔진장착국에 원산지를 인정하자는 입장을 주로 보이는 반면, EU, 브라질, 터키, 인도 등은 완성차 조립국을 선호하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립에 대해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만, 소방차를 비롯한 특수차량은 그 용도가 완전히 변경되므로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표 5-1>은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 채택된 자동차산업 원산지

<표 5-1> 자동차산업 원산지규정

구분	내 용
NAFTA	- 자동차와 경승용차 및 이들의 엔진과 트랜스미션은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62.5% 이상일 경우 인정 - 기타차량과 이들의 엔진, 트랜스미션, 부속품은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60% 이상일 경우 인정
PANEURO	-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60% 이상일 경우 인정
미국-싱가포르 FTA	- 제8701호~제8706호의 트랙터, 수송용 자동차, 승용차, 화물자동차, 특수용도차량, 엔진을 갖춘 샤시는(제8705호 제외) 집적법으로 30% 이상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국가로 인정 - 제8707호(차체)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했을 경우
멕시코-EU FTA	- 제87류(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품과 부속품)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이전 공정에서의 부가가치 합이 전체 공정의 4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칠레-EU FTA	- 제87류의 이전 공정에서의 부가가치의 합이 멕시코-EU 원산지규정과 같이 전체 공정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원산지로 인정함 - 제8709호(자주식 작업차와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 제8710호(전차와 장갑차량)는 세번이 변경되었거나, 이전 공정에서의 부가가치의 합이 전체 공정의 30% 혹은 4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제8711호(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및 사이드카)는 이전 공정의 부가가치의 합이 전체 공정의 40%를 넘지 않으면서 세번이 변경되었을 경우, 혹은 이전 공정의 부가가치의 합이 전체 공정의 20%(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이 50cm³를 초과할 때는 2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일본-싱가포르 FTA	- 제87류(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는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함 - 제87류 이외의 내용 없음
한국-칠레 FTA	- 제87류(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의 경우 제8701호~8705호는 공제법 45% 이상, 집적법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 제8706호(엔진을 갖춘 샤시)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해, 제8707호~제8716호의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폼용 트랙터 및 그 부분품은 세번이 변경되었을 경우와, 일정수준(공제법 45% 이상, 집적법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규정의 주요 특징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체결된 FTA(또는 RTA)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CTH 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NAFTA는 자동차산업의 세부품목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혹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순원가 계산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자동차와 경승용차 및 이들의 엔진과 트랜스미션은 부가가치기준으로 역내산이 62.5% 이상을 차지해야 하므로 상당히 강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타차량과 이들의 엔진, 트랜스미션, 부속품은 부가가치기준으로 역내산이 60% 이상이어야만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EU도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순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며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60%를 초과해야만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최근 체결한 협정에서 미국과 EU는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NAFTA, PANEURO에 비해 완화된 규정으로 채택하였다.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세번변경 또는 집적법을 인정기준으로 사용하되 집적법은 30% 이상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로 제약하고 있다. 한국-칠레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트랙터, 버스,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량 등의 품목에는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은 30%의 역내부가가치가 포함되어야 원산지로 인정한다. 그리고 차체부(분)품의 경우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에서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택일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섬유류

섬유산업에 대한 원산지규정의 주요 이슈는 방사, 방출, 제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원산지를 직물의 염색 및 날염공정 수행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물 생산국으로 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EU, 호주 등의 국가는 염색 및 날염공정 수행국에 원산지를 부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브라질, 캐나다 등의 국가는 직물 생산국이 원산지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체로 섬유류 수입국가는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한 반면, 수출국가는 덜 엄격한 규정을 협정에 도입하고 있다. NAFTA에서는 원사부터 최종제품 생산까지 3회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져야 역내산으로 판정되는 섬유사 산지주의Yarn-forward Rule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북미지역이 공급부족을 겪는 직물인 편직내의류, 브래지어, 셔츠는 섬유사 산지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북미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섬유원료산 직물에는 더 엄격한 섬유원료 산지주의Fiber-forward Rule를 적용한다.

EU의 경우, 인조스테이플 섬유(HS5501～5507)는 화학원료로 섬유를 제조하는 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순수가공공정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으며, 자수포(HS5810)는 방사로 품목을 제조하는 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순수가공공정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04년 발효된 EU-이집트 FTA에서는 털실Yarn, 직물Fabric의 면혼용 범위가 50%에서 89%로 상향조정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역내산으로 인정함에 따라 갈수록 섬유산업에 대한 원산지규정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35] 하지만 HS50～63류

35) 예를 들어, 이집트산 면섬유 75%와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섬유 25%로 생산한 Yarn은 이집트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게 됨.

이외의 의류 부속품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섬유제품의 제조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36]

<표 5-2> 섬유류 원산지규정

구분	내 용
미국-싱가포르 FTA	- 제5001호~제5003호(누에고치, 생사, 견웨이스트)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해 원산지로 인정함 - 제5004호(견사)는 제5005호~제5006호를 제외한 호로부터, 제5005호(견방사)는 제5004호~제5006호를 제외한 호로부터, 제5006호(견사·견방사)는 제5004호~제5005호를 제외한 호로부터 세번이 변경된 경우 - 제5201호~제5207호의 면, 면웨이스트, 면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 면 재봉사와 면사는 제5401호~제5405호, 제5501호~제5507호를 제외한 류에서 세번이 변경된 경우
멕시코-EU FTA	- 제50류~제53류의 실크, 양모·섬유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면,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은 세번변경기준에 의해, 제5003호의 경우 견웨이스트의 소면, 소모 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제52류(면)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에 의함
칠레-EU FTA	- 제50류(견)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해, 제5003호의 경우 소면 또는 견웨이스트의 소모가 행해진 국가 - 제5004호~제5006호의 견사, 견방사는 소면, 소모 등 면화 및 양털 잣기 전의 공정이 행해진 곳
일본-싱가포르 FTA	- 제50류(견)는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함 - 제5005호(견방사)는 제28류에서 제32류까지의 화학생산품과 제4701호, 제4706호, 제5001호, 자연산/인조 섬유조직, 견웨이스트로부터 세번이 변경된 경우
한국-칠레 FTA	- 제50류(견)는 매우 세분화된 원산지규정을 규정함 - 제51류(모), 제52류(면), 제60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해, 제61류(의류와 그 부속품), 제62류(의류와 그 부속품), 제63류(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는 우리나라 또는 칠레에서 절단, 재봉, 조립된 것에 한하여 세번이 변경된 경우

36) 예를 들어, Yarn으로 생산되는 바지 생산에 섬유가 부분적으로 사용된 지퍼 등을 사용해도 원산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게 않게 됨.

AFTA에서는 최종적인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하지만 손수건, 숄, 스카프, 침대 커버, 베개 커버 등은 염색, 프린팅, 자수 외에도 단순조합, 라벨링, 프레싱, 드라이클리닝, 마감공정까지 회원국에서 수행해야만 원산지로 인정된다.

멕시코·EU 및 칠레·EU FTA에서는 소면梳綿, 소모梳毛 등 면화나 양털 잣기Carding 전의 공정이 행해진 곳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면과 소모는 실을 잣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정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표 5-2>는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 섬유산업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한국-칠레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공정기준(재단, 봉재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복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De Minimis 규정을 적용할 경우 HS50～63의 섬유류는 가격(8%) 대신 중량기준(8%)을 적용한다. 미-싱가포르 FTA의 De Minimis 규정에 따르면, 섬유류는 역외산 재료가 중량비중 7%를 초과하지 않으면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섬유류 외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기준 10%를 적용하고 있다.

3.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큰 쟁점사항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따르며 부가가치기준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 5-3>은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산업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표 5-3>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협정에서 원산지 인정을 세번변경기준으로 적용하되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석

<표 5-3>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원산지규정

구 분	내 용
NAFTA	- 제27류(석유 및 석탄류)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함 - 제28류~제38류(화학제품류)는 모두 HS6단위 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순원가법 기준으로 역내산 비율 50% 이상, 거래가격기준 적용 시에는 6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조합적용함 - 제39류(플라스틱) 및 제40류(고무)에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조합적용함
PANEURO	- 제27류(석유 및 석탄류)는 역외산 재료 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가공공정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함 - 제28류(무기물) 및 제29류(유기물)는 부가가치기준 또는 특정가공공정기준 중 양자택일하여 적용 가능토록 함 - 제30류~제38류는 특정가공공정기준과 역외산 재료 비중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부가가치기준을 복합적용함
미국-싱가포르 FTA	- 제2710호(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 및 웨이스트 오일)는 세번이 변경된 경우, 혹은 화학적 반응에 의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경우
멕시코-EU FTA	- 제27류(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함 - 제2707호~제2715호의 물품은 세번이 변경되었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지만 이전 공정의 부가가치의 합이 전체 공정 부가가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칠레-EU FTA	- 제27류(광물성 연료, 광물류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함 - 제2707호(고온 콜타르의 증류물)는 정제 혹은 한 가지 이상의 특수한 공정을 거쳤거나, 세번이 변경되었거나, 이전 공정에서의 부가가치가 전체 부가가치의 50%를 넘지 않는 경우 - 제28류(무기화학품 및 귀금속)는 세번이 변경되었거나, 같은 물품에 해당하는 호로 변경되었더라도 이전 공정에서의 부가가치가 전체 부가가치의 20%를 초과하지 않거나, 이전 공정의 부가가치가 전체 부가가치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일본-싱가포르 FTA	- 제2704호, 제2707호, 제2801호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함 - 제2803호(탄소)는 세번이 변경되고 투입된 재료의 가치가 제품가치의 60%를 초과할 경우
한국-칠레 FTA	- 제28류(무기화학품 및 귀금속), 제29류(유기화학품)의 경우, 세번이 변경되었거나, 혹은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 제30류(의약용품)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함 - 제3002호(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는 세번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공제법의 경우 45%,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유제품의 경우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꼭 세번변경이 아닐지라도 화학적 반응에 의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NAFTA는 28～38류의 품목에서 HS6단위 변경기준과 순원가법 기준으로 역내산 비율 50% 이상 또는 거래가격기준 적용 시에는 60% 이상의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EU는 28류(무기물) 및 29류(유기물)에서 부가가치기준 또는 특정가공공정기준 중 양자택일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30～38류는 특정가공공정기준과 역외산 재료 비중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부가가치기준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역외산 재료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역외산 재료 비중 한도를 50%로 높게 책정하고 있다. 한국-칠레 FTA에서는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 중 하나만 만족시키면 역내 원산지로 규정하여 다른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편이다.

4. 철강산업 및 전자

철강부문 원산지협상의 쟁점사항은 철강의 코팅에 대해서 원산지를 부여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에 대해서 FTA 원산지규정은 각 품목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EU, 브라질 등의 국가는 코팅공정 수행국으로 원산지를 인정하자는 주장을 펴는 반면, 미국, 아르헨티나 등은 강판 생산국을 선호하고 있다.

<표 5-4>는 철강산업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협정별로 요약·정리한 것이다. 철강부문의 경우 주로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변경된 것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품목에 따라

서는 부가가치기준 등의 다른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 5-4> 철강산업 원산지규정

구 분	내 용
NAFTA	- 제72류(철강)에는 4단위 또는 6단위의 세번변경기준 적용 - 제73류(철강제품류)에는 모두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복합적용하되, 일부 품목(제7308호)에는 특정공정기준도 함께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
PANEURO	- 제72류(철강)에는 특정공정기준을 적용함 - 제73류(철강제품류)에는 모두 특정공정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을 조합적용하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기준을 보조적으로 조합적용함
미국-싱가포르 FTA	- 제7201호(선철과 스피그라이즌), 제7202호(페로얼로이), 제7203호(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등은 세번변경기준에 의함
멕시코-EU FTA	- 제7208호~제7216호의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주괴, 제7206호, 제7207호의 반제품 또는 다른 기본적인 형태로부터 세번이 변경되었을 경우
칠레-EU FTA	- 제7208호~제7216호는 주괴 혹은 제7216호(주괴 혹은 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철과 비합금강)의 일차형상물로부터 세번이 변경된 경우
일본-싱가포르 FTA	- 제7208호~제7209호, 제7301호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함
한국-칠레 FTA	- 제7201호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해당 물품으로 변경된 경우; 제7202호~제7204호의 경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해당 물품으로 변경된 경우

NAFTA의 경우 72류(철강)에 대해 4단위 또는 6단위의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73류(철강제품류)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혼합적용하되, 일부 품목(HS7308)에서는 특정공정기준도 함께 충족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EU는 72류에 특정공정기준을 적용하고 73류에 대해서는 특정가공공정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을 조합적용하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기준을 보조적으로 함께 적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칠레 FTA의 경우 품목에 따라서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전자산업의 원산지규정도 주로 엄격한 세변변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NAFTA의 사례를 예로 들면 컴퓨터, 원거리 통신장비, TV, 기계 공구, 반도체 등과 같은 전자산업품목을 대상으로 엄격한 세번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제품의 핵심중간조립Subassembly이 북아메리카에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외의 전자제품은 다음의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방법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첫 번째는 세번변경 요건만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약간의 세번변경 및 역내부가가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부(분)품의 최종제품으로의 변형과 관련이 있는데, 이때 제조공정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역내부가가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NAFTA는 전자산업에서의 De Minimis 기준을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쓰레기 분쇄압축기, 빨래 건조기, 식기 세척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생산에서 사용되는 원료 중 역내산이 아닌 품목에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농산물 및 가공식품

농산물의 원산지규정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투입품과 산출물이 충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와 가공공정이 원산지를 부여할 정도로 포괄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항이다. 또한 ① 가축의 도축공정,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은 수산물의 원산

지, ③ 설탕의 정제공정, ④ 커피의 볶음공정, ⑤ 우유 조제품 생산, ⑥ 정제유 생산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다.

농업부문은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협상과정에서도 가장 미결 쟁점사항이 많은 부분으로, 농수산물분야의 경우 아직도 117건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NAFTA에서 미국은 멕시코를 통한 무관세 시장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낙농제품, 감귤류, 커피, 견과류, 과일 및 채소를 예로 들 수 있다. 모든 원료 농산물은 100% 역내산이어야 하고, 단순 감귤주스(신선, 냉동, 농축, 재처리 포함)도 100% 역내산 신선감귤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낙농제품도 100% 역내산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De Minimis 법칙은 대부분 가공 농산물에 적용되지만, HS 제1류에서 제24류까지의 농산물에 관하여,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료의 HS6단위 세번Subheading이 최종 완성품의 세번과 다르게 분류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낙농품, 벌꿀, 설탕, 동식물성 지방, 식용과일, 견과류 및 우유, 주스, 알코올음료 등의 농산품에도 De Minimis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37]

<표 5-5>는 세계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한국-칠레 FTA에서는 과실혼합물, 혼합주스 등 20류 일부에는 부가가치기준 중 공제법으로 80% 이상이 역내산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HS1～24류 모두 De Minimis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미-싱가포르 FTA에서는 낙농제품, 유지류, 당류, 주류에는 De Minimis가 적용되지 않는다.

37) 예를 들면, 특정 주스 및 농축주스 생산에 사용되는 과일과 주스에는 De Minimis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표 5-5> 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규정

구 분	내 용
미국-싱가포르 FTA	- 제1905호(베이커리 제품), 제2002호(조제, 저장처리한 토마토), 제2004호(조제,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6호(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 과피), 제2101호(커피,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제2102호(효모, 기타 단세포 미생물 및 조제한 베이킹파우더), 제2203호(맥주)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함. - 제2105호(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는 제4류와 소호1901.90으로부터의 우유고형물 무게의 10%를 넘는 유제품을 제외한 다른 소호로부터 세번이 변경된 경우
멕시코-EU FTA	- 제1901호(맥아엑스와 그 조제식료품)의 맥아엑스는 제10류의 곡물에서 세번이 변경된 경우와 이전 공정에서의 부가가치가 30%를 초과하지 않고 완전생산된 경우 - 제1904호(콘플레이크와 기타 유사 조제식료품)는 세번이 변경된 경우
칠레-EU FTA	- 제1901호 중 맥아엑스는 제10류의 시리얼로부터 세번이 변경된 경우 - 제2006호(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는 모든 재료의 부가가치가 이전 공정에서의 부가가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로 인정 - 제2009호(과실주스와 채소주스) 중 감귤주스는 완전생산되어야 하며,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부가가치의 합이 전체 공정의 30% 이하인 경우 - 제2202호(설탕 및 기타 감미료)는 세번이 변경된 경우와, 부가가치의 합이 전체 공정의 30% 이하인 경우, 파인애플과 라임, 포도를 제외한 사용된 모든 과실즙이 완전생산기준에 의해 생산될 때
일본-싱가포르 FTA	- 제2106호(조제식료품), 제2203호(맥주), 제2206호(기타 발효주), 제2207호(에틸알코올)은 세번이 변경된 경우와, 이전 공정에서의 부가가치의 합이 전체 공정의 40% 이하인 경우 - 소호2208.70(리큐어, 감로주)은 세번이 변경된 경우와, 이전 공정에서의 부가가치의 합이 전체 공정의 40% 이하인 경우
한국-칠레 FTA	-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 제15류(동식물성유지)는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 제1704호(설탕과자), 제1806호(조제식료품), 제19류(곡물 분·전분)는 세번이 변경되었거나,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 제22류(음식·알코올 및 식초)에서 제2001호(물과 얼음 및 눈)를 제외하고는 세번이 변경되었거나,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Ⅲ. 품목별 민감도와 원산지규정 검토

기본적으로 원산지규정은 원산지 제품에 대한 교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우회수출을 방지하고,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산업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여, 역내산 원부자재가 최종재 생산에 가급적 많이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로서, NAFTA 섬유류 원산지규정에서와 같이 특정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강제하는 원산지규정을 들 수 있다.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동 규정은 다양한 요인을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적 측면, 원산지규정과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성 등에 대한 정보는 관련 업계의 정보 제공 없이는 그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FTA에 대한 경험이 상당수준 축적되어야만 이러한 요인들을 원산지규정 검토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의 경우, 개방에 대한 민감성이 높을수록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품목별 민감성을 측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나, 업계 입장에서는 FTA하에서 상대국 시장개방에 따른 수출증가 가능성은 평가절하하는 반면, 수입증가 가능성과 이로 인한 피해를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피해업계 종사자들은 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를 강조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개방을 최소화하도록 협상담당자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품목별 민감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우리나라의 관련 부처는 이러한 민감성 자료를 원산지규정 설정에 1차기준으로 활용하고,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산지규정을 최종 확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품목별 민감성은 품목별 산업경쟁력 무역지수, 관세율, 수입액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게 된다.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 중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와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가 많이 활용되어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내 무역지수Intra-industry Trade Index를 변형한 무역특화지수를 활용하여 품목별 수출경합 및 보완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역특화지수는 특정시장에서 양국간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 각 품목의 수출입 차를 해당품목의 교역액(수출입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수출에 있어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양국간 교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으로 수출입 차가 교역규모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수출입 차를 교역규모로 나누어 작성한 것이다.

무역특화지수(TSI)는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되며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 0에서 -1로 갈수록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아지며, 0에서 1로 갈수록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TSI_{ij} = \frac{(X_{ij} - M_{ij})}{(X_{ij} + M_{ij})}$$

여기서 TSI_{ij}는 i 국가의 j상품의 무역특화지수, X_{ij}는 i 국가의 j상품의 수출액, M_{ij}는 i 국가의 j상품의 수입액을 의미한다.

자국과 상대국(혹은 대세계) 교역의 TSI 지수는 아래의 <표 6>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편의상 대세계 교역을 기준으로 TSI를 계산하고, TSI 지수의 크기를 기준으로 경쟁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정 품목에 대한 TSI 지수가 일정 수준(0.25) 이상의 (+) 값을 가지고 있다면, 그 품목은 수출특화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반대로 -0.25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수입특화 구조를 가진 품목으로 간주된다. TSI 값이 -0.25와 0.25 사이에 위치한다면 그 품목은 경쟁관계에 있으며, TSI 값이 -0.25～0의 값을 취한다면 그 크기에 따라 수입우위, 0～0.25의 범위에 있다면 수출우위 품목이 될 것이다.

TSI의 분석결과에 따라 모든 품목은 이들 4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에 속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어떤 품목이 수출특화 혹은 수입특화일 경우에는 민감성이 덜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할 필요가 없으며, 어차피 수입품에 의존해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도 민감성은 낮을 것이다.[38] 한편,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품목들은 관세철폐 일정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들 품목들이 관세양허에서 예외나 장기의 관세철폐 이행기간 부여 대상으로 선정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은 TSI 지수 외에도 실행관세율, 수입량 등과 더불어 검토된다.[39] TSI 지수 자체도 수입액과 수출액에 기

38)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개방에 더 민감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음. 특히 현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유망품목이 될 수 있을 경우 무역보호조치 강구 필요성이 대두될 것임. 그러나 이러한 품목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음. 따라서 본 연구에 제시된 원산지규정 강화품목은 민감품목의 일부로 해석될 필요가 있음.

39) 개방민감도를 원산지규정에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초하기 때문에 지수가 높게 나오더라도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경우, 단일의 기준에 의하기보다는 복수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SI 지수로 민감성이 인정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실행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수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때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이유로 민감성과 무관하게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고, 원유와 같이 수입액은 많지만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관세율이나 수입액만으로는 충분한 지표가 될 수 없다.

<표 5-6>은 원산지규정의 강화 및 완화 조건을 TSI 지수, 관세율, 수입액을 기준으로 요약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을 강화해야 하는 품목은 상대국과 경쟁관계 및 보완관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관세율이 높으면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수입되는 품목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면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원산지규정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품목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이유는 해당 품목의 대세계 경쟁력이 약하거나 혹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므로 실행관세율 분석은 품목별 민감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익한 지표가 된다. 다음으로 요구되는 분석은 품목별 국내수요 대비 국내생산 비중의 파악이

민감한 품목이라면 관세양허 협상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그러나 원산지규정 작성이 현실적으로 개방민감도에 근거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방민감도를 원산지규정 설정에 사용하였음. 이에 대한 이론적 논거는 향후 보완연구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다. 이는 FTA 체결로 인한 관세철폐시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의 국내수요의 일부를 회원국산으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국내생산 비중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HS6단위별 생산액 자료를 구하기는 매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품목별 국내생산 비중을 고려하지 못하고, 대신 품목의 수입금액 분석을 통해 FTA 체결이 국내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수입금액이 높은 품목일수록 관세철폐에 따른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

<표 5-6> 원산지규정 강화 및 완화 조건

	수출입 영향	TSI	관세율	수입액
원산지규정 강화품목	수입민감	경쟁관계	높음	일정규모 이상
원산지규정 완화품목	수출유망	특화관계	낮음	

대부분의 FTA에서 농수산업에 대해서는 세번변경 등을 이용한 실질적 변형기준을 원산지규정으로 설정하고 있다.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많이 반영되어 엄격한 규정이 일반화되어 있어 분석의 의미가 크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원산지를 규정해야 할 품목을 예시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 품목에 대한 원산지규정 설정은 광범위한 조사와 분석을 수반하므로 본 연구는 엄격한 원산지규정 설정 방법에 대한 논의와 간단한 예시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1. 대세계 교역기준 원산지규정 강화 대상품목

품목별 경쟁력 분석을 통한 민감품목 선정은 HS6단위 UNCTAD COMTRADE의 대세계 수입액 통계(HS2002 분류기준)를 이용하였다. HS6단위기준 제조업(25~97류) 품목 수는 총 4,438개이고, 우리나라와 대세계 교역간 TSI 분석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은 모두 808개이고, 특화관계I에 있는 품목은 3,630개이다. 이들 경쟁관계 808개 품목이 엄격한 원산지규정의 1차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7> TSI로 분석한 우리나라 교역의 경쟁 및 특화관계

경쟁관계I (한국 - 수입우위) 428개 품목	경쟁관계II (한국 - 수출우위) 380개 품목
특화관계I (한국 - 수입특화) 2,495개 품목	특화관계II (한국 - 수출특화) 1,135개 품목

주: 수출특화 및 수출우위는 TSI의 값이 (+)의 값을 가지는 경우이며, 수입특화 및 수입우위는 (-)의 값을 가짐을 의미함.

<표 5-8>에서 민감품목의 1차대상으로 선정된 808개 품목도 관세율과 수입액 기준을 적용하여 민감성을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어떤 수준의 관세율이 원산지규정 강화 및 완화 조건의 기준이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단 얼마라도 관세가 적용되면 민감한 품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나, 제조업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4%를 기준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관세구조가 8% 중심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심세율의 절반인 4%를 관세율 기준 자유화 민감성 하한선으로 삼고자 한다. 즉 4%보

다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다른 기준을 충족시키는 품목은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설정되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표 5-8> 관세율과 수입액 분포(2004년 기준)

수입액\관세율	0≤T<3%	3≤T<5%	5≤T<8%	T≥8%
0~50만 달러	184	38	193	507
50만~500만 달러	232	47	309	873
500만~5,000만 달러	239	49	372	874
5,000만~5억 달러	129	28	124	181
5억 달러 이상	30	6	16	6

4% 관세율은 대세계 수입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뒤에서 분석하는 바와 같이 개별 국가와의 FTA 분석에서는 상대국 관세율 수준을 고려하여 비교관세율 수준을 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도국(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아세안)과의 FTA에서는 5%를 자유화 민감성 하한선으로 설정하며, 일반적으로 저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선진국가와의 FTA에서는 3%로 설정하고자 한다. 상대국의 관세율이 높다면,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다소 높더라도 개방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40]

비록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TSI 지수가 높게 나타났더라도 수입액이 적다면 굳이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세계 수입액이 5,000만 달러를 넘는 품목을 원산지규정 강화품목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관세율에서와

40) 수출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관세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경쟁력은 TSI 지수로 평가되는 것으로 가정함.

마찬가지로 수입액 하한선 설정이 자의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5,000만 달러 이상 수입품목이 566개(HS6단위)에 불과하지만, 수입액 기준으로는 대세계 총수입의 85%를 육박하고 있어, 이들 품목이 우리나라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개별 국가(지역)와의 FTA에서 수입액 기준 하한선은 대세계 교역에 기초한 분석에 비해 낮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 FTA에서의 하한선은 편의상 500만 달러로 설정하고자 한다. 한편, 하한선을 너무 낮추게 되면 원산지규정 강화 대상품목이 증가하게 될 것이나, 너무 많은 품목이 엄격한 원산지규정 적용대상으로 선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41]

<표 5-7>에 제시된 808개 품목은 원산지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품목을 TSI 지수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 중 실행관세율 및 수입액 요건을 충족시키는 품목만이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할 대상품목이 될 것이다. 상기 방식으로 원산지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할 제조업 품목은 35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표 5-9>에 제시되어 있으며, 주로 석유화학, 비철금속, 자본재 및 부(분)품에 포함되는 기계와 전기전자제품(일부 내구소비재도 포함)과 자동차부품 등의 업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41) 3% 관세율과 500만 달러 이상 수입품목은 4,437개 품목의 38%인 1,656개가 해당되며, 수입액으로는 57.7%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 4%, 수입액 5,000만 달러 이상 품목의 수는 342개, 총수입 비중은 40.7%임(관세율 4%, 수입액 500만 달러 이상 품목의 수는 1,609개, 총수입 비중은 50.7%). 관세율 5%, 수입액 500만 달러 이상 품목의 수는 1,573개, 총수입 비중은 49.3%임.

<표 5-9> 전세계 교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원산지규정 강화 대상품목(HS6)

270710, 280920, 281700, 282300, 282739, 283650, 283692, 284990, 290230, 290243, 290410, 290516, 290539, 290729, 291030, 291440, 291450, 291521, 291531, 291611, 291719, 291739, 291890, 292143, 292151 ,292159, 292249, 292610, 292700, 293359, 293361, 294190, 300450, 310530, 320413, 320415, 320417, 320420, 320500, 320649, 320650, 320710, 320910, 320990, 321410, 321490, 321511, 330420, 330610, 330749, 340111, 340212, 340219, 340220, 340290, 340319, 340490, 340590, 350300, 350610, 380810, 380890, 380991, 381230, 381400, 390290, 390530, 390610, 390690, 390730, 390740, 390950, 391729, 391739, 391990, 392010, 392030, 392069, 392091, 392113, 392119, 392310, 392340, 392350, 392390, 392490, 392590, 400270, 400811, 400829, 400921 ,400942, 401691, 401699, 410441, 410719, 411200, 411390, 420292, 420310, 420330, 441229, 500720, 500790, 511119, 511130, 511211, 511219, 520839, 521011, 530610, 530929, 540210, 540233, 540262, 540710, 550962, 551321, 551511, 560392, 560790, 560811, 580122, 580136, 590210, 600122, 610333, 610343, 610510, 610711, 610910, 611020, 611030, 611710, 620193, 620212, 620213, 620311, 620312, 620331, 620341, 620413 ,620431, 620432, 620433, 620439, 620442, 620451, 620452, 620463, 620469, 620520, 621040, 621510, 630533, 630790, 640299, 640399, 670420, 680410, 680800, 681019, 690320, 691490, 700510, 700521, 700719, 700992, 701090, 701329, 701690, 701931, 701959, 710510, 720292, 720299, 730721, 730799, 730830, 731029, 731100, 731815, 731816, 731822, 731823, 732090, 732599, 732690, 740911, 740931, 740940, 740990, 741011 ,741021, 741122, 760612, 760691, 760719, 760820, 760900, 761610, 810296, 820559, 820740, 820890, 820900, 821191, 821210, 821300, 830140, 830160, 830210, 830249, 830890, 830990, 831000, 840211, 840410, 840490, 840734, 840890, 840991, 841191, 841221, 841290, 841391, 841582, 841780, 841790, 841850, 841869, 841989, 841990, 842010, 842123, 842139, 842410, 843120, 843780, 843810, 843850, 843920, 843999, 844190, 844340, 844720, 844839, 844849, 844851, 844859, 845290, 845530, 845590, 845710, 845819, 845899, 845921, 845969, 846190, 846210, 846221, 846229, 846239, 846291, 846390, 846599, 846610, 846722, 846729, 846799, 847290, 847710, 847720, 847780, 847790, 847981, 847990, 848130, 848190, 848210, 848350, 848410, 848590, 850140, 850162, 850212, 850300, 850590, 850610, 850650, 850720, 850780, 850790 ,850940, 851150, 851230, 851519, 851539, 851631, 851660, 851671, 851679, 851850, 851993, 852090, 852432, 852721, 852910, 853110, 853190, 853521, 853620, 853630, 853649, 853650, 853720, 853921, 853929, 853939, 854012, 854430, 854710, 870590, 870810, 870829, 871419, 900390, 900653, 900691, 901310, 901380, 901780, 901819, 901850, 902810, 903031, 903210, 903300, 920110, 920710, 920991, 920999, 940190, 940390, 940429, 940510, 940520, 940600, 950390, 950639

주: 5천만 달러 이상 수입품목, 4% 이상의 실행관세율 부과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함.

2. 주요 경제권 및 국가와의 FTA에서 원산지규정 강화 대상품목

위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세계 교역자료를 이용하여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해야 할 대상품목을 선정해 보았다. 여기서는 개별 국가 및 경제권을 분석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TSI 분석, 관세율 및 수입액을 기준으로 원산지규정 강화 대상품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대세계 교역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와는 달리 원산지규정 강화 대상품목 선정기준을 완화시킨다. 예를 들어, 대세계 분석에서는 5,000만 달러 이상 수입품목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으나, 개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3%(개도국에 대해서는 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품목당 수입액이 1,000만 달러(개도국 5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42]

(1) NAFTA

대NAFTA 교역에서의 경쟁 및 특화관계를 분석한 <표 5-10>을 보면 우리나라가 수출특화를 보이는 품목은 1,428개인 데 반해 수입특화는 2,156개를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가 비교적 수출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188개이며 수입우위는 158개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42) 대상품목 선정기준이 다소 엄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원산지규정 강화품목의 수를 가급적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동 기준을 채택했음.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의 FTA 추진시 예상되는 원산지규정 강화 대상품목 분석을 실시했으나,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음.

<표 5-10> TSI로 분석한 대NAFTA 교역의 경쟁 및 특화관계

경쟁관계I (한국 - 수입우위) 158개 품목	경쟁관계II (한국 - 수출우위) 188개 품목
특화관계I (한국 - 수입특화) 2,156개 품목	특화관계II (한국 - 수출특화) 1,428개 품목

최종분석 결과 대NAFTA와의 FTA 협상에서 원산지규정을 강화할 품목은 최소한 27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품목이 석유화학제품 중에서도 유기화학과 플라스틱으로 분류되는 업종이며, 기계류 및 전자제품의 부품, 그리고 자동차부품 등이 포함되었다.

<표 5-11> 대NAFTA 교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원산지규정 강화품목(HS6)

293399, 370790, 390690, 390799, 392010, 392310, 392390, 401693, 630790, 731100, 732690, 840999, 841191, 841430, 841490, 848180, 848190, 848340, 850110, 850440, 852721, 852910, 853650, 853710, 854390, 870829, 901819

(2) EU(15개국)

우리나라의 대EU 교역에 대하여 경쟁 및 특화관계를 분석한 <표 5-12>를 보면 한국이 수출특화를 보이는 품목은 713개인 데 반해 수입특화는 2,997개였다. 수출보다는 수입특화 품목이 훨씬 많다. 한편 우리나라가 수출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129개이며 수입우위는 160개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5-12> TSI로 분석한 대EU 교역의 경쟁 및 특화관계

경쟁관계I (한국 - 수입우위) 160개 품목	경쟁관계II (한국 - 수출우위) 129개 품목
특화관계I (한국 - 수입특화) 2,997개 품목	특화관계II (한국 - 수출특화) 713개 품목

대EU와의 FTA 협상에서 원산지규정을 강화할 품목은 최소한 18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공업 중에서는 의류 등의 업종이 포함되었으며 중화학공업 중에서는 석유화학제품의 플라스틱류와 기계류, 정밀기기 등이 포함되었다.

<표 5-13> 대EU 교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원산지규정 강화품목(HS6)

294190, 320417,390740, 391990, 392190, 392690, 611011, 620462, 640399, 732393, 761699, 820900, 841430, 845710, 848210, 870899, 901819, 901839

(3) AFTA

우리나라의 대AFTA 교역에서의 경쟁 및 특화관계를 분석한 <표 5-14>를 보면, 우리나라가 AFTA에 비해 수출특화를 보이는 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수출특화를 기록하고 있는 품목은 2,249개인 데 반해,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1,137개였다. 한편 비교적 수출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145개이며 수입우위는 149개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5-14> TSI로 분석한 대AFTA 교역의 경쟁 및 특화관계

경쟁관계I (한국 - 수입우위) 149개 품목	경쟁관계II (한국 - 수출우위) 145개 품목
특화관계I (한국 - 수입특화) 1,137개 품목	특화관계II (한국 - 수출특화) 2,249개 품목

AFTA와의 FTA 협상에서 원산지규정을 강화해야 하는 품목은 최소한 19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공업 중에서는 직물과 잡제품 등의 품목이 포함되었으며 중화학공업 중에서는 일부 석유화학제품과 배구소비재에 포함되는 전자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표 5-15> 대AFTA 교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원산지규정 강화품목(HS6)

210690, 291531, 291532, 291712, 292241, 390690, 390810, 392010, 401699, 520523, 540249, 701120, 848210, 851850, 851999, 854890, 900150, 903039, 950390

(4) 중국

중국과의 교역에서 경쟁 및 특화관계를 분석한 <표 5-16>을 보면 우리나라가 수출특화를 보이는 품목은 1,428개인 데 반해 수입특화는 1,865개를 보였다. 한편 174개 품목에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수출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213개 품목에서는 수입우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TSI로 분석한 대중국 교역의 경쟁 및 특화관계

경쟁관계I (한국 - 수입우위) 213개 품목	경쟁관계II (한국 - 수출우위) 174개 품목
특화관계I (한국 - 수입특화) 1,865개 품목	특화관계II (한국 - 수출특화) 1,428개 품목

최종분석 결과 대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원산지규정을 강화해야 할 품목은 AFTA보다 훨씬 많은 54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상품목은 화학섬유, 직물과 잡제품 등 경공업 업종과,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 및 전자제품 등의 중화학공업 업종이 포함되었다.

<표 5-17> 대중국 교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원산지규정 강화품목(HS6)

281122, 291739, 293499, 320412, 320416, 320419, 370790, 390190, 392310, 392329, 392330, 392620, 401693, 401699, 511219, 520522, 520839, 550810, 550962, 560392, 581092, 700521, 701120, 701400, 731589, 731815, 741021, 741110, 760692, 820790, 830160, 830210, 841370, 841391, 841590, 841899, 848190, 848340, 850131, 850300, 850519, 850780, 850990, 851840, 851999, 852721, 852910, 853110, 853590, 853630, 853921, 853990, 854091, 854430

제6장

결 론

Ⅰ. 원산지규정에 대한 일반사항

Krueger(1993)에 따르면, FTA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 중의 하나인 원산지규정은 비회원국을 차별화하고 수입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관세철폐 내용이 모두 이행된 NAFTA에서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무역장벽을 분석한 World Bank(2003)의 자료도 NAFTA에서 향후 추가협상이 필요한 분야로 원산지규정을 들고 있다. 엄격한 원산지규정으로 특히 멕시코 소재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시장개방에 대한 취약산업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 흔히 사용된다. 이를 원산지규정의 정치경제적 효과라고 부른다. 즉 비록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다른 회원국 기업들이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이 급증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관련 업계에 주지시킴으로써 관세인하를 수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산지규정이 경제논리와 무관하게 일단 엄격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경제통합의 경험이 부족한 국가가 처음으로 FTA를 추진할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일단 엄격하게 설정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규정을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 업계와 정책담당자들이 쉽게 합의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원산지규정의 이론적 측면을 고찰하고, 세계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3장은 우리나라 FTA(한-칠레, 한-싱가포르)에서 채택된 원산지규정을 분야

별로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원산지규정이 다른 FTA에 비해 어느 정도 엄격한가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대체로 우리나라는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5장에서는 주요 산업별 원산지규정을 세계 주요 FTA별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교역통계, 관세율, 수입액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규정을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A에서는 불법 역외산 품목의 우회수입 방지와 회원국간 교역확대, 나아가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엄격하며 까다로운 절차들을 통해 원산지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원산지 관련 연구들을 보면 복잡한 원산지규정이 오히려 특혜무역협정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원산지규정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미소기준, 롤업Roll-up 원칙, 누적Cumulation 조항 등을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PANEURO 모델에서처럼 원산지 인정을 규정하는 기준을 복수로 명시함으로써 원산지 인정기준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행정비용은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원산지규정이 복잡하면 할수록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요건에 의해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특정공정기준은 가급적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내부가가치의 경우 품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PANEURO 모델인 MC를 기준으로는 45%, NAFTA 모델인 RVC의 기준으로는 50%가 많이 채택되고 있다. 역내부가가치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역내 중간투입재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나라가 채택한 부가가치기준은 기존 협정보다 낮은 편이나, 세번 변경기준의 충족을 동시에 요구함으로써 원산지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FTA에서는 단일 요건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De Minimis는 PANEURO와 NAFTA 원산지규정을 고려할 경우 10%가 적당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De Minimis 적용에 대한 예외조항을 최소화하여 역내 무역창출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Roll-up은 역외국가들이 역내 경제권 중에서 노동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에 현지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역내시장에 진입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조항이나 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와 개방형 경제권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과 관련하여, 기관발급으로 인한 과도한 행정비용의 발생은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특혜무역협정에 따른 편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자율발급제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율증명제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허위증명과 같은 문제점들을 근거로 기관발급을 선호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협정은 원산지입증책임을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부담하도록 명문화시키고, 통상 5년의 수출입 자료보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국가별 수출입구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세계 교역을 중심으로 한 특혜원산지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예를 들어 A국, B국, C국, D국이 있는데 A국은 농업, B국은 농업과 제조업(노동집약적 산업, 대국), C국은 제조업(자본집약적 산업), D국은 농업과 제조업(자본집약적 산업, 대국)에 특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 국가가 다른 3개 국가와의 원산지규정

을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지규정이 협정별로 상이하고 복잡·엄격해짐에 따라 기업에 부과되는 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교역을 위축시켜 왔다. 결국 자유무역협정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원산지규정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자유무역에 따른 효과가 크게 상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협정별로 소폭의 차이가 불가피하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대세계 교역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규정의 확립이 요구된다.

한편 무역특화지수(TSI), 관세율, 수입액 등을 이용한 분석에서 민감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은 원산지 인정에 사용되는 여러 기준 중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고,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과 다른 원산지 인정기준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원산지규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복합기준은 될 수 있는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의 민감품목 분석을 통해 나타난 원산지규정 완화 및 강화 대상품목을 다시 정리하여 보면 <표 6-1>과 같다. 우선 경쟁우위 업종의 경우 경공업에서는 섬유산업에 속하는 일부 기타직물과 가공된 종이류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중화학공업에서는 철강(HS72류) 및 일부 철강제품(HS73류), 자본재에 속하는 일부 기계류, 전자제품에 속하는 일부 준내구재(HS8523) 등과 자동차산업에서 오토바이 부품 등이 경쟁우위 업종으로 분류된다. 한편 경공업에서 섬유산업의 기타직물(주로 원료) 등과 중화학공업에서는 석유화학산업 내에서도 일부 무기 및 유기화학과 일부 철강제품, 자본재에 속하는 기계류, 유선통신기기와 부품에 속하는 반도체 등이 FTA 체결에 따른 파급효과가 비교적 작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경쟁열위 업종은 경공업 섬유산업 내에서도 화학섬유와 일부 직물류 및 의류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중화학공업에서는 기계, 전기전자제품(일부 내구재와 자본재 및 부품), 자동차 일부 부품, 정밀기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 속하는 세부품목은 제5장에서 분석한 대세계 기준 원산지규정 강화품목 리스트에 제시되고 있다. 한편 수입의존 품종은 경공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섬유제품, 신발, 가죽 및 가죽제품, 완구 등이 여기에 속하고 중화학공업에서는 석유화학 및 기타화학제품과 기계,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표 6-1>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규정 협상의 산업별 기본전략

구 분	업 종	근 거	원산지규정 수준
경쟁우위 업종	섬유(기타직물), 종이류, 일부 석유화학(유기화학), 철강, 일부 기계류, 일부 정밀기기(부품), 일부 전자제품, 자동차류 등	관세, 경쟁력, 수출증대	원산지 획득 쉽게
영향이 적은 업종	석유화학산업(무기·유기화학), 기타 직물, 철강, 기계류(자본재), 반도체, 조선, 플랜트, 항공 등	관세장벽이 낮거나, 전세계를 대상으로 수출	원산지 획득 쉽게
경쟁열위 업종	섬유(화학섬유, 일부 직물류 및 의류),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제품(일부 내구재와 자본재 및 부품), 자동차, 정밀기계(자본재) 등	관세, 경쟁력, 육성산업	원산지 획득 어렵게
수입의존 업종	일부 섬유제품, 신발, 가죽 및 가죽제품, 완구, 석유화학 및 기타화학제품, 기계(자본재), 전자(자본재) 자동차(부품) 등	관세, 경쟁력	원산지 획득 쉽게

경쟁열위 업종 중에서도 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원산지 획득을 엄격하게 할 필

요가 있으나 수입의존 업종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세계 경쟁력이 전혀 없거나 혹은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재 및 부(분)품이 여기에 속하므로 우리나라 제품의 대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위해 원산지 획득을 쉽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품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원산지 획득 인정기준을 강하게 규정할지라도 적절하게 미소기준De Minimis이나 누적조항Cumulation 등을 사용하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무역전환 등을 줄일 수 있다. 한편 경쟁열위 업종에서 원산지 인정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 역내부가가치 충족기준을 사용할 경우 유념해야 할 것은 부가가치비중을 너무 높게 설정하게 되면 오히려 생산단가를 높이게 되고, 그 결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Ⅱ.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설정에 대한 시사점

먼저, FTA 특혜관세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특혜관세의 적용범위와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출입 여부 판정을 위한 원산지규정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FTA에서 통일적인 원산지규정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각국의 국내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체약상대국별로 상이한 원산지규정의 채택은 그 자체로서 상당한 교역장벽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여타국과의 FTA에서도 상대국과의 쌍무적 교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특혜원산지규정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원산지규정이 FTA마다 모두 달라 이를 운영하는 세관과 수출입업자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FTA 원산지규정이 체약상대국가와의 상대적 교역특성과 산업구조 등에 따라 양자협상에 의하여 결정됨에 따라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한 기준의 도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예컨대 부가가치비율 산출공식, 기준가격(FOB vs Ex-works), 재료 가격의 평가, 미소기준의 수준, 자국산 선박의 인정범위 등 극히 기술적인 사항까지 달리 규정하는 것은 특히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별로 상이하고 복잡하며 난해한 원산지규정의 사용은 향후 세관당국과 무역업자 사이에 상당한 과세마찰을 야기할 것이며, 원산지규정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은 국가간 관세통상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단일의 단

순화되고 중립화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FTA의 특성상 이는 사실상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그 자체를 세관과 무역업자에게 부담스럽거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가급적 단순하고 이해가 용이하며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는 원산지 확인에 있어서 비교적 신속하고 객관적인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해 나가되, 품목분류 특성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협상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도 가급적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방식을 채택하거나 이미 우리나라가 채택한 기준을 채택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TA 원산지규정은 역내간 교역과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협상시 역내간 교역과 투자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FTA는 시장개방과 함께 무역전환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원산지규정이다. 원산지규정은 생산시설과 생산방식, 원재료와 부품의 조달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산지요건에 맞는 생산방식과 부품을 선택함으로써 특혜관세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산업의 구조·생산방식·원재료 조달방법 등을 고려하여 역내간의 투자와 교역을 최대화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공통적으로 도입한 미소기준, 누적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 등은 역내간의 투자와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도구로 볼 수 있다. 향후 여타 FTA 협상에서도 이러한 기술적인 장치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역외산 제품의 우회수출입을 적절히 차단할 수 있는 효

과적인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약간의 가공만 거친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하게 될 경우 오히려 역외산 재료나 부품의 사용을 촉진시키거나 우회수입의 증가를 초래하여 국내한계기업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이 경우 FTA 체결의 이익이 제3국으로 흘러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3개 FTA 모두 경미한 가공만 거친 물품에 대해서는 여타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산지를 불인정하는 경미한 가공행위의 유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유형을 협정문에 반영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그 유형은 예시규정으로 하는 한편 가급적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경미한 가공행위로 인한 세번변경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인정하는 단서조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SFTA에서는 원산지불인정공정의 유형이 예시방식Illustrative List으로 규정되었으나, KCFTA와 KEFTA에서는 열거방식Exhaustive List으로 규정되어 있다. 향후 FTA에서는 KSFTA에 의한 예시방식으로 추진하되, 불인정공정의 유형을 중립적으로 규정하여 각 FTA별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원산지규정의 도입이다.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번영과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개성공단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점에서 KSFTA에 이어 KEFTA에서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의 특례를 이끌어 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특정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은 WTO

최혜국대우조항에도 어긋날 수 있고, 체약상대국과의 상호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KEFTA에서 개성공단을 특정하지 않고 제한적인 역외가공방식을 채택한 것은 합리적인 접근방법으로 볼 수 있다. 즉 KEFTA에서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중립화하는 대신에 적용대상품목은 실제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품목 위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개성공단 생산품목에 대해 원산지특례를 인정하는 효과를 내게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여타 FTA 협상에서 체약상대국에 큰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주지 않고도 개성공단 나아가서는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인정받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원산지의 검증은 특혜관세의 적용과 우회수출입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고 FTA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도 예외 없이 원산지 검증방법에 관한 장치를 두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검증방법이나 절차는 다소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 검증은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검증비용 및 검증의 효율성과 연계하여 고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CFTA 및 KEFTA에서는 신속·편리한 수출입통관을 위하여 수출단계에서는 수출자의 원산지자율증명을 채택하되, 수입통관 이후 사후적 원산지 확인절차에 따라 원산지를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KSFTA에서는 수출통관단계에서 수출국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한 사전적 확인제도와 함께 수입통관 이후 사후적 원산지 확인제도를 병행 도입함에 따라 무역업자의 부담을 이중적으로 발생시킨 문제점이 있다. 즉 KSFTA에서는 수출통관단계에서 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한 1차적인 사전적 확인을 받고, 수입통관단계에서 수입국 세관에 의해 2차적인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중복적인 확인절차

를 통해 원산지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대부분의 선량한 무역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무역장벽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여타 FTA 협상에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검증의 효율성을 강조한 사후적 원산지확인 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KEFTA의 수출자의 원산지 자율신고제도Invoice Declaration와 수출국 세관과 수입국 세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후적 검증방식은 여타 FTA 협상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검증요청을 받은 수출국 세관이 일정한 기간(10개월) 이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KEFTA는 협정이행의 강제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여타 FTA에서도 협상의 기본모델로 채택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향후 보완사항

본 보고서는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분야가 많다. 먼저,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지 않았다. 비록 이 분야가 당초 본 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엄격한 원산지규정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칠레·싱가포르 및 EFTA와 각각 체결한 FTA의 원산지규정 조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무에 관련되는 사항 위주로 분석했으나, 법리적 차원의 분석도 추가되어야만 완성도 높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산지규정과 관세양허간 상관관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과연 원산지규정이 품목별 민감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품목별 관세수준이 해당 품목의 민감성을 나타낸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설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광범위한 작업을 필요로 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웠다. 대신 주요 국가와의 FTA 추진시 개방에 가장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정하는 분석을 실시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민감품목은 주로 대세계 교역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란 점에서 개별 FTA에서는 민감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 역시 향후 추진되어야 할 분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에 대한 보완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지수를 사용하였으나, 우리나라 산업 및 교역구조에 맞는 지수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고, 소수 품목에 대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분석하게 되면 보다 현실감각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관세청,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원산지규정』, 관세청, 1994.

대한무역진흥공사, 『EC 원산지규정해설』, 1991.

방호경,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송송이, 『원산지규정의 이해와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무역연구소, 2005.

송유철,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방향과 대응과제-, 김관호, 김인배, 송유철, 이호생(공저), 『WTO 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7-13, 1997.

정인교, ˜CGE모형에 의한 APEC의 배타적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효과-, 『경제학연구』, 제45집 제2호, 한국경제학회, 1997.

_____,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정인교·노재봉,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한국태평양위원회-인하대학교 FTA연구센터 공동발간, 2005.

한국무역협회, 『NAFTA 원산지규정해설』, 1994.

한홍렬, 『NAFTA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4-02, 1994.

_____, 『APEC 경제협력과 원산지규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자료 95-08, 1995.

Appiah, Alex Jameson, "A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North American Integration with Rules of Origin," Simon Fraser University(Canada), 1999.

Anson, J., Olivier Cadot, Antoni Estivadeordal, et el., "Rules of Origin in North-South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with and Application to NAFTA," September 11, 2003.

Augier, Patricia, Michael Gasiorek, Charles Lai-Tong, "The Impact of Rules of Origin on Trade Flows," 2003.

Bhagwati, Jagdish, "Regionalism versus Multilateralism," *The World Economy,* 15(5), 1992, pp.535-555.

_____, *Free Trade Toda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Bhagwati, Jagdish and Arvind Panagariya, "Preferential Trading Areas and Multilateralism: Strangers, Friends or Foes?," In Bhagwati, J. and Panagariya, A., *The Economics of Preferential Trading*, Washington, D.C.: AEI Press, 1996, pp.1-78.

Cadot, Oliver, Jaime de Melo, Antoni Estevadeordal, Akiko Suwa-Eisenmann and Bolormaa Tumurchudur, "Assessing the Effect of NAFTA's Rules of Origin," Mimeo, 2002.

Estevadeordal, Antoni,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34, February 2000.

Estevadeordal, Antoni & Kati Suominen, "Rules of Origin and the Pattern of Trade between U.S. and Canada," Washington, DC: Integration, Trade and Hemispheric Issues Division,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2.

_____, "Measuring Rules of Origin in the World Trading System and Porposals for Multilateral Harmonization," Integration, Trade and Hemispheric Issues Division, and Regional Programs Department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3.

_____, "Rules of Origin in FTAs in Europe and in the America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EU-Mercosur Inter-Regional Association Agreement," INTAL-ITD(http://www.iadb.org/intal), 2004.

Holmes, P. and G. Sheppard, "Ptotectionism in the Economic Community," International Economics Study Group, 8th. Annual Conference, 1883.

Jeffrey J. Schott, *Free Trade Agreements: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edited by Jeffrey J. Schot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pril 2004.

Joseph A. LaNasa Ⅲ, "Rules of Origin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to Objectively Transparent Protectionism," *Harvard Inter- national Law Journal*, Vol.34, 1993, p.396.

Ju, Jiandong and Kala Krishina, "Market Access and Welfare Effects of Free Trade Areas without Rules of Origin," NBER Working Paper, No.5480, Cambridge, MD: NBER, 1996.

Krishina, Kala and Anne Krueger, "Implementing Free Trade Areas: Rules of Origin and Hidden Protection," In A Deardorff, J. Levinsohn and R. Stern(eds.), *New Directions in Trade Theor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5.

Koskinen, Matti, "Excess Documentation Costs as a Non-Tariff Measur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Documentation Costs," Working Paper, Swedish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1983.

Krueger, Anne O., "Free Trade Agreements as Protectionist Devices: Rules of Origin," NBER Working Paper, No.4352, Cambridge, MD: NBER, 1993.

Lloyd, P. J., "A tariff substitute for rules of origin in free trade areas," Economic Department, The University of Melbourne, Unpublished Manuscripts, 1997.

Lopez-de-Silanes, Florencio, James R. Markusen, and Thomas F. Rutherford, "The Auto Industry and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n Joseph F. Francois and Clinton R. Shiells(eds.), *Modeling Trade Policy,* Cambridge, M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Meade, J, *Trade and Welfa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LaNasa Ⅲ., Joseph A., "Rules of Origin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to Objectively Transparent Protectionism,"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34, 1993, p.396.

Productivity Commission, "Rules of Origin under the Australia -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 Restrictiveness Index for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Canberra, 2004.

Shibata, H., "The Theory of Economic Un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Customs Unions, Free Trade Areas, and Tax Unions," In Shoup, C. S.(ed.), *Fiscal Harmonization in Common Marke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Stankovsky, *Bedeutung der Ursprungsregedung im AuBenhandel*, Studies des Osterreichischin Institute fur Wirtschaftsforschung im Auffrag des Bundesministeriums fur Fimanzem, Wien, Jan. 1990.

USITC, *The Impact of Rules of Origin on U.S. Imports and Exports,* USITC Publication, 1695, 1985.

Viner, J.,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50.

World Bank, *Lessons from NAFTA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ountries,* Washington D.C.: World Bank, 2003.

World Trade Organization, "Rules of Origin Regim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2002.

<부 록>

부록 1: 한-칠레 FTA 협정의 원산지규정(본문)[43]

제4.1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조정가격**이라 함은 역내 가치포함 비율 공식 및 최소 허용기준의 적용 목적상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제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필요시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미 제외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을 고려대상인 상품의 관세가격으로부터 제외하여 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은 모든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을 국제적으로 수송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 비용, 부과금 또는 경비를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라 함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이나 재료를 말한다.

상품이라 함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채취된 광물,

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서 정의된 바대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다.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43) 영문 협정문은 www.fta.pe.kr을 참조할 것.

라.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

마.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생산물,

바.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 내에서 상기 마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부터 생산된 상품,

사. 일방 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해 밖의 해저로부터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채취된 상품,

아.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될 것과 비당사국에서 가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자.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과 부스러기

(1)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생산, 또는

(2)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집되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품, 그리고

차. 모든 생산단계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가호 내지 자호에서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부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

간접재료라 함은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 상품, 또는 상품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상품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와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작동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와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사. 촉매제와 용해제, 그리고
아. 상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중간재라 함은 자체 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재료를 말한다.

재료라 함은 부품이나 원료와 같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라 함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상품이나 재료를 말한다.

선적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라 함은 개별적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용기나 재료와는 구별되고 운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생산자라 함은 상품을 재배, 채굴, 사육, 수확, 어로, 덫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이라 함은 상품을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 및 사육, 덫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된이라 함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소비된 것을 말한다.

재료의 가치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선적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의 역내 가치포함 비율 산출 및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목적상, 상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가치는

(1)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수입된 재료의 경우에는, 그 수입과 관련하여 조정된 재료의 조정가격이 된다.

(2) 상품이 생산된 영역 내에서 구입된 재료의 경우에는, 생산자의 실제 재료비용이 된다. 그리고

(3) 생산자에게 무료로 또는 할인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인하를 반영한 가격으로 제공된 재료의 경우에는, 그 비용이나 가치는 다음을 합산하여 산정된다.

(가) 일반지출금을 포함하여 재료의 사육· 재배, 생산 또는 제조시 발생한 모든 경비, 그리고

(나) 이윤

나. 재료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조정될 수 있다.

(1) 원산지 재료의 경우, 다음 지출금이 가호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를 그 재료의 가치에 더할 수 있다.

(가) 생산자가 있는 장소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나) 지불되거나 지불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 또는 환급되거나 환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와 조세를 제외하고,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지불한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중개수수료, 그리고

(다)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무용물의 비용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2) 비원산지 재료의 경우, 다음 지출금이 가호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그 재료의 가치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가) 생산자가 있는 장소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나) 지불되거나 지불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 또는 환급되거나 환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와 조세를 제외하고,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지불한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중개수수료,

(다)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무용물의 비용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그리고

(라)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비용.

제4.2조 원산지 상품

1.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상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이다.

가. 상품이 제4.1조에서 정의된 바대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서 상품의 생산에서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부속서 4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세번변경을 요하지 않는 그 부속서상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 장의 모든 다른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다.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또는

라.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제61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하나 이상이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 상품이 조립되지 않았거나 분해된 형태로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으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의 제2(a)조에 따라 조립상품으로 분류됨, 또는

(2) 상품의 호가 상품 자체 및 그 부품에 대해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더 이상 소호로 분류되지 않거나, 또는 상품의 소호가 상품 자체 및 그 부품에 대해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 제4.3조에 따라 산정된 상품의 역내 가치포함 비율이 공제법이 사용된 경우 4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적법이 사용된 경우 30퍼센트 이상이고 이 장의 모든 다른 적용 가능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당해 제품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 부속서 4의 적용 가능한 규칙이 다른 비율의 역내 가치포함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요건이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부속서 4에 따른 세번변경을 이루고 그 밖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비원산지 재료로부터 생산된 상품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상품의 역내 가치포함 요건은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만 충족되어야 한다.

3. 이 조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제조 과정에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 그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제4.13조에 따른 제조과정만을 거쳐서 생산된다면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4.3조 역내 가치포함 비율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역내 가치포함 비율이 요건으로 적용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상품의 역내 가치포함 비율을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방식 1: 공제법

$$RVC = \frac{AV - VNM}{AV} \times 100$$

방식 2: 집적법

$$RVC = \frac{VOM}{AV} \times 100$$

여기서, RVC는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 가치포함 비율이다.

AV는 조정가격이다.

VNM은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그리고

VOM은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제4.4조 중간재

상품의 생산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역내 가치포함 비율 산출의 목적상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체 생산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그 중간재가 역내 가치포함 요건을 적용받는 경

우에, 역내 가치포함 요건을 적용받는 다른 자체 생산 재료가 그 중간재 생산에 사용되었을 때 그 다른 재료 자체가 중간재로 지정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5조 누적계산

1.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상품이나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

2. 상품의 원산지 판정의 목적상, 상품의 생산자는 그 상품이 제4.2조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상품에 포함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재료의 생산은 그 후자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4.6조 최소허용 수준

1. 부속서 4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제4.3조에 따라 산정된 상품의 조정가격의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하에서 원산지 판정을 받고 있는 상품의 소호와는 다른 소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제1류 내지 제24류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제50류 내지 제63류에서 규정된 상품 중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방사가 부속서 4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산지 제품이 아니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도 그 구성요소에서 차지하는 모든 섬유나 방사의 총무게의 비율이 그 구성요소의 총무게의 8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원산지로 간주된다.

제4.7조 대체가능 상품과 재료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 목적상,
   가.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특정 대체가능한 재료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나, 통일규칙에 규정된 재고관리기법에 기초해서 판정된다. 그리고
   나.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이 혼합되어 동일한 형태로 수출되는 경우, 판정은 통일규칙에서 규정한 재고관리기법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2. 일단 재고관리기법에 의거하여 판정이 내려지면, 전체 회계연도를 통해 이 기법이 사용된다.

제4.8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1. 다음의 조건하에,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함께 인도된 경우에는 이러

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면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에 대한 송장이 그 상품과 별도로 발부되지 않을 것, 그리고

나.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양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해 통상적 수준일 것.

2. 그 상품이 역내 가치포함 요건의 대상이 될 경우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 가치포함 비율 계산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4.9조 간접재료

1. 간접재료는 생산되는 장소와 무관하게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그 재료의 가치는 당해 상품 생산자의 회계기록에 기록된 비용이 된다.

2. 간접재료의 가치는 당해 상품이 생산되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4.10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필요한 포장재와 용기가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된다면 그 상품 생산에서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를 판정

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며, 그 상품이 역내 가치포함 요건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재와 용기의 가치가 그 상품의 역내 가치포함 비율의 계산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4.11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상품의 수송을 위한 포장에 필요한 포장재료와 용기는 다음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부속서 4에서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역내 가치포함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제4.12조 환적

상품이 제4.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생산된 후 당사국 영역 밖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과 재포장 또는 상품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까지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다른 종류의 작업 이외의 추가적 생산이나 작업을 거친 경우, 또는

나. 비당사국의 영역 내의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않은 경우.

제4.13조 불인정공정

1. 상품은 다음의 이유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가. 운송 또는 저장 목적상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나. 선적이나 운송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또는

다.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이나 전시에 관계된 작업이나 공정.

2. 제1항의 작업이나 공정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환풍, 통풍, 건조, 냉장, 냉동,

나. 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 또는 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

다. 탈피, 탈각 또는 박편, 탈곡, 뼈제거, 분쇄나 압착, 연질화,

라.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를 제거, 기름 도포, 녹 방지나 그 밖의 보호재료 도포,

마. 시험이나 측정, 대량 선적의 분류, 포장 상태로 조립, 표시 부착, 제품이나 포장의 상표 부착이나 특유의 표시, 포장, 포장해체나 재포장,

바.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에 의한 희석,

사. 상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

아. 염화, 가당,

자. 동물의 도살,

차. 분해, 그리고

카. 이러한 작업 또는 공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

제4.14조 해석과 적용

이 장의 목적상,

가. 이 장의 관세분류의 기초는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이다.

나. 제4.2조제1항 라호를 적용할 경우,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하에서의 호 또는 소호가 상품 및 그 부품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에 따라 당해 호나 소호의 관세분류 체계 및 부 또는 류의 주석에 기초해서 내려진다.

다. 이 장하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하는 경우,

(1)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은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수정을 통해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것처럼 국내거래에도 적용된다.

(2) 이 장의 규정은 관세평가협정 규정과 상이한 범위 내에서 그 협정에 우선한다. 그리고

(3) 제4.1조의 정의는 관세평가협정상의 정의와 상이한 범위 내에서 그 협정의 정의에 우선한다.

라. 이 장에서 언급된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된다.

제4.15조 협의 및 변경

1. 양 당사국은 이 장이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효과적이고, 통일적이며, 일관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제5장에 따라 이 장의 운영에 협력한다.

2.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의 발전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이 장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당사국은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첨부한 변경안, 관련 연구결과 및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취해질 필요가 있는 적절한 조치를 타방 당사국의 검토를 위해 타방 당사국에 제출할 수 있다.

부록 2: 한-칠레 FTA 통일규칙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제5.12조(통일규칙)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제3장, 제4장 그리고 제5장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통일규칙을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제1절 총 칙

제1조 일반조항

1.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규율하는 각 당사국의 통관절차가 협정 제5장(통관절차) 및 이 통일규칙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이 통일규칙은 협정발효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후 발효한다.

3. 협정 제5장 및 이 통일규칙의 목적상, "작성된"이라 함은 기입, 서명되고 일자가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제2절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신고서

제2조 원산지 증명서

협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과 같도록 한다.

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와 내용상 동등한 것으로서
나. 인쇄된 형태 또는 상품 수입국 세관당국에 의해 승인된 전자 형태를 포함하는 여타의 매체 또는 형태로 하고,
다. 부속서 2(다)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을 포함하여 통일규칙에 따라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제3조 원산지 신고서

협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과 같다.
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양식과 내용상 동등하며,
나. 인쇄된 형태 또는 상품 수입국 세관당국에 의해 승인된 여타의 매체 또는 형태로 하고,
다. 부속서 3(다)에 규정된 원산지 신고서 작성요령을 포함하여 통일규칙에 따라 생산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제4조 수입 관련 의무

1. 협정 제5.3조 제1항 가호의 목적상,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라 함은 일방 당사국 영토에서 당해 상품의 수출자가 통일규칙 제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를 말한다.

2. 협정 제5.3.조 제1항 다호의 목적상, 수입국 세관당국이 원산지 증명서가 읽을 수 없거나 표면상 결함이 있거나 또는 통일규칙 제2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입국 세관당국은 수입자에게 최소한 5일간 기간을 주어 증명서의 정정·보완을 요구한다.

3. 협정 제5.3조 제1항 라호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세관당국이 원산지 검증 또는 어떠한 종류의 심사절차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고, 상응하는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5조 수출 관련 의무

1. 협정 제5.4조 제2항의 목적상, "신속히"라 함은 "즉시"를 의미한다.

2. 협정 제5.4조 제2항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에 관한 조사권을 가진 당사국의 관리가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서면 통보를 하는 경우, 어느 당사국도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처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협정 제5.4조 제2항의 목적상, 당사국 세관당국이 협정 제5.8조 제12항에 따라 당해 상품이 비원산지산이라는 판정을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이 판정에 영향을 받는 상품과 관련하여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를 제공받은 모든 관계자에게 즉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예외

1. 협정 제5.5조 가호에 규정된 “진술”은 상품 수입국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당해 상품의 송장에 수기, 날인 또는 타자로 작성하여 첨부되어야 한다.

2. 협정 제5.5조의 목적상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입”은,
   가. 한국의 경우, 같은 날에 도착되거나 한 건의 송장 또는 선하 증권에 기재된 상품을 2건 또는 그 이상으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를,
   나. 칠레의 경우, 같은 날에 도착·반입되거나 또는 한 건의 송장에 기재된 상품을 2건 또는 그 이상 수입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3절 운영 및 집행

제7조 기록

1. 협정 제5.3조 제4항 및 제5.4조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와 기록은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 관계자가 협정 제5.8조에 따라 원산지를 검증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초가 된 정보를 입증하는 문서와 기록에 대한 상세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가. 수입자의 경우, 일방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 요구 관련 정보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경우, 타방 당사국으로 수출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 관련 정보

2. 협정 제5.3조 제4항 및 제5.4조 제5항에 따라 문서와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일방 당사국 영역 내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그 문서와 기록이 복구와 인쇄가 가능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기계판독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러한 문서와 기록을 보관할 수 있다.

3. 협정 제5.4조 제5항에 따라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및 동의의 요구를 전제로 방문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의 세관당국 관계자가 관련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일방 당사국은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서 당해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협정 제5.3조 제4항 및 제5.4조 제5항에 따라 기록과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가. 협정 또는 통일규칙의 요건에 따라 당해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기록 또는 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나. 기록 또는 문서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 원산지 검증

1. 협정 제5.8조 제2항 다호의 목적상,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협정 제5.8조 제2항 가호 및 나호의 규정에 따른 서면 질의서 및 방문 검증의 원산지 검증방법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다.

가. 검증대상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방 당사국 영역 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검증 서한

나. 검증을 수행함에 있어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통상 사용하는 기타 다른 통신 방법

2.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제1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검증을 행하는 경우, 동 세관당국은 제1항 나호에 따른 통신에 대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신을 기초로 협정 제5.8조 제12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판정을 할 수 있다.

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명한 서면 답변을 조건으로 당해 상품을 원산지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정

나. 당해 상품을 원산지산으로 인정하는 판정

3. 협정 제5.8조 제2항 나호에 따른 서면 질의서의 공통기준은 부속서 8.3에 따른다.

4. 협정 제5.8조 제2항 가호에 따른 검증을 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공증우편, 등기우편 또는 당해 검증대상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포함하는 기타 방법으로 제8항에 규정된 검증 질의서를 송부한다.

5. 협정 제5.8조 제3항의 목적상, 질의서 답변의 연기는 동 질의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준비하여 이를 요청한 세관당국의 주소로 공증우편, 등기우편 또는 기타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포함하는 기타 방법으로 통보한다.

6. 협정 제5.8조 제2항 나호에 의한 검증 방문을 실시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공증우편, 등기우편, 또는 방문하고자 하는 장소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여타의 방법으로 협정 제5.8조 제5항 가호에 따른 통지를 송부하여야 한다.

7. 협정 제5.8조 제10항의 목적상,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방문 검증을 시행하는 세관당국에 동 방문조사시 입회할 참관인을

통지하여야 한다.

8. 각 당사국은 협정 발효일 또는 발효 전까지 협정 제5.8조 제5항 가호 (2)에 따른 통지를 송부해야 할 연락처를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9. 협정 제5.8조 제8항의 목적상, 검증 방문의 연기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검증 방문 의사를 통보한 세관의 주소로 통보하여야 한다.

10.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목적으로 상품 수입자에게 타방 당사국 영역 내의 상품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서면정보를 자발적으로 입수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입자가 그러한 정보의 입수 및 제출에 실패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보제공에 실패하거나 또는 특혜관세 대우를 부인하는 근거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1. 원산지 검증결과 세관당국이 검증대상 상품을 원산지 상품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 협정 제5.8조 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판정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가. 당해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하는 의사 통보(특혜관세 대우의 거부가 개시되는 일자를 포함한다) 및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해 판정에 관한 소명서 또는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토록 한다.

나. 상품을 수출하는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공증우편, 등기우편 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방법으로 통보한다.

12.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검증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해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가. 제11항의 통보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가 거부될 수 있는 일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일자부터 30일이 경과하여야 한다.

(1) 제11항 나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통보의 수령을 확인한 날, 그리고

(2) 요청이 없는 경우, 세관당국이 서면통지를 한 날

나.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하기 전, 세관당국은 가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소명서 또는 보완자료를 고려한다.

13. 협정 제5.8조 제13항의 목적상, "행위유형"이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허위 또는 근거없는 표시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로서, 타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2건 이상의 상품수입에 대해 최소한 2회 또는 그 이상 원산지 검증을 한 결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가 허위 또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협정 제5.8조 제12항에 따라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최소한 2회 이상 통보함으로써 확인된 것을 말한다.

14. 협정 제5.8조 제15항의 목적상, "일관된 대우"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동일한 수입자에 대해 협정 제5.8조 제13항에 의한 판정 대상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가 작성된 일자 이전 최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당해 재료의 수입에 대하여 동일한 품목분류 또는 가치를 지속되게 인정함으로써 구체화된 세관당국의 확립된 적용을 말한다. 다만, 당해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를 조건으로 한다.

가. 당해 재료는 동 판정이 내려진 일자까지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그 세관당국의 지역·지방 사무소 또는 지소에 의해서 상이한 품목분류 또는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나. 당해 재료의 품목분류 또는 가치가 판정 일자에 세관당국에 의한 검증, 심사, 상소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15. 협정 제5.8조 제15항의 목적상, 인은 부속서 8.15에 따라 상품이 수입된 당사국에 판정 또는 사전 판정에 의지할 수 있다.

16.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정 또는 사전 판정은 변경 또는 철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17. 사전 판정 이외에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정의 변경 또는 철회는 당해 변경 또는 철회의 결정일 이전에 수입된 판정 대상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판정을 받았던 인이 그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판정의 기초가 된 실질적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18. 협정 제5.8조 제14항의 목적상,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재료"라 함은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한다.

19. 협정 제5.8조 제14항과 관련하여, 협정 제5.8조 제15항 가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또는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와 관련된 판정 또는 사전 판정

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수입에 적용되는 일관된 대우

20.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협정 제5.8조에 따라 그 영역 내로의 수입상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함에 있어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검증하는 경우, 동 재료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협정 제5.8조 및 이 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1. 제20항에 따라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원산지를 검증하는 경우, 재료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재료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다음 각호로 정한 방법에 대한 세관당국의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당해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재료를 비원산지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관련 기록에 대한 접근의 거부

나. 검증 질의서 또는 서신에 대한 미회신

다. 제20항에 의거하여, 협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는 검증 방문에 대한 동의의 거부

22. 일방 당사국은 제20항의 의거한 협정 제5.8조 제3항 및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 질의서 또는 검증 방문에 대한 회신을 연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비원산지산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4절 사전 판정

제9조 사전 판정

1. 협정 제5.9조의 목적상,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상품이 계속하여 수입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생산자에게 당해 재료와 관련하여 제5.9조의 1항 가호 내지 마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사전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사전 판정 신청 시에 제출할 자료에 관한 공통기준은 부속서 9.2의 규정에 따른다.

3. 협정 제5.9조의 목적상,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에 제출할 사전 판정 신청서는 그 당사국의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사전 판정 신청을 받은 세관당국은 보충 자료를 포함하여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전 판정을 하여야 한다.

5. 각 당사국은 세관당국에 접수된 사전 판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원산지 검증

나. 세관당국에 심사 또는 상소

다. 당사국 영역 내의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심사

6. 협정 제5.9조 제3항의 목적상,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사전 판정 신청서가 불완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세관당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절차의 추가적인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세관당국이 신청자에게 필요한 보충적 정보와 신청자가 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단, 최소 30일로 함)을 통보하였고,

나. 신청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항과 제6항은 인이 사전 판정을 재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8. 협정 제5.9조 제7항의 목적상, “상품의 수입”이라 함은 부속서 9.8의 정의에 따른다.

9. 협정 제5.9조 제12항의 목적상, “당해 조치”에는 사전 판정이 이루어진 일자부터 사전 판정의 변경 또는 철회의 소급 적용을 포함한다.

제5절 심사 및 상소

제10조 심사 및 상소

1.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이 통일규칙에 따라 협정 제5.8조 제4항 및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특혜관세 대우의 거부를 포함하여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하는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협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협정 제5.9조 또는 통일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전 판정이 내려진 경우, 사전 판정의 변경 또는 철회는 협정 제5.10조에 따른 심사 및 상소 대상이 된다.

제6절 특혜관세 대우의 거부

제11조 특혜관세 대우의 거부

협정의 부속서 3.4의 목적상, 당사국은 협정 제5.3조 제2항의 요건과 각 당사국의 국내법상 요구되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

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해 동 부속서에서 규정한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가. 당사국의 법률에 반하여 당해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의 요구가 당사국 영역 내로 당해 상품이 수입되기 전까지의 운송경로, 모든 선적지 및 환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송장,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과 같은 증거서류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당해 상품이 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를 통해서 선적 또는 환적된 경우, 당사국 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당해 상품의 수입자가 당해 상품이 비당사국에 있는 동안 비당사국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세관통제서류 사본을 당사국 세관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7절 원산지규정

제12조 재고관리 기법

협정 제4.7조 제1항의 목적상, 상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 여부 판정은 당해 상품을 수출하는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재고관리 기법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부속서 2 (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번호:

1. 수출자(성명 및 주소) 납세확인번호:					
2. 생산자(성명 및 주소) 납세확인번호:			3. 수입자(성명 및 주소)		
4. 상품 설명	5. 세번	6. 원산지 결정기준	7. 생산자	8. 부가가치	9. 원산지
10. 비고					
11. 원산지증명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이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동 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당해 상품은 양 당사국이 원산지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당해 상품에 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며, 협정 제4.12조에 따라 양 당사국의 영역 이외에서 추가적인 생산이나 여타의 작업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회사명		
성명(정자 또는 타자로 기입)			직위		
일자(월/일/년)			전화/팩스/이메일		

부속서 2 (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

특혜관세 대우를 받기 위하여, 수출자는 이 문서를 명료하고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신고시에 이 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정자나 타자로 기재한다.

발급번호: 원산지 증명서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란: 수출자의 성명, 주소(국명 포함), 납세확인번호를 기재한다. 납세확인번호는 한국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칠레의 경우 고유납세번호를 의미한다.

2란: 생산자가 1명일 경우, 성명, 주소(국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포함) 및 1란에서 설명된 납세확인번호를 기재한다.
생산자가 1인 이상일 경우, "다수"로 기재하고, 이들의 성명, 주소(국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포함) 및 납세확인번호를 포함한 생산자 명부를 4란에 기재된 상품 설명과 연계되도록 하여 첨부한다. 이 정보를 비밀로 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 요청시 제출가능"으로 기재할 수 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인일 경우, "상동"이라고 기재한다.
생산자를 모를 경우 "모름"으로 기재한다.

3란: 수입자의 성명, 주소(국명 포함)를 1란에 설명된 대로 기재한다.
수입자를 모를 경우, "모름"으로 기재한다.
수입자가 다수인일 경우, "다수"로 기재한다.

4란: 상품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당해 상품의 송장 및 통일상품명및 부호체계(HS코드)와 연계되도록 상세히 기재한다. 이 증명서가 단일 선적품을 취급하는 경우, 송장에 표시된 송장번호를 기재한다. 송장 번호를 모르는 경우, 선적지시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당해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여타 번호 등의 고유 인식번호를 기재한다.

5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당 6단위의 HS를 기재한다.

6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당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가 내지 라 중 선택)을 기재한다. 원산지규정은 협정 제4장과 협정 부속서 4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특혜관세 대우가 부여되기 위해서 각 상품은 아래의 원산지 결정기준 가운데 최소한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특혜 기준

가: 상품이 협정 제4.2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참고: 당해 영역에서 상품을 구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로 간주되지는 않는다.(협정 제4.1조 및 제4.2조 제1항 가호 참조)

나: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되고 세번변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4에 규정된 특별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이 두 기준의 결합 또는 특별공정기준을 포함한다. 상품은 협정 제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협정 제4.2조 제1항 나호 참조)

다: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만으로 전적

으로 생산된 경우. 이 기준하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재료가 협정 제4.2조 제1항 다호의 규정에 의한 "완전하게 생산되거나 획득된"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는 협정 제4.2조 제1항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협정 제4.2조 제1항 다호 참조)

라: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되었으나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특정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정 부속서 4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협정 제4.2조 제1항 라호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총족한 경우: 이 요건은 다음에 해당 하는 두 가지 경우에만 적용된다.

(1) 상품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HS해석에 관한일반규칙 제2조 (가)항에 따라 조립된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결합된 상품이 HS에 부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당해 상품과 그 부품이 동일한 호에 규정되어 더 이상 소호로 구분되지 않거나 당해 상품과 그 부품이 동일한 소호에 규정되어 더 이상 구분되지 않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참고: 이 요건은 HS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협정 제4.2조 제1항 라호 참조).

7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해 귀하가 당해 상품의 생산자이면 "Yes"라고 기재한다. 귀하가 당해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No"라고 기재한 후 이 증명서의 작성 근거를 다음 (1), (2), (3)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한다. (1) 당해 상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한다는 귀하의 지식 (2) 당해 상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한다고 생산자가

작성한 서면 진술서(원산지 증명서 제외) (3)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원산지 신고서

8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해 당해 상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 대상인 경우, 공제법에 따라 부가가치를 계산한 때에는 "BD"로, 집적법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BU"로 기재한다(협정 제4.3조 참조). 귀하가 생산자가 아닐 경우, "No"로 기재한다.

9란: 국명을 기재한다(한국으로 수출되는 원산지 상품은 "CL", 칠레로 수출되는 원산지 상품은 "KR"로 기재한다)

10란: 비고. 비당사국 운송자가 당해 상품의 송장을 작성한 경우, 비당사국 운송자가 신고 대상 상품의 송장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알고 있는 경우 비당사국 운송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11란: 이 란은 수출자에 의해 작성, 서명되고, 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일자는 이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일자를 의미한다.

부속서 3 (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신고서

발급번호:

<table>
<tr><td colspan="5">1. 생산자(성명 및 주소)
납세확인번호:</td></tr>
<tr><td colspan="3">2. 수출자(성명 및 주소)

납세확인번호:</td><td colspan="2">3. 수입자(성명 및 주소)</td></tr>
<tr><td>4. 상품설명</td><td>5. HS. No</td><td>6. 원산지 결정기준</td><td>7. 부가가치</td><td>8. 원산지</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9. 비고</td></tr>
<tr><td colspan="5">10. 원산지 신고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이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이 원산지 신고서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시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신고서의 정확성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동 사항에 대해서 이 원산지 신고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당해 상품은 양 당사국이 원산지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당해 상품에 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며, 협정 제4.12조에 따라 양 당사국의 영역 이외에서 추가적인 생산이나 여타의 작업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td></tr>
<tr><td colspan="3">서명</td><td colspan="2">회사명</td></tr>
<tr><td colspan="3">성명(정자 또는 타자로 기입)</td><td colspan="2">직위</td></tr>
<tr><td colspan="3">일자(월/일/년)</td><td colspan="2">전화/팩스/이메일</td></tr>
</table>

부속서 3(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신고서 작성요령

특혜관세 대우를 받기 위하여 수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당해 상품의 생산자는 이 문서를 명료하고 자세히 정자나 타자로 기재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해야 한다.

발급번호: 원산지 신고서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란: 생산자의 성명, 주소(국명 포함), 납세확인번호를 기재한다. 납세확인번호는 한국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칠레의 경우 고유납세번호를 의미한다.

2란: 수출자의 성명, 주소(국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포함) 및 1란에서 지정한 납세확인번호를 기재한다.

3란: 수입자의 성명, 주소(국명 포함)를 1란에 설명된대로 기재한다. 수입자를 모를 경우, "모름"으로 기재한다. 수입자가 다수인일 경우, "다수"로 기재한다.

4란: 각 상품의 완벽한 본명을 제시한다. 당해 상품의 송장 및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HS)와 관련지을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한다. 이 신고서가 단일 선적품을 취급하는 경우, 송장에 표시된 송장번호를 기재한다. 송장번호를 모르는 경우, 선적지시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당해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여타 번호 등의 고유인식번호를 기재한다.

5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당 6단위의 HS를 기재한다.

6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당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아래 가, 나, 다, 라 중 선택)을 기재한다. 원산지규정은 협정 제4장과 협정 부속서 4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특혜관세 대우가 부여되기 위해서 각 상품은 아래의 원산지 결정기준 가운데 최소한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특혜 기준

가: 상품이 협정 제4.2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참고: 당해 영역에서 상품을 구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로 간주되지는 않는다.(협정 제4.1조 및 제4.2조 제1항 가호 참조)

나: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되고 세번변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4에 규정된 특별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이 두 기준의 결합 또는 특별공정기준을 포함한다. 상품은 협정 제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협정 제4.2조 제1항 나호 참조)

다: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만으로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이 기준하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재료가 협정 제4.2조 제1항 다호의 규정에 의한 "완전하게 생산되거나 획득된"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는 협정 제4.2조 제1항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협정 제4.2조 제1항 다호 참조)

라: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되었으나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특정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정 부속서 4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협정 제4.2조 제1항 라호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 요건은 다음에 해당 하는 두 가지 경우에만 적용된다.

(1) 상품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HS해석에관한일반규칙 제2조 (가)항에 따라 조립된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결합된 상품이 HS에 부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당해 상품과 그 부품이 동일한 호에 규정되어 더 이상 소호로 구분되지 않거나 당해 상품과 그 부품이 동일한 소호에 규정되어 더 이상 구분되지 않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참고: 이 요건은 HS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협정 제4.2조 제1항 라호 참조)

7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해 당해 상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 대상인 경우, 공제법에 따라 부가가치를 계산한 때에는 “BD”로, 집적법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BU”로 기재한다(협정 제4.3조 참조). 귀하가 생산자가 아닐 경우, “No”로 기재한다.

8란: 국명을 기재한다(한국으로 수출되는 원산지 상품은 “CL”, 칠레로 수출되는 원산지 상품은 “KR”로 기재한다)

9란: 비고. 비당사국 운송자가 당해 상품의 송장을 작성한 경우, 비당사국 운송자가 신고 대상 상품의 송장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비당사국 운송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10란: 이 란은 생산자에 의해 작성, 서명되고, 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일자는 이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일자를 의미한다.

부속서 8.3
서면 질의서 공통기준

1. 통일규칙 제8.3조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일반 질의서에 포함될 공통 질의사항에 합의토록 도모한다.

2. 제3항에 따라,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협정 제5.8조 제2항 가호에 의거하여 검증을 하는 경우, 동 부속서 제1항에서 규정한 일반 질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3. 협정 제5.8조 제2항 가의 목적상,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일반 질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동 세관당국은 검증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에 대한 상세 질의서를 송부할 수 있다.

4. 통일규칙 제8조의 목적상, 검증 질의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5. 이 부속서의 어떤 내용도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협정 제5.8조 제2항 가호 및 이 통일규칙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8.15
판정 및 사전 판정

인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판정 또는 사전 판정에 의지할 수 있다.

(가)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나) 칠레의 경우, 관세규칙총칙에서 정한 규정(규칙 제2,400호, 1985), 관세청이 정한 여타규칙(DFL 30, 83.4.30) 및 여타 보완 규정과 법률

부속서 9.2
사전 판정 신청시 요청 자료에 관한 공통기준

1. 협정 제5.9조 제2항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사전 판정 요청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신청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가. 사전 판정 대상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나. 신청인이

(1) 당해 상품의 수출자인 경우, 당해 상품의 생산자 및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알려진 경우)

(2) 당해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당해 상품의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알려진 경우)

(3) 당해 상품의 수입자인 경우, 당해 상품의 수출자 및 생산자의 성명과 주소(알려진 경우)

다.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 판정 발급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거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사전 판정 발급 신청인의 서면 진술서 또는

(2) 당사국 세관당국의 요청시, 관련법규에 의거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사전 판정을 신청한다는 증명

라. 사전 판정 신청사항이 신청인이 아는 범위에 기초할 때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될 경우 동 사항의 처리 현황 및 결과에 관한 간략한 진술

(1) 원산지 검증

(2) 행정 심사 또는 상소

(3)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심사

(4) 사전 판정 신청

마. 사전 판정 신청대상 상품이 신청인이 아는 범위에 기초할 때 당해 사전 판정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 영역 내에 이전에 수입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

바. 제출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진술, 그리고

사. 사전 판정 신청사항과 관련되는 다음의 각목을 포함한 일체의 관련 사실과 상황에 관한 완전한 설명

(1) 협정 제5.9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사전 판정이 신청된 사안에 대한 간결한 진술

(2) 당해 상품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2. 사전 판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자료 이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이 사전 판정 신청의 대상이 된 당사국이 당해 상품에 대해

신청인에게 발급한 품목분류 관련 사전 판정 또는 여타 판정내용의 사본

나. 사전 판정 신청의 대상이 된 당사국이 당해 상품에 대해 신청인에게 품목분류 관련 사전 판정 또는 여타 판정을 한 적이 없는 경우,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당해 상품의 품목분류를 하는 데 충분한 다음 각목을 포함하는 자료

(1) 당해 상품의 구조, 제조공정 설명, 포장 설명, 상업적 일반적 또는 기술적 용도, 상품설명서, 도면, 사진 또는 설계도를 포함하는 당해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2) 실제적이고 유용한 경우 당해 상품의 견본

3. 사전 판정 신청이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세번변경기준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평가를 요구하는 원산지 규칙의 적용이 관련된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목록

나. 가호에서 원산지 재료로 기재된 각 재료에 대하여는, 당해 재료가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는 근거를 포함한 당해 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다. 가호에서 비원산지 재료 또는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당해 재료의 품목분류를 포함한 당해 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라. 당해 상품의 생산에 적용된 모든 과정활동, 각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활동 단계별 순서에 대한 설명

4. 사전 판정 신청이 역내부가가치 기준 적용에 관한 것일 경우, 신청인은 당해 신청이 집적법 또는 공제법, 또는 양 방법 모두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사전 판정이 공제법 사용에 관한 것인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당해 상품의 생산자 거래와 관련하여 협정 제4.1조에 의거, 당해 상품의 조정가격을 산정하기에 충분한 자료

나. 협정의 제4.1조에 의거,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또는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재료의 가치산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다. 비원산지 재료 또는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각 재료와 관련하여, 인식 가능한 경우 당해 상품의 품목분류를 포함한 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6. 사전 판정이 집적법 사용에 관한 것인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당해 상품의 생산자 거래와 관련하여 협정 제4.1조에 의거, 당해 상품의 조정가격을 산정하기에 충분한 자료

나. 협정 제4.1항에 의거 원산지 재료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기에 충분한 자료

다.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로 기재된 각 재료와 관련하여, 당해 재료가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는 근거를 포함한 당해 재료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7. 당해 상품 또는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와 관련하여, 사전 판정 신청이 당해 상품 또는 재료의 조정가격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인 경우, 협정 제4.1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규정하고 있는 요소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8. 협정 제4.4조의 중간재와 관련, 사전 판정 신청이 당해 중간재의 원산지와 가격이 수용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인 경우, 협정 제4.1조에 의거 당해 중간재의 원산지 및 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9. 사전 판정 신청이 역내부가가치 비율 구성요소의 산정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해 요구되는 자료 이외에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판정 신청 관련 자료만이 신청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사전 판정 신청이 통일규칙 제9.1조에 의거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한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해 요구되는 자료 이외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판정 신청 관련 정보만이 신청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속서 9.8
상품의 수입에 관한 당사국별 특별 정의

협정 제5.9조 제7항의 목적상, "상품의 수입"은

1. 한국의 경우, 관세법 제9장에 의거 수입통관 절차를 완료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2. 칠레의 경우, 칠레관세규정(DFL 30, 83.4.13) 제2권 제1장에 의거, 세관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록 3: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규정

제4.1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가격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원칙에 따라,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따라 조정된, 상품 판매자의 거래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상품이나 재료의 가격. 또는

나. 그러한 가격이 없거나 그러한 상품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평가협정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

F.O.B.라 함은 운송수단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상품이 수출된 때에 경감·면제 또는 환급된 내국소비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할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을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라 함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이나 재료를 말한다.

상품이라 함은 모든 제품·생산품·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채취된 광물

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재배되고 수확, 채취되

거나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품

다.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라.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으로 획득된 상품

마.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해의 외측 기선 안에서의 어업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바.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생산품

사. 가공선박 안에서 바호에 규정된 상품으로부터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양 당사국 중 일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아. 영해 밖의 해저로부터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다만, 당사국은 그러한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이 상품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가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차.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생산, 또는

(2)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카. 모든 생산단계에서, 전적으로 가호 내지 차호에 규정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부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생산된 상품

중간재라 함은 자체 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료를 말한다.

재료라 함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며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된 상품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라 함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재료라 함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재료를 말한다.

선적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라 함은 개별적 판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또는 재료와는 구별되는, 운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생산자라 함은 상품을 재배·채굴·사육·수확·어로·재생산 및 번식·덫사냥·수렵·제조·가공·조립 또는 분해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이라 함은 상품의 재배·사육·채굴·수확·어로·재생산 및 번식·덫사냥·수렵·제조·가공·조립 또는 분해를 포함하여 상품을 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용된이라 함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소비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재료의 가격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선적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의 역내 가치포함 비율의 산출 및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목적상, 상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가격은,

(1)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입된 재료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수입과 관련하여 생산자의 소재지로

국제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 재료의 관세가격이 된다.

(2) 상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구입한 재료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생산자의 소재지로 재료를 운송하는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생산자가 그 재료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이 된다. 그리고

(3) 중간재의 경우에는 다음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가)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시 발생한 모든 비용. 그리고

(나) 이윤

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의 경우에는 다음 경비를 그 재료의 가격에서 차감할 수 있다.

(1) 지불되었거나 지불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 또는 환급되었거나 환급 또는 달리 회수될 수 있는 관세 및 조세를 제외하고,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지불한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2) 국내 생산자에게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국내운송비용

(3)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무용물의 비용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그리고

(4)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비용

제4.2조
원산지 상품

1. 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은 다음의 상품을 말한다.
   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전적으로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서, 이 장에 따라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 및 부속서 4A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상품
   다.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 달리 규정된 상품. 또는
   라.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2. 사용된 재료에 대하여 세번변경 또는 특정제조나 가공공정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품목별 규칙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제4.3조
특정 상품의 취급

1. 부속서 4B에 열거된 상품이 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싱가포르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 된다. 그 상품은 이 장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또한 원산지 재료가 된다.

2.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조 및 부속서 4B의 운용 또는 개정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4.4조
역외가공

1. 제4.2조의 관련 규정 및 부속서 4A에 규정된 품목별 요건에 불구하고, 부속서 4C에 열거된 상품은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친 후 다시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경우라도 다음에 부합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본다.

가. 제2항에 규정된 대로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관세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나.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관세가격의 45퍼센트 이상이고,

다.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수출되기 전에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 또는 생산되거나 제4.16조의 불인정공정을 넘어서는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치고,

라. 수출된 재료의 생산자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생산자가 동일하고,

마. 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재료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통하여 획득되고, 그리고

바. 생산 또는 가공[44]의 최종 공정이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2. 제1항 가호의 목적상,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의 가치와 운송비를 포함하여 축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당사국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

44) 생산 또는 가공의 최종 공정은 제4.16조에 규정된 불인정공정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역내 가치포함 비율

1. 역내 가치포함 비율이 원산지 상품을 판정하는 데에 요구되는 때에는, 상품의 역내 가치포함 비율은 다음의 방식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RVC = \frac{CV-VNM}{CV} \times 100$$

여기서,
RVC는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 가치포함 비율이다.
CV는 F.O.B.가격에 기초하여 조정된 관세가격이다.
VNM은 생산자에 의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제4.6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품

조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분해된 형태로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일반해석규칙 제2(a)항의 규정에 따라 조립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은 제4.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제4.7조
중간재

상품의 생산자는 제4.5조에 따른 역내 가치포함 비율의 산정의 목적상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체 생산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중간재가 역내 가치포함 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중간재 생산에 사용된, 역내 가치포함 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그 밖의 자체 생산 재료는 그 자체로는 생산자에 의하여 중간재로 지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중립요소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아니하는 다음 요소의 원산지를 판정할 필요는 없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작동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 설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그리고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제4.9조
누적계산

1.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상품의 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그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

2. 상품의 원산지 판정의 목적상, 상품의 생산자는 당해 상품의 생산에 결합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재료의 생산은 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상품이 제4.2조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제4.10조
최소허용 수준

1. 부속서 4A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관세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다른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할 것

그러나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적용 가능한 역내 가치포함 비율 요건을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 내지 제14류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그리고

나.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받고 있는 상품의 소호와는 다른 소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5류 내지 제24류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된 상품 중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방사가 부속서 4A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산지 제품이 아니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도, 그 구성요소에서 차지하는 모든 섬유나 방사의 총무게의 비율이 그 구성요소의 총무게의 8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원산지로 간주된다.

제4.11조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1.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가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각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거나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의 사용을 통하여 판정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재고관리기법이 선택되면, 그 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전체 회계연도 동안 그러한 대

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계속 사용된다.

제4.12조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1. 다음의 조건하에, 상품의 표준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A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가.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에 대한 송장이 그 상품과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나.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도구의 양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 수준일 것

2. 그 상품이 역내 가치포함 비율 요건의 대상이 될 경우,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 가치포함 비율 산정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4.13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된다면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A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며, 그 상품이 역내 가치포함 비율 요건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포장재료와 용기의 가치가 그 상품의 역내 가치포함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4.14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수송을 위하여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다음을 판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A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역내 가치포함 비율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제4.15조
직접운송

상품이 제4.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생산된 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나. 상품이 이 협정상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거나 환적된 경우 수입자가 제5.9조 다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제4.16조
불인정공정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 일정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제4.2조의 원산지 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가. (건조·냉동·염수장 보관과 같이) 운송 및 저장 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상품을 보존시키기 위한 작업과 그 밖의 유사한 작업

나. 포장의 변경 및 포장상태의 해체 및 조립

다. 제품 또는 그 포장의 의장·상표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 부착

라. 분해

마. 시험 또는 측정

바. 병·통·상자에 넣기 및 그 밖의 간단한 포장 작업

사. 탈피·탈각 또는 박편·탈곡·뼈제거·분쇄 또는 압착 및 연질화를 포함한 단순 절단

아. 단순 혼합

자. 완전한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 조립

차. 단순한 물품의 세트 구성

카. 동물의 도살

타. 품질 검사 또는 분쇄

파.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 제거, 녹방지를 위한 기름칠,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보호 재료의 도포

하. 염화 또는 가당

거.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 용액에 의한 희석

너. 대량 선적의 분류. 그리고

더. 상기 가호 내지 너호까지 규정된 둘 이상의 작업의 조합

비원산지 재료가 그러한 작업에 사용될 때 그러한 작업은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행된다.

제4.17조
해석과 적용

이 장의 목적상,

가. 이 장의 세번분류의 기초는 2002년 1월 1일에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다.

나. 이 장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하는 경우,

(1)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은 상황이 요구하는 적절한 수정을 통하여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것처럼 국내거래에도 적용된다.

(2) 이 장의 규정은 관세평가협정과 상이한 범위 안에서 그 협정에 우선한다. 그리고

(3) 제4.1조의 정의는 관세평가협정상의 정의와 상이한 범위 안에서 그 협정의 정의에 우선한다.

다. 이 장에 규정된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된다.

제4.18조
협의 및 수정

1. 양 당사국은 이 장이 효과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하며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기술·생산공정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개정권고를 포함한 그 밖의 관련 사안의 발전을 고려하여, 제22.1조에 규정된 대로 원산지 규칙을 검토하고 이 장 및 그 부속서에 대한 필요한 개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Abstract

Empirical Assessment of Korea's FTA Rules of Origin

Inyo CHEONG et al.

One of the differences between Customs Union (CU) and free trade agreement (FTA) is the authority of charging tariffs on the imports from non-member countries. CU member countries introduce common tariff rates against non-member countries, and they cannot change tariff rates voluntarily without consultation with other member countries. However, FTA member countries can set tariff rates (not higher than WTO bound rates) independently. Because tariff rates of the member countries of an FTA are different, trade deflection can happen. Trade deflection means that a good imported via a low tariff FTA member country is re-exported into a country with high tariff without paying tariffs. In order to prevent trade deflection, FTA member countries introduce specific rules, regulating that goods satisfying the rules be imported into FTA member countries with preferential treatments in terms of tariffs. These rules are called as rules of origin (ROO).

Two most important elements in determining market access in a FTA are the coverage of tariff elimination and rules of origin. Generally, it can be said that general people's concern over ROO is lower than tariff elimination. In many FTAs such as NAFTA, restrictive ROO was

introduced, and the ROO of NAFTA was benchmarked by other FTAs. Restrictive ROOs are widely used as a mean for pursuading sensitive sector to accept tariff elimination, since it is difficult to satisfy restrictive ROO, which is required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s. Because of this characteristics of ROO, ROO tends to be restrictive and complex.

There are 3 criteria (methods) for defining ROO in FTAs. One of criteria is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TC) or "tariff shift." CTC is widely used in regional trading agreements (RTAs). CTC is based on the Harmonized System (HS), classifying goods at a two-digit chapter level, a four-digit heading level, a six-digit subheading level or an eight (ten)-digit level. The second rule is the requirement of Regional (local) Value Contents (RVC), implying the requirement that the product should acquire a minimum regional value in exporting country or a region of a RTA. The third rule is the requirement of Technical Process, requiring specific production process for an item.

Each criterion of defining ROO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it is not easy to conclude which rule is most desirable. However, even though a specific rule is used, the stringency of the criterion can be changed depending on member country's position towards trade liberalization. For example, chapter change will be more stringent than changes in heading or subheading, when CTC method is employed. In case the RVC criterion is used, 60% regional value contents rate will be more stringent than 40%.

Some elements of ROOs are designed to promote intra-regional trade, although ROOs in general constitute protectionist practices. For example, Cumulation and De Minimis are commonly introduced in RTAs in order to facilitate producers under certain conditions to use intermediate inputs from the region of another RTA or the 3rd country.

ROOs act like trade barriers, since they cause extra costs in production and management. Producers/exporters need to pay costs for calculating

production costs and bookkeeping account-related documents. Also, extra costs will incur in complying with technical and specific process and regional value contents as specified in the ROO protocol, and these costs will be added to prices of exporting goods.

Korea effectuated its first FTA with Chile April 2004, and officially signed the FTA with Singapore August 2005. Also the country concluded the FTA with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July 2005, and is under negotiation with Japan, ASEAN, and Canada. Korean business is showing increasing concerns over the FTA ROOs.

For the analysis of ROOs, several FTAs are chosen in this paper. Examples of FTAs are the NAFTA and EU-Mexico FTA, which represent the first generation FTAs by US, and EU. The authors compare the stringency of ROOs of Korea's FTAs with other countries' FTAs. The ROO of Korea-Chile FTA and Korea-Singapore FTA are a variation of the NAFTA, with stringent and complex specifications for sensitive items.

This book provides an overview of ROOs in major FTAs with a view to assessing the stringency of ROOs in Korea's FTAs. It shows that Korea's FTA ROO in its first two FTAs are more restrictive than AFTA and China-ASEAN FTA, but less restrictive than NAFTA. Based the assessment of the stringency of ROOs, authors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in order to minimize economic losses from restrictive ROOs, while maximize economic gains of FTAs.